

반덤핑조사 관련 WTO 분쟁사례 분석

무역위원회

더 인터네셔널 트레이드 컨설팅

목 차

제1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3
1. 연구방법.....	3
2. 연구범위.....	4
제2장 반덤핑규제현황과 반덤핑협정관련 WTO 분쟁상황	7
제1절 WTO회원국의 반덤핑규제 현황.....	7
1. 반덤핑조사의 개시 현황.....	7
2. 반덤핑조치 부과의 현황.....	14
1) 반덤핑조치의 부과.....	16
2) 반덤핑조치의 대상.....	16
제2절 WTO 반덤핑협정관련 분쟁 현황.....	18
1. 반덤핑협정관련 WTO 분쟁상황 개관.....	18
2. WTO 분쟁대상이 된 주요 반덤핑협정의 규정.....	21
3. 한국이 제소 또는 피소된 WTO 반덤핑협정 관련 분쟁.....	23
제3장 덤핑을 산정과 관련된 WTO 분쟁사건분석	26
제 1 절 동종물품과 조사대상물품의 관계 [제2.6조].....	26
제2절 정상가격 결정.....	34
1. 판매자료.....	34
2. 원가계산.....	41
3. 구성가격.....	62
제3절 공정한 비교.....	79
1. 물리적 특성에 따른 차이 조정.....	84
2. 운송비의 조정.....	90
3. 조세영향 고려.....	91
4. 포장비.....	95
5. 선물 거래 수익.....	96
6. 가격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의 증명.....	98
7. 번역되지 아니한 외국어 자료의 반영여부.....	100
8. 화폐환산 (특정 내수판매가격에 대한 이중 환산) [제2.4.1조].....	101
9. 판매 대금 미지급 거래 처리 문제 [제2.4조] - 공정한 비교.....	106
제4절 기타.....	109

제5절 제로잉 [제2.4.2조].....	114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제로잉 zeroing 과 관련된 논의.....	115
2. 원심에서 가중평균가격 비교시 모델간 제로잉 zeroing.....	118
3. 미국의 연례행정재심에서의 Simple Zeroing 의 반덤핑협정 합치여부 ..	123
4. 원심, 재심을 떠나 반덤핑조사에서 제로잉zeroing 자체의 합치성	126
제4장 반덤핑조사절차 관련 쟁점.....	129
제1절 반덤핑조사 절차.....	129
1. 조사신청 - 조사개시를 하기에 충분한 수준.....	129
2. 조사신청서의 제공방법.....	141
3. 조사개시의 결정과 중단 결정 [제5.3조 및 5.8조].....	143
4. 덤핑과 피해에 대한 증거의 동시적인 검토 [제5.7조].....	145
5. 조사개시 및 반덤핑조치 관련 통지 및 공고.....	147
1) 조사개시의 통지 [제5.5조 및 제12.1조].....	147
6. 핵심적 고려사항의 적정 통보 여부.....	157
7. 답변서 제출기간의 적정성 여부 [제6.1.1조].....	161
8. 현지실사 [제6.7조].....	163
제2절 증거.....	170
1. 증거 제출 및 이익 방어 기회 제한 여부 [제6.1조 및 6.2조].....	170
2. 입수가능한 사실 이용의 적법성 [제6.8조].....	175
3. 증거자료의 제공의무 준수 [제6.1.2조 및 6.4조].....	190
4. 조사기간 연장의 합법성 [제6.2조].....	193
5. 비밀정보의 취급 [제6.5조].....	196
6. 조사당국의 자료검증 의무 여부 [제6.6조].....	198
제3절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징수.....	200
1. 비표본대상업체에 대한 반덤핑관세 [제9.4조].....	200
2. 반덤핑관세의 소급 [제10조].....	203
3. 미소마진의 기준 적용범위 [9.3조 및5.8조].....	208
제4절 반덤핑조치의 지속가능성과 재심.....	211
1. 덤핑사실이 없는 경우 반덤핑조치의 지속 가능 여부 [제11.1 및 11.2조]	211
2. 덤핑행위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제11.2조].....	216
3. 일몰재심 관련 쟁점.....	219
제5절 개별덤핑마진 불산정 사유의 적법성 여부 [제6.10조].....	227
제5장 한국의 반덤핑법과 WTO 판정.....	231
제1절 한국의 반덤핑법과 WTO 반덤핑협정.....	231
제2절 한국의 반덤핑법과 WTO 판정.....	233

제6장 반덤핑관련 향후 DDA 논의점.....	236
제1절 개관.....	236
제2절 DDA에서의 반덤핑규범 개정에 대한 협상 개시 및 그 동향.....	238
1. 도하각료선언 반덤핑규범관련 위임사항.....	238
1) 도하각료선언에서의 반덤핑관련 위임사항.....	238
2) 이행문제에서의 반덤핑관련 부분.....	239
2. 반덤핑규범의 개정에 대한 협상방법 및 동향.....	240
1) 반덤핑규범의 개정에 대한 협상방법.....	240
2) 반덤핑규범의 개정에 대한 협상경과.....	241
제3절 반덤핑조사관련 주요 제안내용.....	245
1. 덤핑결정 (제2조).....	245
1) 용어의 일관적인 사용.....	245
2) 정상가격의 결정.....	246
3) 수출가격의 결정.....	253
4) 공정한 비교.....	254
2. 조사 절차관련 [제5조].....	258
1) 조사개시 요건 [제5.2조 및 제5.3조].....	258
2) 제소적격 [제5.4조].....	258
3) Back to Back Anti-dumping Investigations.....	259
4) 직권개시 [제5.6조].....	259
5) 미소마진 (de minimis)으로 인한 조사의 종결 [제5.8조].....	260
6) 반덤핑 조사기간 [제5.10조].....	261
3. 증거 관련 [제6조].....	261
1) 청문회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제6.2조].....	261
2) 조사당국의 관련 정보의 이용가능성 [제6.4조].....	262
3) 공공기록의 유지 [제6.4조].....	262
4) 비밀정보 및 공개정보의 대우 [제6.5조].....	263
5) 현장실사 [제6.7조].....	264
6) 이용가능한 증거와 공개 [제6.8조].....	265
7) 증거의 공개 [제6.9조].....	266
8) 표본조사 [제6.10조].....	266
4. 가격약속 [제8.1조].....	267
5.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제9조].....	269
1) 최소부과 원칙의 의무화 [제9.1조].....	269
2) 덤핑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수출자 [제9.2조].....	270
3) 이자환급 [제9.3조].....	270

4) 표본에서 제외된 기업의 덤핑마진 산정 [제9.4조]	271
5. 재심 [제9조 및 제11조].....	271
1) 원심절차와 재심절차의 개선 [제9.3조, 제9.5조, 제11.3조, 제11.5조]	271
2) 일몰재심 [제11.3조].....	273
7. 결정의 공지 및 설명 [제12.2조 및 제12.2.1조].....	273
제4절 DDA협상의 전망	275
제7장 결론.....	277
참 고 문 헌.....	281

표 및 그림 목차

- [표 1]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분쟁사건들
 - [표 2] 주요 국가의 반덤핑조사 개시 및 피소 건수
 - [표 3] 반덤핑조사의 개시국과 대상국 간의 관계
 - [표 4] 연도별 반덤핑조치의 부과 건수
 - [표 5] 반덤핑조치의 부과국과 대상국 간의 관계
 - [표 6] 반덤핑협정 관련 WTO 분쟁의 피-제소국 관계
 - [표 7] 한국이 제소한 반덤핑협정 관련 분쟁사건
 - [표 8] 한국이 피소된 반덤핑협정 관련 분쟁사건
 - [표 9] 인도네시아-종이 사건 패널의 덤핑결정 관련 주요 평결 내용
 - [표 10] 이행패널보고서의 주요 평결내용
-
- [그림 1] 연도별 무역구제 조사개시 건수
 - [그림 2] 조사개시에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율
 - [그림 3] 반덤핑 조사개시의 피소국에서의 선진국-개발도상국 비율
 - [그림 4] 반덤핑조사의 개시와 조치의 부과
 - [그림 5] 반덤핑조치 부과에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율
 - [그림 6] 반덤핑조치의 대상국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율
 - [그림 7] 연도별 반덤핑협정 관련 분쟁건수
 - [그림 8] 반덤핑협정 관련 분쟁해결 결과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반덤핑제도는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출범한 이래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각 회원국이 반덤핑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개시된 반덤핑조사 건수는 3,044건에 이를 정도로 반덤핑제도는 현 WTO 체제하에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회원국들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WTO 협정의 특성상 모든 규정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WTO 회원국들은 자국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자의적인 해석들을 적용하여 자국의 반덤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WTO 회원국간 반덤핑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충돌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WTO에 제소된 사건들 중에서 반덤핑과 관련한 제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반덤핑협정 중에서 가장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제2조. 덤핑의 결정¹ 부분은 덤핑율을 산정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덤핑율의 산정은, 단순한 덤핑의 결정뿐만 아니라 피해결정에서도 검토해야 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있어서 기본적인며 절대적인 요건이라 하겠다. 그러나 반덤핑협정은 일종의 기준으로서의 기본법이므로, 현재 WTO 회원국들은 덤핑율을 산정할 때 자국의 자의적인 관행을 제도화시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¹ WTO Antidumping Agreement Article 2. Determination of Dumping

따라서 보다 통일적이고 안정적인 WTO 반덤핑협정의 해석에 따른 적용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실상 WTO에서 반덤핑협정과 관련한 분쟁은 비교적 빈번하게 다루어졌고, 특히 덤핑의 결정이나 반덤핑조사절차 및 증거가 반덤핑 관련 분쟁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졌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WTO의 반덤핑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덤핑을 산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향후 한국 무역위원회의 덤핑을 산정 방식과 실무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실제 WTO 회원국들이 얼마만큼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고 반덤핑조치를 부과하는지를 살펴보고, WTO에 제소된 반덤핑관련 분쟁사건들을 검토함으로써 회원국들이 반덤핑제도를 사용하는 경향이나 국가간 빈도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패널 또는 상소기관 보고서까지 이어져 채택된 분쟁사건을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덤핑조사와 관련한 해석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덤핑의 결정과 관련한 제2조와 조사절차와 관련한 제5조 및 제6조를 중심으로 WTO 분쟁해결기관의 판정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판정이 결정된 법적 근거와 논리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반덤핑제도와 WTO의 반덤핑협정을 간략하게 비교하고, 한국이 피소되었던 *Korea - Certain Paper* 사건을 통하여 한국의 반덤핑제도가 어떻게 평가되었고, 어떤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다. 동 사건에서 한국은 몇몇 쟁점에서 패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인도네시아가 제소하여 현재 이행패널 보고서가 회람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행패널 보고서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다소 진전이 없으나 여전히 진행 중인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에서 반덤핑협정의 개정논의의 동향을 살펴보고 덤핑 결정 및 조사절차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제출한 주요 제안서를 살펴보고, 그 전망을 논의하도록 하려 한다.

2. 연구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연구방법에 따라 4개 범위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반덤핑조사의 개시 및 반덤핑조치의 부과와 관련한 내용이므로, WTO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려 한다. 본 통계자료는 각 WTO 회원국이 WTO 반덤핑위원회에 반덤핑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통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WTO에서 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반덤핑분쟁 관련자료는 WTO 분쟁해결기관(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회부되어 판정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하려 한다.

두 번째는 WTO에 제소된 반덤핑관련 사건에서 다루어진 반덤핑협정의 조문에 대한 분석이므로 실제 패널 또는 상소기관 보고서가 채택된 사건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동 보고서가 시작된 시점으로 기간을 한정하고, 내용을 덤핑율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다음 20건의 분쟁사건이 본 연구서의 범위에 해당한다 하겠다.

[표 1]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분쟁사건들

DS No.	분쟁의 원명칭	분쟁의 약명칭
99	United States - Anti-Dumping Duty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 (DRAMs) of One Megabit or Above from Korea	US - DRAMS
122	Thailand - Anti-Dumping Duties on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Non-Alloy Steel and H-Beams from Poland,	Thailand - H-Beams
132	Mexico - Anti-Dumping Investigation of High Fructose Corn Syrup (HFCS) from the United States	Mexico - Corn Syrup

DS No.	분쟁의 원명칭	분쟁의 약명칭
141	European Communities -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tton-Type Bed Linen from India	EC - Bed Linen
156	Guatemala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Grey Portland Cement from Mexico	Guatemala - Cement II
179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an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from Korea	US - Stainless Steel
184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Hot-Rolled Steel Products from Japan	US - Hot-Rolled Steel
189	Argentina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Imports of Ceramic Floor Tiles from Italy	Argentina - Ceramic Tiles
206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Steel Plate from India	US - Steel Plate
211	Egypt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Steel Rebar from Turkey	Egypt - Steel Rebar
219	European Communities - Anti-Dumping Duties on Malleable Cast Iron Tube or Pipe Fittings from Brazil	EC - Tube or Pipe Fittings
241	Argentina - Definitive Anti-Dumping Duties on Poultry from Brazil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Duties
244	United States - Sunset Review of Anti-Dumping Duties on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from Japan	US - 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264	United States - Final Dumping Determination o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US - Softwood Lumber V
268	United States - Sunset Reviews of Anti-Dumping Measures o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Argentina	US - Oil Country Tubular Goods Sunset Reviews
282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 from Mexico	US - Anti-Dumping Measures on Oil Country Tubular Goods
294	United States - Laws, Regulations and Methodology for Calculating Dumping Margins ("Zeroing")	US - Zeroing (EC)
295	Mexico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Beef and Rice, Complaint with Respect to	Mexico - Anti-Dumping Measures on Rice

DS No.	분쟁의 원명칭	분쟁의 약명칭
	Rice	
312	Korea -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Paper from Indonesia	Korea - Certain Paper
322	United States - Measures Relating to Zeroing and Sunset Reviews	US - Zeroing (EC)

세 번째로 한국의 반덤핑 규정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WTO 반덤핑규정 및 판정과 비교하려 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반덤핑규정 운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 및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01년 11월 도하개발의제에 대한 협상이 합의된 이래 이루어진 회의의 회의록과 각국의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를 근거로 향후 우리나라의 반덤핑 제도 방향에 대하여 작성하려 한다.

제 2 장 반덤핑규제현황과 반덤핑협정관련 WTO 분쟁상황

제 1 절 WTO 회원국의 반덤핑규제 현황

WTO의 회원국들은 반덤핑협정에 따라 다양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무 중 하나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덤핑의 조사, 개시 및 수행, 잠정 또는 확정조치 부과사실을 WTO 반덤핑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반덤핑협정은 이와 관련하여 매년 2회 반기보고서 (semi-annual report)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² 본 절은 반기보고서에 기초하여 반덤핑규제의 동향을 검토하러 한다.³

1. 반덤핑조사의 개시 현황

반덤핑규제는 다른 무역구제제도와는 달리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무역구제 수단이다. 반덤핑조사개시의 경우 WTO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3,044건이 통고된 반면, 보조금관련 조사개시 건수는 191건 그리고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위한 조사개시는 155건이 통고되었다. 이는 [그림 1] 연도별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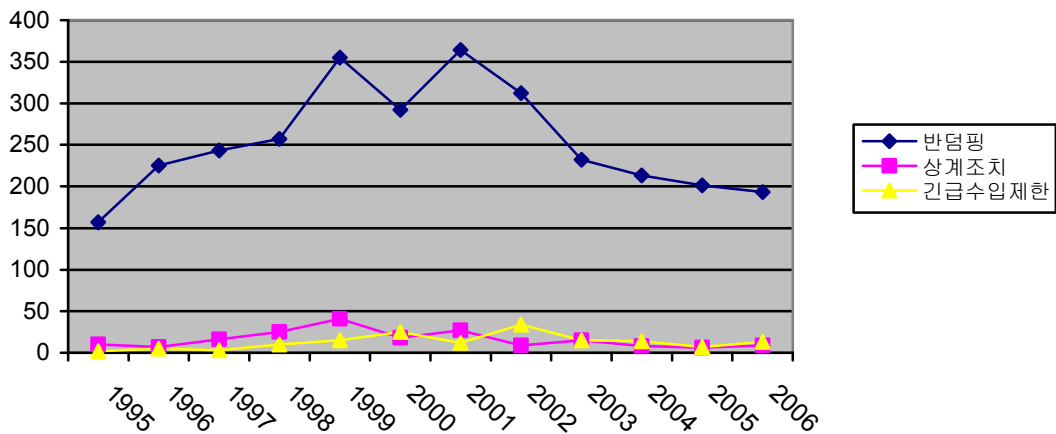
² 반덤핑협정 제16.4조 및 제16.5조.

³ 본 절은 제출된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된 회원국의 반기보고서와 이를 취합하여 게재한 WTO 반덤핑위원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2007년 9월 24일 검색.

역구제 조사개시 건수에서도 잘 드러난다. 반덤핑조사가 보조금 조사보다 15.9배,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보다 19.6배 더 많이 개시되어 있어 반덤핑이 다른 무역구제수단 보다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연도별 무역구제 조사개시 건수⁴



반덤핑조사가 빈번하게 개시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반덤핑조사의 개시 자체가 무역구제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수출자의 경우 단순한 조사 개시만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조사개시가 반덤핑조치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사실상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라고 본다.

또 다른 이유로는 조사기관의 입장에서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나 급격한 수입증가에 대응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보다 반덤핑조사가 다소 수월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보조금의 경우 국가가 개입하는 제도이므로 피해국의 조사기관이 상대방 국가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반면, 반덤핑조사의 경우 수출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를 입수하고 적용하기에 상대적으로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

⁴ www.wto.org 의 통계자료를 재구성 한 것임

다)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그 대상이 공정한 무역임에도 국내산업의 급격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발동된다. 따라서 반덤핑조치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어 조사기관이 가지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반덤핑제도는 1990년대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의하여 주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⁵ 특히, 반덤핑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EC, 캐나다, 호주 4개 국가들에 의해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반덤핑조사 및 조치의 대상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이었다.⁶

개발도상국들은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국내법에 반덤핑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WTO가 출범하면서 각 회원국에게 자국의 반덤핑규정을 반덤핑협정과 일치시켜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WTO의 반덤핑규정이 각 회원국들에게 반덤핑제도의 기본 틀을 제공하게 되었다. 당시 반덤핑제도의 활용이 익숙하지 못했던 회원국에게 반덤핑협정은 반덤핑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표 2] 주요 국가의 반덤핑조사 개시 및 피소 건수⁷

반덤핑 조사 개시		반덤핑 조사 피소	
국가명	개시건수	국가명	피소건수
인도	457	EC ⁸	559

⁵ Stewart, 『The GATT Uruguay Round: A Negotiating History (1986-1992)』, Vol II, 1383-1711, p.1396. 반덤핑과 관련하여 1980-1989년의 기간동안 GATT에 약 1456건의 반덤핑사례가 보고되었고 그 중 95%는 미국, EC, 캐나다, 호주에 의한 사례였다.

⁶ 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 Kicking away the ladder』, p 64. “미국은 ~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주의 사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지금도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들은 ~ (특히 반덤핑 관세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한) 일방적 무역 제재 등이다.”

⁷ www.wto.org 의 통계자료를 재구성 한 것임.

⁸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ies)는 25개 회원국을 1개국으로 계산함

반덤핑 조사 개시		반덤핑 조사 피소	
국가명	개시건수	국가명	피소건수
EC ⁹	393	중국	536
미국	373	한국	229
아르헨티나	219	미국	175
남아프리카	200	대만	173
호주	189	일본	133
캐나다	142	인도네시아	130
브라질	134	인도	127
중국	133	태국	120
터키	109	러시아	101
멕시코	92	브라질	92
한국	88	말레이시아	63
기타	515	기타	595
합계	3,044	합계	3,044

WTO 출범 이후 개발도상국들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와는 달리 활발하게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고 있다. 반덤핑조사를 개시하는 주요 국가는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선진국은 EC, 미국, 캐나다, 호주, 터키의 5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7개국은 개발도상국이다.¹⁰ 이와 같이,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WTO 체제에서 반덤핑규제를 선진국보다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전체 36개 WTO 회원국이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였다고 통고하였는데, 그 중에서 선진국은 7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29개국이 개발도상국이다.¹¹

그러나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활발한 반덤핑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⁹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ies)는 25개 회원국을 1개국으로 계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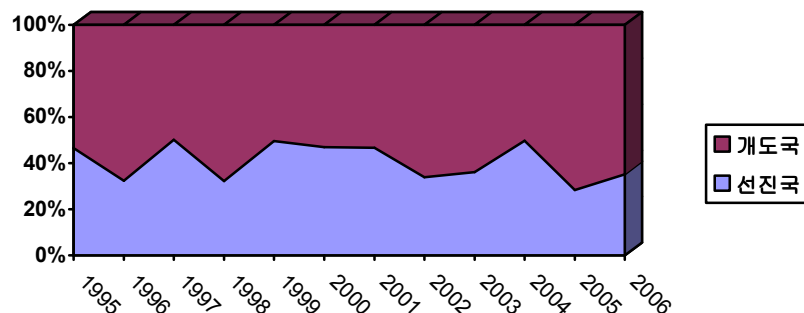
¹⁰ 본 절에서 선진국이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과 EC 25개 회원국을 의미한다.

¹¹ 본 글에서 EC 25개 회원국은 한 국가로 본다.

나타난다. [표 1]에서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주요 국가 중에서 선진국은 EC, 미국, 일본의 3개국인데 반하여 나머지 9개국은 개발도상국이다. 즉,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된 국가들은 모두 73개국으로 그 중에서 7개국만이 선진국이고 나머지 66개국이 개발도상국들이다.¹² 개발도상국은 반덤핑조사를 개시하는 국가 (29개국)보다는 아직 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가 (66개국)가 더 많으며, 아직까지는 반덤핑조사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전체 조사개시가 통고된 3,044건에서 선진국이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1,255건인 반면, 조사 대상국이 된 건수는 972건에 불과하다. 반대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1,789건인 반면 조사대상국이 된 건수는 2,072건이다. 아래 [그림 2]에서와 같이 전체 조사개시를 100%로 봤을 때 선진국의 평균 조사개시 비율은 41.2%이고 개발도상국은 58.5%로 개발도상국의 조사개시 비율이 선진국보다는 약간 높다.

[그림 2] 조사개시에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율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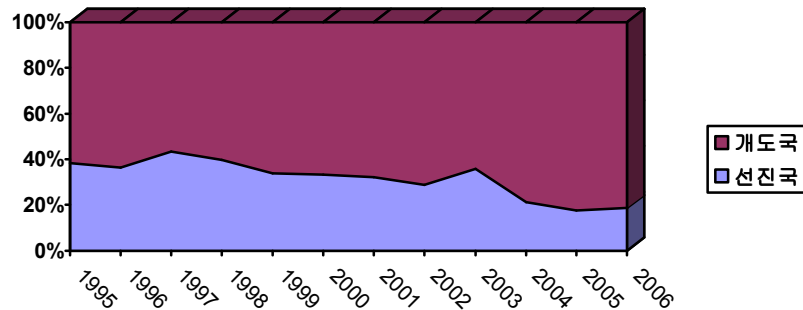
그러나 조사개시 대상이 된 비율은 선진국의 경우 평균 31.9%이며, 개발

¹²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된 국가에는 WTO 비회원국도 포함되어 있다.

¹³ www.wto.org 의 통계자료를 재구성 한 것임.

도상국들은 68.1%로 조사대상국의 측면에서도 개발도상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개발도상국이 조사를 개시하는 비율이 평균 58.5%인데 반해 조사개시의 대상국이 되는 평균 비율은 68.1%로 비교적 조사개시보다는 조사개시의 대상국이 되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2]와 [그림 3]을 비교해보면 잘 드러난다.

[그림 3] 반덤핑 조사개시의 피소국에서의 선진국-개발도상국 비율



개발도상국이 반덤핑조사를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은 또 다른 측면과 관련이 있다. 기존 GATT 체제에서는 몇몇 선진국이 반덤핑규제를 독점하다시피 함으로써 사실상 반덤핑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주로 사용하는 무역구제 수단이었다. 그러나 WTO 체제에서는 회원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의 구분 없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고 있다. 아래 [표 2]는 반덤핑조사의 개시국과 대상국간의 관계를 비율로 나타낸 자료이다.

[표 3] 반덤핑조사의 개시국과 대상국 간의 관계¹⁴

대상국 /	부과국	반덤핑조사 개시	
		선진국	개발도상국

¹⁴ www.wto.org 의 통계자료를 재구성 한 것임.

선진국	12.2% (370건)	19.8% (602건)
개발도상국	29.1% (885건)	39.0% (1187건)

선진국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개시를 한 건수는 370건으로 전체 12.2%에 해당하였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885건으로 전체 29.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602건으로 19.8%에 해당하고, 개발도상국들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1,187건으로 전체의 39.0%를 차지한다. 즉, 개발도상국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사실은 반덤핑조사의 성격이 보호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유무역을 더욱 더 공고히 하기 위한 파수꾼이냐의 논쟁을 떠나, 반덤핑제도가 뒤따라 올라오는 자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 행위와 가깝다는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1841년에 출판된 19세기 독일의 경제학자 리스트 Friedrich List (1789~1846) 의 <<정치경제의 국민적 체계 The National System of Political Economy>> 에서 묘사한 다음의 평가를 눈여겨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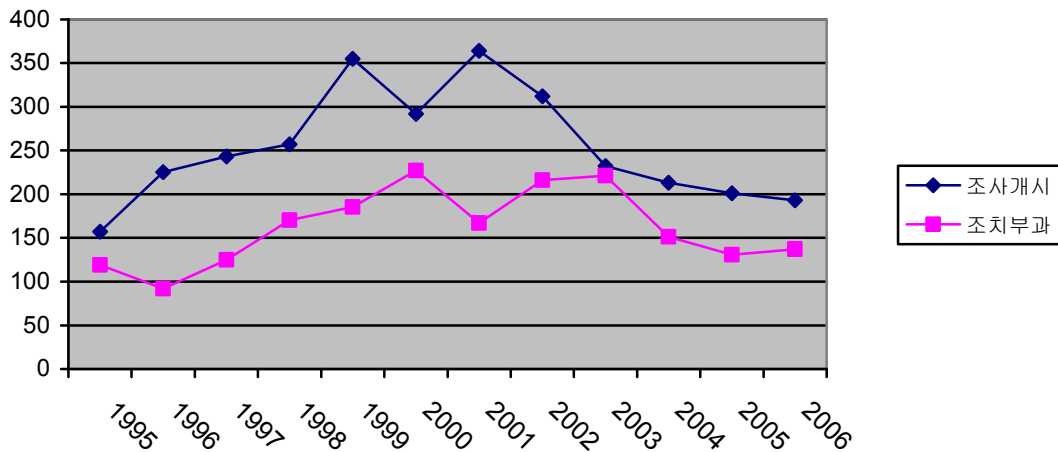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로, 매우 잘 알려진 교활한 방법이다. ~ 중략 ~ 보호 관세와 항해규제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감히 경쟁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산업과 운송업을 발전시킨 국가의 입장에서 정작 자신이 딛고 올라온 사다리 (정책, 제도) ¹⁵는 치워버리고 다른 국가들에게는 자유 무역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뒤늦게 자유 무역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참회하는 어조로 선언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일을 없을 것이다”

덤핑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반덤핑조치 부과의 현황

반덤핑규제가 실제 조치의 부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조사의 개시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각 국가들은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반덤핑 조사개시를 실시하는지, 조사의 개시에 비하여 실제 조치의 부과는 낮은 편이다. 반덤핑 조사개시의 약 64%만이 조치의 부과로 이어질 뿐이다. [그림 4]에서 보여지듯이 반덤핑조사의 개시는 2002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항상 조치의 부과가 조사의 개시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인다.

[그림 4] 반덤핑조사의 개시와 조치의 부과¹⁶



그러나 반덤핑조치의 부과건수는 조사개시 건수와 거의 비례하며, 조사 개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요 개발도상국에 의한 반덤핑조치의 부과가 증가하고 있다. [표 3]에서는 조치를 부과한 주요 국가 중에서 5개국만 선진국이며, 조치 대상국에서는 단지 3개국만이 조치 대상국이 되었다.

¹⁶ www.wto.org 의 통계자료를 재구성 한 것임.

[표 4] 연도별 반덤핑조치의 부과 건수

조치 부과국		조치 대상국	
국가명	부과건수	국가명	대상건수
인도	331	중국	375
EC ¹⁷	249	EC ¹⁸	337
미국	239	한국	136
아르헨티나	152	대만	107
남아프리카	120	미국	104
터키	107	일본	97
중국	92	러시아	84
캐나다	84	태국	76
멕시코	82	인도	75
호주	71	인도네시아	73
브라질	66	브라질	69
한국	54	우크라이나	49
기타	294	기타	359
합계	1941	합계	194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반덤핑조치를 부과하였다고 통고한 국가는 전체 33개국 중에서 7개국이 선진국이며, 조치를 부과 받은 66개국 중 9개국이 선진국이었다. 반덤핑조사의 개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반덤핑조치를 부과하는 국가 (16개국)보다는 조치를 부과 받는 국가 (57개국)가 훨씬 더 많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반덤핑조치를 부과하는 측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지만 여전히 조치의 부과대상이 되는 국가수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겠다. 즉, 선진국과 비교시 개발도상국의 반덤핑조치의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활용의 정도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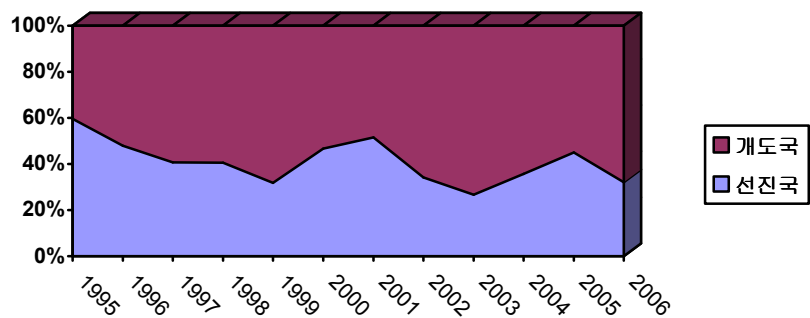
¹⁷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ies)는 25개 회원국을 1개국으로 계산함

¹⁸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ies)는 25개 회원국을 1개국으로 계산함

1) 반덤핑조치의 부과

반덤핑조치를 부과하는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율을 보면, 전체 1,941건의 조치부과건수에서 선진국이 772건으로 39.8%이고, 개발도상국이 1,169건으로 60.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비율은 조사개시와 유사하며, 그나마 개발도상국이 WTO 체제 이후부터 반덤핑조사를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반덤핑조치 부과에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율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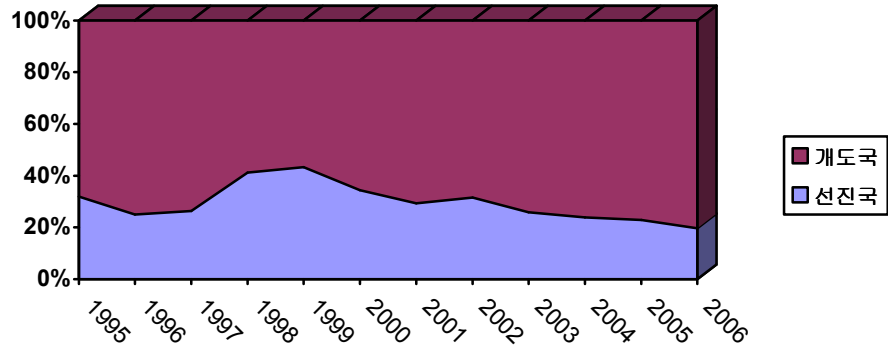


2) 반덤핑조치의 대상

또한, 반덤핑조치의 대상국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율은 조사개시의 대상국에서의 비율과 유사하다. 즉, 전체 반덤핑조치가 부과된 건수 중에서 선진국에게 조치가 부과된 건수는 588건으로 30.3%에 달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1,353건으로 69.7%에 해당한다.

¹⁹ www.wto.org 의 통계자료를 재구성 한 것임.

[그림6] 반덤핑조치의 대상국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비율²⁰



개발도상국은 반덤핑조치를 부과하는 비율보다 그 대상이 되는 비율이 높은데, 특히 [그림 6]에서 보여지듯이 2002년 이후로 그 수치가 조금씩 높아져 반덤핑조치를 부과 받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개발도상국에게 반덤핑조치를 부과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러한 수치는 선진국의 조치부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표 2]에서 반덤핑조사의 개시국과 대상국간의 관계와 [표 4]의 반덤핑조치의 부과국과 대상국간의 관계에서의 수치가 매우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반덤핑조치를 부과한다는 과거의 경향에서 WTO 체제 이후로는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 반덤핑조치의 부과국과 대상국 간의 관계²¹

대상국 \ 부과국	반덤핑조치	
	선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	10.6%(205건)	19.7%(383건)
개발도상국	29.2%(567건)	40.5%(78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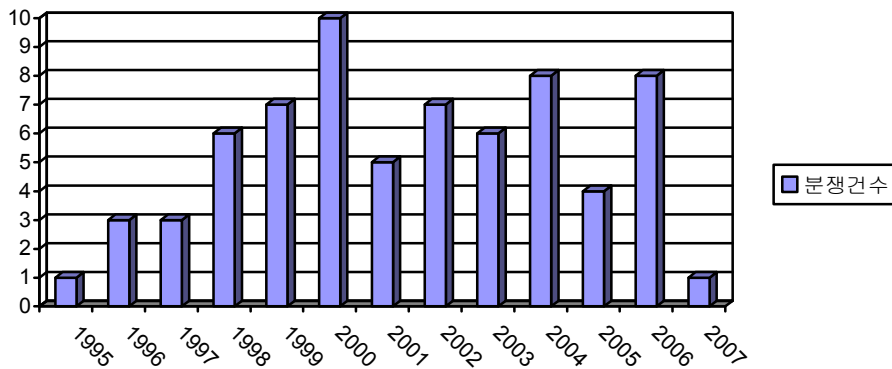
²⁰ www.wto.org 의 통계자료를 재구성 한 것임.

²¹ www.wto.org 의 통계자료를 재구성 한 것임.

제 2 절 WTO 반덤핑협정관련 분쟁 현황

반덤핑협정은 WTO 분쟁사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협정으로서 2007년 9월 27일 현재 WTO에 제소된 368건의 분쟁사건 중에서 약 69건이 반덤핑협정과 관련된 분쟁이다. 본 절에서는 WTO 반덤핑협정과 관련한 분쟁상황을 개관하고, 구체적으로 반덤핑협정의 어떤 규정이 주로 분쟁대상이 되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림 7] 연도별 반덤핑협정 관련 분쟁건수²²



1. 반덤핑협정관련 WTO 분쟁상황 개관

WTO 전체 분쟁사건에서 다른 협정에 비하여 반덤핑협정과 관련한 분쟁은 매우 빈번한 편이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WTO 출범 이래 매년 반덤핑협정과 관련된 분쟁이 제소되었다. 2007년 9월 현재 반덤핑협정과 관

²² www.wto.org 의 통계자료를 재구성 한 것임.

련된 분쟁은 69건으로, WTO에 제소된 368건 중 약 18%에 해당한다.

반덤핑협정과 관련하여 약 22개 회원국이 19개국을 상대로 제소하였다. 제소국의 경우에는 19개 국가간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진 국가는 EC와 인도로 각각 11건, 10건을 제소한 바 있다. 반면, 피소국의 경우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은 전체 제소건수의 50%에 달하는 사건에서 피소되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반덤핑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다소 독단적인 처리가 많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할 것이다.

흥미롭게도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둘 다 미국을 반덤핑과 관련하여 제소하였다. 예컨대, EC를 비롯한 선진국들이 전체 34건 중 16건에서 미국을 제소하였는데 이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개발도상국을 제소하는 경우도 18건으로 약 30%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덤핑조사나 조치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은 활발하게 WTO 분쟁해결을 통하여 반덤핑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반덤핑협정 관련 WTO 분쟁의 피-제소국 관계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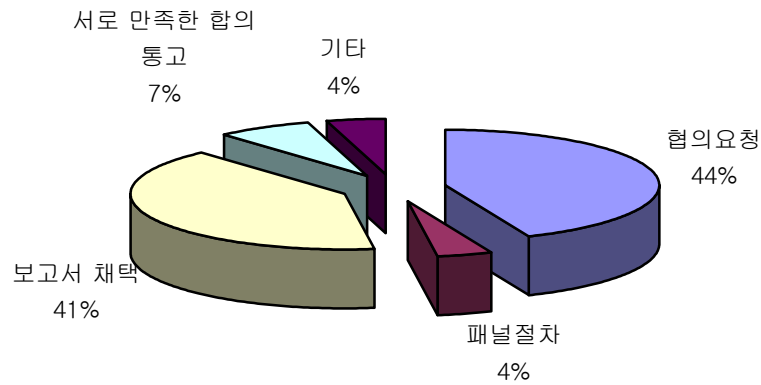
피소국 제소국	미국	EC	멕시코	인도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에콰도르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집트	기타 (한국)	합계
EC	7			1	2					1	11
미국			3							1	4
일본	4										4
캐나다	4										4
터키									1	1	2
멕시코	5					2	2			1	10
인도	2	3								1	6
브라질	1	1	1		1					1	5
한국	3									1	4

²³ www.wto.org 의 통계자료를 재구성 한 것임.

피소국 제소국	미국	EC	멕시코	인도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에콰도르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집트	기타 (한국)	합계
아르헨티나	3									1	4
코스타리카								2			2
태국	2										2
기타	2	1	1	2					1	2(1)	2
공동제소 (한국)	2(1)										9(1)
합계	34	5	5	3	3	2	2	2	2	11(1)	69

제소된 반덤핑협정 관련 분쟁사건의 분쟁해결결과는 [그림 8]에 나타나 있다. 현재 아직까지 협의요청 중인 사건은 30건으로 전체의 44%에 해당한다.

[그림 8] 반덤핑협정 관련 분쟁해결 결과²⁴



한편, 협의요청 상태인 사건들이 모두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소국이 협의요청을 한 후 패널설치와 같은 절차 진행을 하지 않는 경우 동 분쟁사건은 협의요청 상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실제로 멕시코가 미국을 제소한 ‘미국- 멕시코산 생토마토 및 냉장토마토에 대한 반덤핑조사’ 사건은 1996년 7월 1일에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협의요청상태로 기록되

²⁴ www.wto.org 의 통계자료를 재구성 한 것임.

고 있다. 이러한 분쟁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해도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협의요청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협의요청 상태로 남게 된다.

그러나 일단 패널이 설치되고 구성되면 거의 자동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패널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은 3건이며, 패널보고서 또는 상소기관보고서가 채택된 사건은 28건으로 전체 41%에 해당한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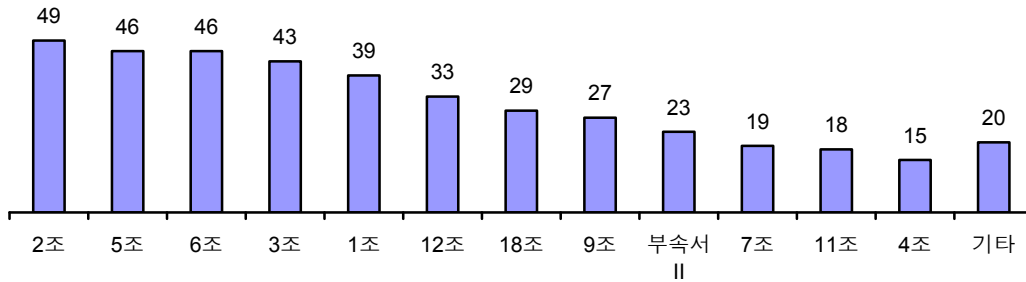
조사절차가 진행된다고 해도 분쟁당사국은 언제라도 서로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분쟁당사국은 서로 합의된 해결책 mutually agreed solution 에 도달하였다고 분쟁해결기관에 통고하게 되고 분쟁을 사실상 종료된다. 반덤핑협정 관련 분쟁에서는 5건이 서로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였다고 통고 하였고, 조치의 철회 등의 이유로 협의요청이 철회된 사건은 3건이다.

2. WTO 분쟁대상이 된 주요 반덤핑협정의 규정

반덤핑협정 관련 분쟁사건에서 주로 분쟁대상이 된 규정은 제2조 덤핑의 결정과 관련하여서이다. 아래 [그림 9]는 협의요청서에서 제기된 분쟁규정을 정리한 자료이다.

²⁵ '미국-1916년 반덤핑법' 사건과 '미국-2000년 지속되는 덤핑 및 보조금 상쇄법' 사건의 경우 각각 두건의 사건으로 제소되었으나 동일한 조치에 대한 사건이므로 각각 단일 패널이 구성되어 심리하였다. 따라서, 보고서가 채택된 사건은 28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안별 26건이다.

[그림 9] 협의요청에서 나타난 주요 반덤핑협정의 분쟁대상 규정²⁶



덤핑의 결정을 규정하는 제2조와 함께 분쟁대상이 된 주요 규정은 반덤핑조사의 개시와 수행을 규정한 제5조와 증거를 규정한 제6조, 그리고 피해 결정을 규정한 제3조 등이 있다.

하지만 이를 나타낸 [그림 9]를 전적으로 나타내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일일 것이다. 협의 요청시, 많은 제소국들이 반덤핑협정의 세부규정을 명시하고, 때로는 대략적인 규정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쟁대상이 된 규정의 정확한 수치를 산정하는 것은 많은 왜곡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반덤핑협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협의요청이 패널절차나 상소절차까지 이어져 패널 또는 상소기관 보고서의 채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30%에 불과하므로 [그림 9]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보아야 함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핑의 결정'은 반덤핑 조사시 기본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덤핑의 결정'이 반덤핑관련 분쟁에서도 자주 등장하리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로도 많은 패널보고서나 상소기관 보고서가 이들 쟁점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제2조 덤핑의 결정은 제5조 덤핑조사의 개시와 수행, 제6조 증거와 더불어 심층적인 분쟁분석이 집중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²⁶ www.wto.org 의 통계자료를 재구성 한 것임

특히, 반덤핑협정의 '덤핑의 결정' 부분은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당국의 재량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덤핑의 결정'은 분쟁발생시 여러 쟁점으로 확산되어 검토되고 실제 패널이나 상소기관이 검토하고 평결을 내리는 회수가 많을 것임에 분명할 것이다.

3. 한국이 제소 또는 피소된 WTO 반덤핑협정 관련 분쟁

한국이 WTO에 제소한 사건과 피소한 사건은 각각 13건이다. 그 중에서 한국이 반덤핑협정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 제소한 사건이 5건인 반면 피소된 사건은 단 1건뿐이다. [표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은 13개의 WTO 제소사건 중에서 5건을 반덤핑협정과 관련하여 제소하였다. 이는 한국이 주로 반덤핑조치의 피소국의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조치부과국에 대하여 비교적 빈번한 제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이 제소한 반덤핑협정 관련 분쟁사건 5건 중 4건이 미국을 상대로 하는 사건들이라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동 사건들 중에서 패널보고서 및 상소기관 보고서의 채택까지 진행된 3건의 사건에서 한국이 승소하고, 2건의 사건은 협의요청 후 양방 당사자가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멈춰져 있게 되었다. 그러나 WTO의 분쟁해결절차상 사건을 종료한 것도 아니므로 앞으로 관련 분쟁이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주로 반덤핑협정과 관련하여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했던 기간이 2000년도 이전이라는 점이다. 이후로는 반덤핑협정으로 WTO

에 제소한 적이 없다. 반면 한국이 반덤핑협정과 관련하여 분쟁해결기구에 피소된 시기는 최근이다.

[표 7] 한국이 제소한 반덤핑협정 관련 분쟁사건

DS No.	분쟁명	협의요청일	분쟁상황
88	미국-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반덤핑관세	1997.7.10	협의요청
99	미국-한국산 DRAM에 대한 반덤핑관세	1997.8.12	패널보고서 채택
179	미국-한국산 스테인레스 후판 및 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치	1999.7.30	패널보고서 채택
215	필리핀-한국산 폴리에틸렌 수지에 대한 반덤핑조치	2000.12.12	협의요청
217	미국-2000년 계속되는 덤핑 및 보조금 상쇄법 (공동제소)	2000.12.21	패널 및 상소 기관 보고서 채택

한국이 반덤핑협정으로 분쟁해결기구에 피소된 사건은 아래 [표 8]에서 보이듯이 단 1건이다. 동 사건에서는 한국 무역위원회의 결정과 조사절차가 직접적인 분쟁대상이었다.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한국의 반덤핑조치가 반덤핑협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구체적인 조사절차와 관련한 쟁점에서는 한국이 패소하였다. 동 사건의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후 한국은 2005년 12월 20일 이행의사를 통고 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06년 12월 22일 한국의 불이행에 대하여 분쟁해결양해 제21.5조에 의한 이행패널을 요청하였다. 동 사건의 이행패널보고서가 2007년 9월 28일 회람된 상태이며,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행패널은 한국이 일부 불이행 하였

다고 판결하였다.²⁷

[표 8] 한국이 피소된 반덤핑협정 관련 분쟁사건

DS No.	제소국	분쟁명	협의요청일	분쟁상황
312	인도네시아	한국-인도네시아산 특정 종이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	2004.6.4	패널보고서 채택

²⁷ 한국은 동 이행패널 보고서에 대하여 상소하지 않았음. 그리고 WTO 분쟁해결기관은 2007년 10월 22일 월레 회의에서 동 이행패널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음. (http://www.wto.org/english/news_e/news07_e/dsb_22oct07_e.htm)

제 3 장 덤핑을 산정과 관련된 WTO 분쟁사건분석

제 1 절 동종물품과 조사대상물품의 관계 [제 2.6 조]

관련 분쟁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동종물품의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2000 년 청주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이춘삼 교수님의 ‘신국제반덤핑법’ 이 가장 적절히 동종물품의 개념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므로 해당 책의 본문을 인용하도록 하겠다. ²⁸

덤핑방지절차에서 동종물품인지의 여부는 (1)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기준, 즉 수출가격과 비교할 수출국내의 비교가능한 가격을 산출하는 대상물품을 정하는 기준, (2)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즉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국내생산품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3)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을 결정하는 기준, 즉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이후 어떠한 물품이 관세부과대상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위와 같은 세가지 경우에 있어서 동종물품을 판단하는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으로서의 동종물품은 동종물품 중에서도 동일한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그 예가 된다.

²⁸ 본 연구서는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춘삼교수님의 ‘신국제반덤핑법’을 인용하고 있다. 이하 인용을 함에 있어 항상 별도의 인용표시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해당 저자의 연구결과를 도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다만 이해의 편의를 돕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이란 점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이춘삼교수님의 저서는 각각의 토픽topic 의 도입intro 부분에 많이 인용되었다.

협정문상 동종물품에 대한 정의는 매우 유사한 특성 (characteristics closely resembling)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이고 특성이라는 것도 물리적, 화학적, 기술적 특성 등 여러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해석, 집행은 각국의 법령 및 실무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특성에 유사한 점이 없으면서 용도만이 유사하여 시장경쟁하에 있는 물품들간에는 동종물품성을 인정할 수 있을 지가 문제된다. 덤핑방지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자국 산업의 보호측면에서 상업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들을 동종물품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는 바, 협정문상의 동종물품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정의만으로 이러한 경향을 실질적으로 제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동종물품에 관한 정의에 대하여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동종물품의 정의를 명확히 지적할 수는 없지만 WTO 분쟁해결기관의 판결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추론할 수는 있을 것이다.

[관련 조문]

2.6 이 협정 전체를 통해 "동종 물품"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물품 즉, 고려 중에 있는 물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물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비록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으나 고려 중에 있는 물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제 2.6조는 정의definition 을 다루고	제2.6조	US – Softwood Lumber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있는 조항이며 조사대상물품이나 동종물품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i>V Argentina - Poultry (DS264)</i>
제2.6조에서 다루고 있는 동종물품은 수출가격과 비교할 수출국내의 비교 가능한 가격을 산출하는 대상물품을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동종물품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제2.6조	<i>US - Softwood Lumber V Argentina - Poultry (DS264)</i>
제2.6조에 따른 동종물품을 정의함에 있어 조사대상물품을 정의하는데 이용된 전체적인 규칙이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충분하다. 동종물품내의 특정물품의 특성과 조사대상물품내의 특정물품의 특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유사성을 따짐으로써 동종물품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제2.6조	<i>US - Softwood Lumber V Argentina - Poultry (DS264)</i>

[사례 연구]

다음에서 관련 분쟁을 상세하게 심화하여 분석해 보려 한다.

US—Softwood Lumber V ²⁹ ³⁰

²⁹ WorldTradeLaw.net Dispute Settlement Commentary (DSC) © 2004 WorldTradeLaw.net LLC, All rights reserved Panel Report; United States - Final Dumping Determination on

동종물품 Like Product 와 조사대상물품 Product under Consideration 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분쟁사례는 US - Softwood Lumber V (DS264) 사건 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미국의 캐나다산 Softwood Lumber 제품에 대한 최종덤핑 판정에서 미상무부가 bed frame components, finger-jointed flangestock, Eastern White Pine and Western Red Cedar 물품을 동종물품으로 판단한 것이 출발점이 된다. ³¹

캐나다의 주장은 아래와 같았다.

미상무부가 조사대상물품과 본질적으로 다른 물품들을 동종물품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미상무부가 동종물품이라고 판단한 물품들은 조사대상물품 그룹의 특성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동종물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미상무부는 제 2.6 조에 부합하지 않게 판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반덤핑협정문, 예를 들자면 제 5.1 조, 5.2 조, 5.4 조, 을 위반

Softwood Lumber from Canada (WT/DS264/R) / DSR 2004:V, 1981 를 기준으로 분석됨

³⁰ United States—Final Dumping Determination o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Complainant: Canada), (DS 264) 라고 명명하여야 하나, 본 고에서는 계속하여 분쟁명이 나오는 관계로 간략하게 분쟁을 표현하기로 함

³¹ 이 때의 동종물품은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기준으로서의 동종물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청주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이춘삼교수의 《신국제반덤핑법》의 동종물품에 대한 설명을 참조할 만 하다.

“덤핑방지절차에서 동종물품인지의 여부는

- ①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기준, 즉 수출가격과 비교할 수출국내의 비교 가능한 가격을 산출하는 대상물품을 정하는 기준,
 - ②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즉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되는 국내 생산품이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 ③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을 결정하는 기준, 즉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이후 어떠한 물품이 관세부과대상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된다.
- 위와 같은 세가지 경우에 있어서 동종물품을 판단하는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한 결과가 된 것이다.³²

그러한 판단의 이유로, 캐나다는 제 2.6 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제 2.6 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제 2.6 조가 동종물품의 결정을 위한 다단계 접근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의 제 2.6 조 해석론에 따르면, 세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① 먼저 조사당국은 조사대상물품의 특성들을 파악한 다음, ② 각각의 물품이 동종물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각각의 물품의 특성을 또한 파악하고, ③ 마지막으로 각각의 물품의 특성들과 조사대상물품으로 정의된 특성들을 비교하여 동일성 여부를 결정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³³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을 이용하면 일부 물품은 동종물품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캐나다는 동종물품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 2.6 조에 나오는 특성 characteristics 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였고, 그리고 제 2.6 조가 조사대상물품은 물론이고 동종물품을 결정하는 일종의 방법론까지 제시한 것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즉 캐나다의 주장대로 제 2.6 조가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면 조사당국은 제 2.6 조의 문구 하나 하나를 지켜가면서 동종물품을 정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 2.6 조의 특성 characteristics 이 포괄적인 의미라기 보다는 특별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고,

³² 해당 조문은 조사개시 및 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특히 국내산업의 자격여부, 혹은 제조 자격 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되는 동종물품은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기준으로서의 동종물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³³ WT/DS264/R, Paras. 7.140-141.

이렇게 하면 해당 케이스에서는 일부 물품이 동종물품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범위가 바뀌게 되는 결과까지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패널은 제 2.6 조는 정의를 내리는 성격의 조항이라고 규정한 다음, 분쟁의 핵심은 미상무부가 제 2.6 조에서 다루고 있는 동종물품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접근법을 취하였는지를 다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캐나다의 주장인 제 2.6 조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과 대치되게 제 2.6 조는 정의 definition 과 관련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당 조문의 문맥과 전후 관계를 검토한 후, 패널이 내린 결론은 덤핑의 결정이라는 목적을 위한 “동종물품”의 개념은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물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사대상 물품과 비교되는 바로 그 동종물품을 지칭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보기에, 사실 반덤핑협정문 제 2 조가 덤핑의 결정을 다루고 있고 제 2 조에 속해 있는 제 2.6 조 역시 덤핑의 결정과 관련한 개념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캐나다는 애당초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동종물품의 개념에 입각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제 2.6 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오히려 패널은 제 2.6 조는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의 동종물품 개념이 아니라, 수출가격과 비교할 수출국내의 비교 가능한 가격을 산출하는 대상물품을 정하는 기준으로서의 동종물품의 개념을 다루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캐나다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내놓은 제 2.6 조가 캐나다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즉 캐나다가

논지와 맞지 않는 조문을 들고 왔다는 암시를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패널은 협정문의 어디에서도 조사대상물품을 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언급하고도 있다.

이 역시 제 2.6 조가 조사대상물품은 물론이고 동종물품을 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캐나다의 주장에 완전히 대치되는 견해로 결국 제 2.6 조는 동종물품은 말할 나위도 없고 심지어는 조사대상물품을 결정하는 방법론도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함으로써 해당 조문 즉 제 2.6 조가 방법론을 다룬 것이 아니라 정의 definition 을 다룬 것이라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패널에 따르면, 미상무부는 조사대상물품을 적절하게 정의하였고, 동시에 해당 조사대상물품의 정의에 따라 적절하게 몇몇 물품은 조사대상범위에서 제외시키기도 한 반면, 문제가 된 4 가지 물품은 (적절하게) 제외시키지 아니하였다. 패널이 볼 때는 반덤핑협정문에 조사당국이 조사대상물품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이 현행 반덤핑협정문에는 없기 때문에, 해당 조사건에서 미상무부는 조사대상물품을 적절하게 정의한 다음, 동종물품을 규정할 때도 동일한 정의를 적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캐나다가 조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는 물품이 동종물품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미국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동종물품을 규정하는 방식은 제 2.6 조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가 제 2.6 조를 해석함에 있어 이를 조사대상물품의 전체범위와 동종물품의 전체범위를 비교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제 2.6 조가 마치 동종물품내에 있는 각각의 개별 물품이 조사대상물품내에 있는 개별 물품과 유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패널은 반덤핑협정문 전체에서도 그러한 조건을 담고 있는 기준

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캐나다의 이러한 제 2.6 조에 대한 해석을 부인하였다.

결국 제 2.6 조의 해석에 있어 패널은 동종물품을 정함에 있어 조사대상 물품을 정의하는데 이용된 규칙이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패널은, 캐나다가 오로지 제 2.6 조와의 불합치에만 집중한 관계로, 제 2.6 조 이외에 다른 조항과의 불합치를 밝혀내지는 못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³⁴

해당 사례를 보면 전반적으로 패널은 캐나다가 본 이슈와 관련하여 일단 제 2.6 조를 들고 나온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애당초 캐나다는 이기기 어려운 게임을 시작한 형국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패널이 다른 조항과의 불일치를 다루는 것이 오히려 나왔을 것이란 충고를 덧붙인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더군다나 제 2.6 조를 둘러싼 캐나다의 해석조차도 패널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는 등 해당 이슈에 대해서 패널은 일방적으로 캐나다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어 캐나다의 완패로 볼 수 있겠다. 미국이 이겼다가 보다는 캐나다의 대응실패로 인한 캐나다의 패배라고 하는 편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동 사례와 관련하여 사족같이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의견은 분쟁해결기구에 나설 때 근거조항으로 내놓을 조항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는 참담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³⁴ WT/DS264/R, Para. 7.158.

제 2 절 정상가격 결정

정상가격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본 연구서는 검토의 목적상 세 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검토하려 한다.³⁵ 사실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된 문제는 서로 서로 얽여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다시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원가계산과 구성가격의 산정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분류에 더욱 조심스러웠지만, 우선은 해당 분쟁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원가쪽에 머물렀으면 굳이 구성가격으로 분류하지 않고 원가계산으로 분류하였다.

- 판매자료
- 원가계산
- 구성가격

1. 판매자료

- 내수시장에서 관계회사로의 판매 인정 여부

실무에서 정상가격산정을 위하여 비교시장의 판매데이터를 검토하다 보

³⁵ 사실 정상가격 산정과 관련된 문제는 서로 서로 얽여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다시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원가계산과 구성가격의 산정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분류에 더욱 조심스러웠지만, 우선은 해당 분쟁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원가쪽에 머물렀으면 굳이 구성가격으로 분류하지 않고 원가계산으로 분류하였다.

면, 해당 고객이 조사대상업체의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유통채널별 조감도 예시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이 때 상기 도해의 (3)과 (4)의 판매를 정상가격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미국은 소위 Arm's Length Test 기법 (이하 설명됨)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동 사안은 *US - Hot-Rolled Steel (DS184)* 에서 다루어졌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상소기관은 패널의 의견을 번복하여 미국측의 관행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관련 조문]

2.1 이 협정의 목적상,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서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동 상품은 덤핑된 것, 즉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거래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된다.

2.4.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에 공정한 비교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 공장도단계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제반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와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그 밖의 차이점들을 포함하여 가격비교 7)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한다. 제 3 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관세 및 조세를 포함한 비용 및 발생한 이윤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격비교가 영향을 받을 때에는 당국은 구성수출가격의 거래단계와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정상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 항에 따라 정당화된 적절한 고려를 한다. 당국은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당해 당사자에게 알리며, 이러한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책임을 지위서는 아니된다.

7) 위의 요소들 중 일부는 중첩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하고 당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정상가격 산정시 판매가격을 사용하기 위한 4가지 조건 ① 당해 판매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졌어야 하고; ② 동종물품이어야 하며; ③ 당해 물품이 수출국에서 소비용 목적으로 판매되었어야 하며;	제2.1조	US - Hot-Rolled Steel (DS184)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④ 수출가격과 비교가능한 가격이어야 한다.		
재판매 가격을 정상 가격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사 당국에게 공정한 비교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주의와 노력을 부과하는 것이지 재판매 가격 자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제2.4조	<i>US - Hot-Rolled Steel (DS184)</i>

[사례 연구]

US - Hot-Rolled Steel - 판매시장에서의 Arm's Length Test

우선 사건의 핵심인, 미국의 Arm's Length Test 는 미국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 의 규정 Regulation 인 §C.F.R. 351.403 ³⁶ 에 규정

³⁶ § 351.403 Sales used in calculating normal value;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d parties.

(a) Introduction. This section clarifies when the Secretary may use offers for sale in determining normal value. Additionally, this section clarifies the authority of the Secretary to use sales to or through an affiliated party as a basis for normal value. (See section 773(a)(5) of the Act (indirect sales or offers for sale).)

(b) Sales and offers for sale. In calculating normal value, the Secretary normally will consider offers for sale only in the absence of sales and only if the Secretary concludes that acceptance of the offer can be reasonably expected.

(c) Sales to an affiliated party. If an exporter or producer sold the foreign like product to an affiliated party, the Secretary may calculate normal value based on that sale only if satisfied that

되어 있다.

해당 조항 (c) 를 보면 관계회사로의 판매는 비관계회사에게 판매된 거래와 비교해 보아서 걱정할 경우에만 정상가격 계산에 이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³⁷, 또한 동일 조항 (d) 에서는 관계회사를 거쳐서 재판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비관계회사에게로 재판매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관계회사를 거친 재판매 금액 혹은 중량이 대상제품의 비교대상시장 전체 판매 금액 혹은 중량의 5%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조항(c)의 경우와 같이 비관계회사에게 판매된 거래와 비교해 보아서 걱정할 경우라면 굳이 관계회사의 재판매실적까지는 보고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³⁸

이해를 돕기 위해 상기 규정의 실무적인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관계회사로 판매된 가중평균 가격이 비관계거래처에 판매된 가격의 99.5% 이상이어야 한다. ³⁹
- 만약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회사로의 판매중에서 관계회사에서 다시 재판매된 경우가 있다면, 해당 관계회사의 재판매실적을 별도로 보

the price is comparable to the price at which the exporter or producer sold the foreign like product to a person who is not affiliated with the seller.

(d) Sales through an affiliated party. If an exporter or producer sold the foreign like product through an affiliated party, the Secretary may calculate normal value based on the sale by such affiliated party. However, the Secretary normally will not calculate normal value based on the sale by an affiliated party if sales of the foreign like product by an exporter or producer to affiliated parties account for less than five percent of the total value (or quantity) of the exporter's or producer's sales of the foreign like product in the market in question or if sales to the affiliated party are comparable, as defined in paragraph (c) of this section.

³⁷ 상기 도해의 (4) 관계회사(최종수요자)에게로의 판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³⁸ 상기 도해의 (3) 관계회사(도매상)에게로의 판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³⁹ 최근 99.5% 이상조건은 98-102%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바뀌었다.

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관계회사로의 판매금액 혹은 중량이 비교시장 판매금액 혹은 중량의 5%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관계회사판매를 정상가격 계산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본 사안에서 분쟁의 대상이 된 쟁점은 미국조사당국이 관계회사에 판매한 평균가격이 비관계거래처에 판매한 평균가격의 99.5%⁴⁰ 미만인 경우에는 관계회사로 판매한 가격은 무시되고, 대신 관계회사가 다시 재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 부분이었다. 이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하여 패널은 미국의 이러한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상소기관에서는 패널의 의견을 뒤엎고 미국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였다.

특히 *US - Hot-Rolled Steel*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반덤핑협정 제 2.1 조가 정상가격의 산정시 판매가격을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4 가지 조건을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의미심장한 해석을 하였다:

- ① 당해 판매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졌어야 하고;
- ② 동종물품이어야 하며;
- ③ 당해 물품이 수출국에서 소비용 목적으로 판매되었어야 하며;
- ④ 수출가격과 비교가능한 가격이어야 한다.

⁴⁰ 몇 해 전 해당 99.5% 기준은 98%-102%의 band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상소기관은 반덤핑협정 제 2.4 조가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아니라 다른 주체(여기서는 수출자 혹은 생산자의 관계회사)에 의해 이루어진 판매를 고려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결국 제 2.4 조에도 관계회사에 의한 재판매가격의 사용을 금지하는 의미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소기관은 재판매 가격을 정상 가격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사 당국에게 공정한 비교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주의와 노력을 부과하는 것이지 재판매 가격 자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평결하였다.

상소기관은 반덤핑협정 제 2.1 조상의 정상가격의 정의를 검토하고, 정상가격이란 ①수출국내에서 소비되는, ②동종 물품에 대한 ③정상적 거래에서 ④비교 가능한 가격으로 정의된다고 설명하고, 반드시 수출자에 의해 판매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였다. 또한, 상소기관은 공정한 비교를 규정한 제 2.4 조는 조사 당국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아니라 다른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 판매를 고려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사 당국은 거래 단계(level of trade)를 포함하여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재판매 가격을 정상 가격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사 당국에게 공정한 비교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주의와 노력을 부과하는 것이지 재판매 가격 자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평결하였던 것이다.⁴¹

해당 판정에 근거하여 보면 조사당국은 비교시장 판매자료에서 관계회사로의 판매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의 정상성 ordinary course of trade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즉 관계회사로의 판매자료의

⁴¹ WT/DS184/AB/R Paras. 167-168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관련 거래를 정상가격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관계회사를 통한 재판매의 경우 관계회사 재판매자료를 제출 받아 이를 분석한 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원가계산

반덤핑협정 제 2.2.1.1 조는 구성가격 산정의 목적상 (원가이하 판매에 관한 조사를 수행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임)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자료의 사용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정문 제 2.2.2 조는 구성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원가(비용) 및 이윤의 계산방법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원가계산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평가되는데, 이유는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회사내부자료에 근거한 경우가 많아 이의 입증은 조사당국이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원가는 구성가격산정, 원가이하 판매의 평가 등 정상가격 계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분쟁 역시 많은 것이 현실이다.

[관련 조문]

2.2.1.1 제 2 항의 목적상,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이 수출

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고 있고 고려중에 있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 비용은 일반적으로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에 기초하여 산출된다. 당국은 조사기간중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시한 증거를 포함, 비용의 적절한 할당에 관한 모든 입수가 가능한 증거를 고려한다. 단, 이러한 비용의 할당은 특히 적절한 분할상환 및 감가상각 기간의 설정, 자본지출 및 다른 개발비용에 대한 공제와 관련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전례적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어야 한다. 이 호에 따른 비용할당에 아직 반영되지 못했을 경우, 현재 및/또는 미래의 생산에 혜택을 주는 일회성비용항목 또는 생산개시 가동⁶⁾으로 인하여 조사기간중 비용이 영향을 받는 경우는 비용이 적절히 조정된다.

6) 생산개시 가동에 따른 조정은 생산개시 기간의 마지막 시점에서의 비용을 반영하거나, 그러한 기간이 조사기간을 넘었을 경우 조사기간 동안 당국이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비용을 반영한다.

2.2.2 제 2 항의 목적상 관리, 판매 및 일반비용 그리고 이윤의 금액은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자료에 기초한다.

이러한 금액이 이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는 아래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다.

(i)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

(ii) 조사대상인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의 가중평균,

(iii)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단, 이러한 방법으로 확정된 이윤 액은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실현된 이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조사대상기업은 제출된 원가자료의 이용이 조사당국에 의하여 거부되었을 때 어떤 부분이 왜 의심스러운지 논박하여 스스로의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2.1.1조	US - DRAM (DS99)
제2.2.1.1조가 조사기관에게 회계원칙을 따라야 하거나 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동 조항이 생산비를 계산하는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제2.2.1.1조	US - Softwood Lumber V (DS264)
일반관리비는 그 성질상 한 기업에 의해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물품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특정한 일반관리비용이 특정상 물품에 묶여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관리비용이 물품 전체를 포함하거나 관련이 있다. 또한, 조사대상 물품이 특	제2.2.1.1조	US - Softwood Lumber V (DS264)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p>정 일반관리비 비용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입증하지 않는 이상, 조사당국은 조사대상물품도 전체 일반관리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p>		
<p>제2.2.1.1조에서 말하는 “비용의 적절한 배분에 관한 모든 입수가능한 증거를 고려한다 consider all available evidence on the proper allocation of costs” 는 것은 조사당국에게 숙고하거나 가늠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한 것이며 이 요건은 단순히 접수하였다거나 주목take note of 하는 것으로 충족되지는 않는다.</p>	제2.2.1.1조	US – Softwood Lumber V (DS264)
<p>제2.2.1.1조에서 말하는 ‘고려’라는 개념에 항상 ‘비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사안에 따라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비교 없이도 적절한 고려를 다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p>	제2.2.1.1조	US – Softwood Lumber V (DS264)
<p>법적분쟁해결비용은 생산이나 이윤과 관련한 직접연관 비용이라기 보다는 일반관리비용에 속한다</p>	제2.2.1.1조	US – Softwood Lumber V (DS264)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비용의 생산 또는 판매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조사기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2.1.1조	<i>US – Softwood Lumber V (DS264)</i>

[사례 연구]

US - DRAM -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원가자료의 사용 [제 2.2.1.1 조]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에 대하여 조사당국이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미국을 제소한 *US - DRAM* 이 있다.

미국의 DRAM 제품에 대한 제 3 차 연례행정재심에서 한국의 LG 전자는 원가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미상무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은 이는 반덤핑협정 제 2.2.1.1.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미상무부가 LG 전자가 제출한 원가자료에 대하여 미국 입장에서 ‘상당한 의심’(serious questions)이 존재하였으므로 동 원가 자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한국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무엇인지, 왜 의심스러운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논하지 아니한 채 단지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제출된 원가를 인정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prima facie case* 를 성립시키지 못하였다⁴²고 평결하였다.

⁴² *Prima facie case* 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것은 상대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구체

사실 본 건을 살펴보면 반덤핑협정문 제 2.2.1.1 조와 관련한 패널의 판정이 나왔다고 보다는 오히려 한국측의 분쟁대응과정이 미숙한 점을 지적하였다는 인상이 강하다. 즉 조사대상기업은 제출된 원가자료의 이용이 조사당국에 의하여 거부되었을 때 어떤 부분이 왜 의심스러운지 논박하여 스스로의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시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건의 승소패소에만 집중하여 마치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제출된 자료가 의심스럽다고 하여 함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이 패널에서 인정받았다고 해석하는 오류가 없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본 사안과 유사한 사례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한편, 동 분쟁에서는 원가자료의 이용과 함께 외부기관이 발행한 보고서를 답변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는데 조사당국이 이를 무시한 것에 대한 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동일한 케이스에서 현대전자가 자사의 반도체 가격 전망에 대한 외부 용역보고서 Flamm Study⁴³ 를 제출하였는데 미상무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한국은 이는 반덤핑협정 제 2.2.1.1 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⁴

그러나 패널은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유지하고 있는 기록에 기초하여 원가를 산출하라고 협정 제 2.2.1.1 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현대전자를 대신하여 외부 컨설턴트에 의해 준비된 Flamm Study 상의 예측은 “조사중인

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Prima facie case 자체를 원어 그대로 보면 언뜻 보기에 증거가 확실한 사건으로 반증이 없으면 승소가 될 사건을 말한다. 환언하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가 주장하는 소송원인이나 항변을 일응 충분히 설명하여 상대방의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승소가 되는 상태에 있을 경우,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를 가진다고 말한다. 또한 prima facie evidence란 상대방의 반증에 의하여 뒤엎어지지 않는 한, 어떤 사실의 증명을 위해서 일응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증거, 즉 일응의 증거를 말한다.

⁴³ 비용경향에 관한 계량경제학 연구로서 Flamm study는 예전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의 계획된 향후 비용에 관하여 외부 컨설턴트의 보고서이다.

⁴⁴ WT/DS99/R Para.6.63

수출자나 생산자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 records kept by the exporter or producer under investigation”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⁴⁵ 패널은 Flamm Study 과 관련하여 모호한 가정인 생산일정, 생산능력, 계획 등에 기초한 Flamm Study 의 정확성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미상무부가 동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한국도 패널 단계 이전에 미상무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이 스스로 입증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미상무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US - Softwood Lumber V - 원가계산시 부산물 가치의 차감 [제 2.2.1.1 조]

미국의 경우 실무적으로 생산 혹은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 scrap 의 가치만큼 원가를 공제하여 주는 관행이 있으며 이를 scrap recovery 라고 부른다.⁴⁶ 사실 부산물 scrap 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미 완성품의 원가는 부산물 scarp 이 없었을 때 보다 높아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산물 scrap 의 발생으로 인하여 높아진 원가에 대하여 부산물 scrap 으로 인한 판매가치만큼 원가에서 차감하여 주는 방식인 것이다.

부산물공제 scrap recovery 는 실제로 회사가 어떠한 원가계산방식을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조정방식이 매우 다양하므로 이러한 사례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지면을 요구하고 애당초 부산물공제 scrap recovery 방식의 이해가 본 연구의 핵심은 아니므로 부산물공제 scrap recovery 에 대한

⁴⁵ WT/DS99/R Para.6.66

⁴⁶ 만약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이미 평상시의 원가계산에서 부산물공제를 반영하고 있다면 그냥 이를 scrap recovery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고하면 될 것이다.

상세한 설명은 부득불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본 건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부산물공제 scrap recovery 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통하여 우선 부산물공제 scrap recovery 에 대하여 다음에 서 설명하고자 한다.

3 개의 원료를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자.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된 제조원가는 총 300 원이다. 만약 3 개의 원료를 투입하여 부산물 scrap 없이 3 개의 제품을 생산해냈다면 단위당 제품원가는 '300 원/3 개 =100 원/개' 가 될 것이다.

한편 3 개의 원료를 투입했는데 불행하게도 2 개만 정품으로 완성되고 1 개는 부산물 scrap 으로 남게 되었다면 단위당 제품원가는 어떻게 계산될까? 만약 회사의 원가계산방식이 부산물 scrap 에 대하여 채고금액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위당 제품원가는 일단 '300 원/2 개=150 원/개'가 될 것이다. 즉 부산물 scrap 으로 인하여 (이는 실제로는 수율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단위당 제품원가가 급격히 올라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부산물 scrap 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개당 40 원에 사가겠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라면 단위당 제품원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총 투입 제조원가	300 원	(a)
부산물 공제	40 원	(b)
순 투입 제조원가	260 원	(c=a-b)
총 생산된 제품개수	2 개	(d)
단위당 제품원가	130 원/개	(e=c/d)

위의 계산에서 (b) 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부산물공제 scrap recovery 에 해당한다.

실제로 많은 제조기업들에게서 이러한 부산물공제와 관련된 사례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된다.

이러한 부산물공제 scrap recovery 와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가지고 다투었던 분쟁인 *US - Softwood Lumber V* 사건을 살펴보려 한다.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부산물의 가치를 크게 보게 되면 결국 원가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부산물의 가치를 작게 보면 원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계산될 것이다. 결국 분쟁의 핵심도 부산물의 가치를 어떻게 하든 크게 평가하려고 하는 수출자와 부산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하려고 하는 조사당국간의 입장차이에서 빚어진 것으로, 아래의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배경을 인지한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동 사건은 크게 세 개의 이슈로 다시 분해될 수 있는데, 다음에서 세 개의 이슈로 나누어 논하도록 하겠다.

(i) 부산물의 가치를 시장가치 vs. 내부기록 ?

캐나다의 Tembec 사의 경우 대상제품 생산시 부산물로 wood chip 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된 wood chip 을 내부대체거래를 통하여 자체 펄프 공장으로 이전한다.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대체가격 transfer price 로 부산물 wood chip 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다.

Tembec 은 부산물 wood chip 의 실제 시장가치는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공장과의 대체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부산물 wood chip 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실질을 반영하여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부산물 wood chip 의 가치를 기록된 내부대체가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미국상무부는 Tembec 의 부산물 wood chip 의 내부 판매가격을 시장가격과 비교하고 내부 거래에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한 후, 내부대체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해 특별히 특혜를 주어서 매우 낮게 평가된 것도 아니므로 Tembec 이 자체적으로 기록한 내부대체가격을 이용하여 부산물공제 scrap recovery 를 수행하였다.⁴⁷

이러한 미국 상무부의 결정에 대하여 캐나다는 2.2.1.1 조의 내용을 보면 부산물가치는 시장가격을 기준 benchmark 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미국이 시장가격에 비해 저평가된 내부 거래가격으로 부산물공제 scrap recovery 액을 계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캐나다의 주장을 기각하였는데, 패널은 2.2.1.1 의 내용에서 부산물 판매가격이 반드시 시장가격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술이 없으며 부산물 wood chip 의 실제 내부거래가격(투입요소의 실제기록원가)을 사용하는 것이 2.2.1.1 에 합치되지 않거나 조사당국의 편견 또는 비객관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패널은 우선 반덤핑협정 제 2.2.1.1 조가 조사기관에게 회계원칙을 따라야 하거나 대상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다만 그러한 기록들이 회계원칙을 따르고 합리적으로 판매 및 생산비와 관련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경우, 조사기관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기록에 근거하여 원가나 비용을 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⁴⁸ 또한, 동 조

⁴⁷ WT/DS264/R, Paras. 7.298-300.

⁴⁸ WT/DS264/R, Paras. 7.261-265.

항이 생산비를 계산하는 특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국상무부가 Tembec 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시한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았고, 상소기관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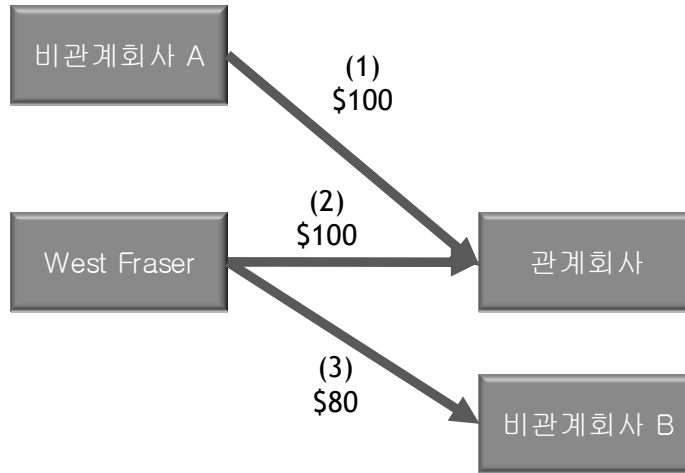
(ii) 관계회사에 판매된 부산물의 가치평가는 ?

캐나다의 West Fraser 사의 경우에도 대상제품 생산시 부산물로 wood chip 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된 wood chip 을 대부분 관계회사에게 판매하고 있다. 또한 West Fraser 는 관계회사에게 판매한 부산물 가격이 공정가격 arm's length price ⁴⁹ 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계회사가 비관계회사로부터 구매한 동일한 부산물 구매가격과 비교한 다음, 둘의 가격이 서로 비슷하므로 West Fraser 가 관계회사로 판매한 부산물 가격은 공정가격 arm's length price 에 해당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부산물공제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상무부는 West Fraser 가 실시한 비교방법과 표본추출이 미국상무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West Fraser 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West Fraser 는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상무부는 West Fraser 사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관계회사로 판매된 부산물 wood chip 의 판매가격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비관계회사에게 판매된 부산물 wood chip 의 판매가격을 평균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산물공제 scrap recovery 를 계산하였다.

⁴⁹ Arm's length 는 일반적으로 친밀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국제통상에서 사용되는 Arm's length price는 관계회사간 거래와 대비하여 비관계회사간에 이루어질만한 공정한 거래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양측의 주장을 도해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즉, West Fraser 는 (2) 를 주장하면서 (2)의 공정가격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1)과 (2)를 비교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미국상무부는 (3)이 공정가격이므로 이를 이용한 것이다.



해당 논쟁은 사실 관계회사간 거래가 공정가격에 의하였는지를 입증하는 방식과도 연관을 가지는데, 실무적으로는 공정가격 arm's length price 를 먼저 구한 다음 이를 관계회사간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공정성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때 공정가격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격들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조사대상업체와 비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의 가격
- 관계회사와 비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의 가격
- 비관계회사간의 거래에서의 가격

한편 이전가격세제 transfer pricing 의 비교가능제삼자가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로 위에서 언급한 가격들이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중에서도 해당업체와 비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의 가격이 가장 우선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50

캐나다는 미국상무부가 비관계회사가 West Fraser 의 관계회사에 판매한 가격②을 무시하고 West Fraser 가 비관계회사에게 판매한 가격③을 기준으로 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였고, 더군다나 West Fraser 가 비관계회사에게 판매한 양이 매우 적으므로 시장가격으로의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미국 상무부가 West Fraser 에게 자료부족을 이유로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으나 West Fraser 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한 점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상황에서 조사당국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계속 이용하라고 조사당국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상무부의 판정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West Fraser 가 비관계회사에게 판매한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시장가격으로서의 대표성이 없다는 캐나다의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이러한 주장이 최종판정이후에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조사당국에게 있어 최종판정 이후에 제기된 주장까지 고려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비록 해당 주장이 최종판정이전에 제기되었다 할지라도 공정가격 arm's length price 혹은 시장가격을 판단함에 있어 판매량이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전제하고 조사기록에 따르면 미국상무부는 West Fraser 가 비관계회사에게 판매한 부산물 scrap 의 가격을 부산물공제 scrap recovery 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고 캐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iii)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부산물공제방법은 동일하여야 하나..

패널은 Tembec 과 West Fraser 대하여 미 상무부가 공평한 방법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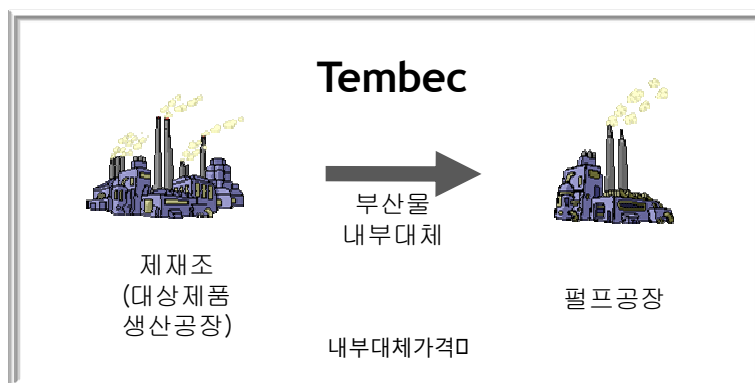
50 2007 이전가격세제의 이해와 실무 p.69 - 국세청 -

하지 아니하였다는 캐나다의 주장에 대하여 두 기업에 대한 사실관계 (상황)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Tembec 의 경우 제재소와 펄프공장이 같이 포함된 하나의 실체이나, West Fraser 는 분리된 법적 실체이므로 두 기업에 대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동 사건의 패널은 상무부에 의한 Tembec 과 West Fraser 의 부산물 공제의 계산이 반덤핑협정 제 2.2.1.1 조에 부합한다고 평결하였다.⁵¹

또한, 상소기관도 미상무부가 사용한 방법이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패널의 평결을 인정하였다.⁵²

아래에 이러한 상황을 도해하였는데, 상소기관에서 인정된 미국상무부의 부산물 가치평가의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⁵¹ WT/DS264/R, Paras. 7.309-311.

⁵² WT/DS264/AB/R, Paras. 166-180.

US - *Softwood Lumber V* - 부분별 일반관리비 vs. 회사전체 일반관리비 [제 2.2.1.1 조]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구성요소중의 하나인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EU 의 경우에는 부분별 일반관리비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부분별 일반관리비보다는 회사전체의 일반관리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문제, 미국이 캐나다산 소프트우드 림버에 대하여 사용한 소위 회사전체 (company-wide)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 G&A;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를 산정한 방법이 US - *Softwood Lumber V* 사건에서 다뤄졌다.

동 사건에서 조사대상 기업중의 하나인 캐나다의 Tembec 은 5 개의 사업 부분으로 이루어진 기업으로서,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조사대상제품인 소프트우드 림버를 생산하는 제재소로 이루어진 FPG 부분 이었다. Tembec 의 2000 년도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는 회사 전체의 일반관리비를 보고하였으나,⁵³ 내부 재무제표는 일반관리비를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반덤핑조사과정에서 미국상무부는 Tembec 에게 전체 회사전체 일반관리비용을 기준으로 회사전체의 G&A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조사대상제품의 원가계산에 이용하라고 요구하였으나⁵⁴, Tembec 은 FPG 부분의 일반관리비를

⁵³ 감사보고서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공시자료이므로 내부부분별 재무제표를 공시하기보다는 회사전체의 재무제표만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⁵⁴ 이는 전형적인 미국상무성의 관행이며, 실제 미국상무성의 반덤핑질문서 Section D의 III. D.1. 에 보면 아래와 같이 회사전체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용을 계산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Compute G&A expenses on an annual basis as a ratio of ***total company-wide***

기준으로 부분별 G&A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제출하였고, 미국상무부는 이러한 Tembec 의 자료를 배제하였다.

캐나다는 미국상무부가 Tembec 이 제출한 증거를 거부하고 전체 회사 기반 (company-wide)의 비용에 근거하여 발생한 일반관리비용을 계산함으로써 소프트웨어 림버의 생산과 판매와 관련한 원가 혹은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반덤핑협정 제 2.2.1.1 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⁵

그러나 패널은 미국상무부가 조사기간 동안 Tembec 이 제출한 방법을 검토한 후 이를 거부한 자체는 반덤핑협정 제 2.2.1.1 조 위반은 아니며, 조사당국의 거부하는 의사결정은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제 2.2.1.1 조는 특정한 일반관리비 계산 방식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산방식의 선정은 조사당국의 재량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본건의 핵심은 Tembec 의 계산방식이 미국상무부의 것보다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 하였다. 패널이 Tembec 의 계산방식을 검토한 결과 Tembec 의 부분별 구분이 정확했는지에 대하여 Tembec 의 입증책임이 있는데 Tembec 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패널은 일반관리비가 그 성질상 한 기업에 의해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물품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즉, 패널은 특정한 일반관리비용이 특정상 물품에 묶여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관리비 비

G&A expenses divided by cost of goods sold (“COGS”). In calculating your company’s G&A ratio, use the full-year G&A expense and COGS *reported in your company’s audited fiscal year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fiscal year that most closely corresponds to the POI. Demonstrate how the G&A expenses and the COGS used in the ratio reconcile to *your company’s audited fiscal year financial statements*. -

⁵⁵ WT/DS264/R, Para. 7.244.

용이 물품 전체를 포함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⁵⁶ 또한, 패넬은 조사대상 물품이 특정 일반관리비 비용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입증하지 않는 이상, 조사당국은 조사대상물품도 전체 일반관리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패넬은 동 사건에서 Tembec 이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하였다고 지적하고 미국상무부가 다른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이 반덤핑협정 제 2.2.1.1 조 위반은 아니라고 평결하였다.⁵⁷

US - Softwood Lumber V - 부분별 이자비용 vs. 회사전체 이자비용 [제 2.2.1.1 조]

일반관리비와 마찬가지로, 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구성요소중의 하나인 이자비용을 계산하는데 있어, 미국의 경우에는 부분별 이자비용보다는 회사 전체, 심지어는 그룹전체의⁵⁸ 이자비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문제, 미국이 캐나다산 소프트우드 럼버에 대하여 사용한 소위 회사전체 (company-wide)를 기준으로 이자비용 INTEX; interest expenses 를

⁵⁶ WT/DS264/R, Paras. 7.261-265.

⁵⁷ WT/DS264/R, Para. 7.224.

⁵⁸ 이를 fungibility issue 라고 부르는데, 미국은 이자, 즉 돈의 사용에는 꼬리표를 달수 없기 때문에, 부분 혹은 회사단위로 볼게 아니라 그룹전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실제 미국상무성의 반덤핑질문서 Section D의 III. D.2. 에 보면 아래와 같이 그룹전체 기준으로 이자비용을 계산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If your company is a member of a consolidated group of companies, calculate your financial expense based on the consolidated audited fiscal year financial statements of the highest consolidation level available. In calculating your company's net interest ratio, use the full-year net interest expense and COGS reported in the consolidated audited fiscal year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period that most closely corresponds to the POI. -

산정한 방법이 *US - Softwood Lumber V* 사건에서 다뤄졌다.

문제의 발단은 캐나다의 Abitibi 사가 이자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미국상무부의 일반적인 요청을 따르지 않고 부분별 이자비용을 보고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Abitibi 는 조사대상제품은 다른 생산제품과 달리 생산 설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회사전체의 이자비용을 설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asset based ratio) 조사대상제품부분에 한정된 부분이자비용을 계산하여 제출한 것이다.

미상무부는 캐나다의 이러한 계산방식을 부정하고 회사전체 기준의 이자비용을 스스로 산출하였다.

캐나다는 미상무부가 Abitibi 가 제출한 부분별이자비용계산을 부인하고, 일반적인 관행에 의하여 회사전체이자비용을 계산한 것은 다음의 세가지 점에서 제2.2.1.1과 제2.2.2 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패널은 미국측의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하 세가지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i) 미국상무부가 비용의 적절한 배분에 관한 모든 입수 가능한 증거를 고려하였느냐...

패널은 제2.2.1.1 이

- 조사당국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에 따라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거나, 계산된 비용이 조사대상물품과 관련된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 수출자 혹은 생산자의 기록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써 수출자 혹은 생산자의 기록이 GAAP 을 준수한 것이고

조사대상물품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면, 이 기록에 기초하여 원가나 비용을 산출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위의 해석을 기반으로 패널은 특정사안에 충실한 case specific 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캐나다의 주장과는 달리 미상무부가 Abitibi 의 주장을 검토한 사실이 인정이 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이 일반적인 회사전체의 이자비용계산방식을 적용한 것이 제2.2.1.1조의 모든 입수가능한 증거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패널은 동 조항에 따라 비용이 일반적으로 생산자나 수출자가 기재해 둔 기록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러한 기록이 합리적으로 생산 및 판매 비용을 반영하고 있을때 적용된다고 평결하였다.⁵⁹

한편 패널은 모든 입수가능한 증거를 “고려”하라는 것이 각각의 계산방식의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배부방법을 비교하라는 의무를 조사당국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고려”에 대한 패널의 견해에 대해서는 상소기관에서 번복되었으나, 미국측 방식이 협정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패널의 의견 자체는 상소기관에서의 번복은 없었다.

상소기관은 패널이 동 조항에 사용된 ‘고려’의 의미와 범위를 적절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고려’의 의미는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look at attentively 숙고하거나 reflect on 비교 또는 가늠한다 weigh the merits of 는 의미로서 이 조항에서 말하는 “비용의 적절한 배분에 관한 모든 입수가능한 증거를 고려한다 consider all available evidence on the proper allocation of costs” 는 것은 조사당국에게 숙고하거나 가늠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한

⁵⁹ WT/DS264/R, Para. 7.242.

것이며 이 요건은 단순히 접수하였다거나 주목take note of 하는 것으로 충족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상소기관은 '고려'라는 개념에 항상 '비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사안에 따라 비교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비교 없이도 적절한 고려를 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상소기관은 제 2.2.1.1조에 대한 패널의 법률적 해석 중 '고려는 비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부분의 오류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덧붙인 것이다.

(ii) 미 상무부의 회사전체이자비용계산방식은 조사대상제품의 이자비용을 상대적으로 과다계상 하게 되었는데, 조사대상제품의 생산과 판매와 관련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라는 조항을 위배한 것이 아닌가

패널은 제2.2.1.1. 은 수출자의 기록이 조사대상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면 이를 기반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보았다. 또한 Abitibi 의 부분별이자비용계산방식이나 미국의 회사전체이자비용계산방식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둘 다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사당국의 입장에서 가장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것으로 판단되는 계산방식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고 지적하고 캐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ii) 미국의 회사전체이자비용 계산방식은 조사대상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실제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이자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게 되므로 협정문을 위반한 것이 되는가

패널은 캐나다가 미국이 실제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미상무부의 방식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패널의 판

단으로는 공평하고 객관적인 조사당국인 경우에 회사전체이자비용계산방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캐나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US - Softwood Lumber V - 분쟁해결비용의 일반관리비 포함여부 [제 2.2.2 조]

반덤핑협정 제 2.2.2 조는 일반관리 비용의 산정시 조사대상자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시현한 실제 자료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일반관리비의 범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일반관리비용에 분쟁해결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았는데, 이는 *US - Softwood Lumber V* 사건에서 다루졌다.

동 사건의 제소국인 캐나다는 미상무부가 조사대상기업중의 하나인 Weyerhaeuser Canada 의 일반관리비용 산정시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비용을 포함시켜 당해 비용을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동 비용이 소프트우드 럼버의 생산과 판매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반덤핑협정 제 2.2.2 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캐나다는 법적분쟁해결비용은 생산과 판매와 관련된 직접비용이지, 일반관리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⁶⁰

즉 캐나다는 법적분쟁해결비용은 생산과 판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이므로 그 해당 연관성을 추적해야 할 것이고, 사건의 중심에 있는 법적분쟁해결비용이 조사대상제품과 연관이 없다는 논리로 해당 비용을 원가계산에서 제외시키려고 한 것이다. 반면 법적분쟁해결비용을 일반관리비로 본다

⁶⁰ WT/DS264/R, Para. 7.272.

면 아무래도 회사전체제품에 골고루 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이를 일반관리비로 보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Weyerhaeuser 는 캐나다 소프트웨어 럼버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당해 기업의 일반관리비용과 모기업의 일반관리비용을 보고하였으나, 일부 목재 (hardboard siding)와 관련한 법적분쟁해결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은 제외하였다. 당해 법적분쟁은 1981 년-1999 년 기간 동안 미국에서 동 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미상무부는 동 비용을 일반관리비에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⁶¹

패널은 법적분쟁해결비용이 생산이나 이윤과 관련한 직접연관 비용이라기 보다는 일반관리비용에 속한다는 상무부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생산 또는 판매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조사기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제출된 기록을 검토하여야 하는 의무는 특정한 조건이 만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기존의 평결을 반복함으로써, 반덤핑협정 제 2.2.2 조 위반이 아니라고 평결하였다.⁶²

3. 구성가격

반덤핑협정 제 2.2 조는 국내판매가격을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범위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SG&A), 이윤(Profit)을 합산한 구성가격으로 정상가격의 기초를 삼을

⁶¹ WT/DS264/R, Paras. 7.270-271.

⁶² WT/DS264/R, Paras. 7.295-297.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제 2.2 조는 수출국 국내시장 내에 정상적 거래에 의한 동종물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나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 또는 소규모의 판매물량 등으로 양 가격간에 적절한 비교가 어려운 경우 정상가격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문]

2.2 수출국의 국내시장내에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 상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출국 국내시장 2)의 특별한 시장상황 또는 소규모의 판매때문에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덤핑마진은 동종 상품의 적절한 제 3 국 수출시 비교가능한 가격으로서 대표적인 경우 동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생산비용에 합리적인 금액의 관리비, 판매비, 일반비용과 이윤을 합산한 가격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소비되는 동종 상품의 판매가 고려대상 상품의 수입회원국에 대한 판매의 5% 또는 그 이상을 점하는 경우, 이러한 판매는 일반적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충분한 규모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낮은 비율이하의 국내 판매가 적절한 비교 제공을 위해 충분한 규모라는 증거가 제시될 경우에도 동 낮은 비율은 수락가능하여야 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제출된 판매자료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성가격을 이용할 수 있다	제2.2.2조	<i>Korea - Certain Paper (DS312)</i>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p>조사당국이 구성가격의 계산에 있어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사당국은 적절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즉,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구성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조사당국은 회사의 영업상태, 규모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p>	제2.2.2조	<i>Korea - Certain Paper (DS312)</i>
<p>제2.2.2조 전문 (chapeau)은 조사당국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판매 및 생산에서 파악된 자료만을 배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매출이라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속한다면 구성가격 산정에 이용할 수 있다.</p>	제2.2.2조	<i>EC - Pipe Fittings (DS219)</i>
<p>제2.2조에서 소규모 매출과 비정상적인 판매를 다른 별개의 경우로 보고 있다.</p>	제2.2조 제2.2.2조	<i>EC - Pipe Fittings (DS219)</i>
<p>설령 반덤핑조사의 제소자가 원가미만 판매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2.1조와 2.2조의 어떤 내용도 조사당국이 원가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즉 비록 원가미만</p>	제2.1조 제2.2조	<i>Guatemala - Cement II (DS156)</i>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판매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또한 구성가격이 이용되지 않고 비교시장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이 산정되는 케이스라 할지라도 조사당국에 의한 원가정보요청은 가능하다		
제2.2.2조의 예시 중 특히 (i) 과 (ii)는 그 자체로 이미 합리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별도로 합리성여부에 대한 검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제2.2조 제2.2.2조	EC - Bed Linen (DS141)
반덤핑협정 제2.2.2조의 (i), (ii), (iii)을 적용함에 있어 우선순위는 없다	제2.2.2조	EC - Bed Linen (DS141)
제2.2.2(ii)의 ‘다른 수출자들 혹은 생산자들’(other Exporters or producers)은 단수에 적용되지 않고 복수의 개념이다.	제2.2.2(ii)조	EC - Bed Linen (DS141)
제2.2.2(i)이나 (ii)에 의해 구성가격을 구할때는 원가미만의 거래, 즉 손실을 기록한 거래도 포함되어 이윤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제2.2.2(i), (ii)조	EC - Bed Linen (DS141)

[사례 연구]

Korea - Certain Paper - 구성가격 이용 요건 [제 2.2.2 조]

Korea - Certain Paper 사건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무역위원회가 동종 물품의 부재, 적절 비교 불능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판단 없이 구성가격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행위가 반덤핑협정 제 2.2 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⁶³

동 사건의 패널은 한국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검증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기각한 것이 정당하며, 따라서 제 2.2 조상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가 제 2.2 조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평결하였다.⁶⁴

즉, 제출된 판매자료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성가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Korea - Certain Paper - 구성가격계산시 이용가능한 자료(facts available)의 이용 [제 2.2.2 조]

분쟁의 핵심은 구성가격을 계산하는데 있어 조사대상업체의 자료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한 것이었다.

⁶³ WT/DS312/R Para 4.18

⁶⁴ WT/DS312/R Para 7.94. 그러나 동 쟁점과 관련하여 패널은 한국이 반덤핑협정 제6.8조 및 부속서 II의 7항을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동 보고서, P. 참고.

동 쟁점과 관련하여 패널은 조사당국이 구성가격의 계산에 있어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패널이 지적한 바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조사대상업체와 영업상태가 유사한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당국이 적절한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영업상태가 다른 회사의 자료를 이용한 것은 반덤핑협정문 제 6.8 및 부속서 II 의 7 조에 위반한다고 평결하였다.

해당 판정에서 주목할 만한 바는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회사의 영업상태, 규모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사실 이 판정을 구성가격 산정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본다면, 이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사당국이 회사의 영업상태, 규모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포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해당 사례를 보면 패널은 제조회사는 대규모 설비투자 등이 필요하여 자본투자가 판매회사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제조회사의 재무비용이 판매회사의 재무비용보다는 높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판매회사의 재무비용을 계산함에 있어 제조회사의 재무비용자료를 적절한 설명 없이 이용가능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았다.

반덤핑협정 제 6.8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6.8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항의 적용에 있어서 부속서 2 의 규정이 준수된다.

반덤핑협정 부속서 제 II 의 7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제 II 의 7 당국이 조사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 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정상가격에 관한 조사결과를 포함한 판정을 내려야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국은 가능하다면 공표된 가격표, 공식 수입통계 및 세관보고서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EC - Pipe Fittings - 소규모 판매 자료에 근거한 구성가격 계산 [제 2.2.2 조]

반덤핑협정문 제 2.2 조에서는 수출국의 국내시장을 정상가격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동종물품의 판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이 있는 경우
- 수출국 국내시장의 판매가 소규모인 경우

한편 반덤핑협정문 제 2.2.2 조는 구성가격계산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동종물품의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실제자료에 기초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국내시장 판매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구성가격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계산하기로 하였을 때, 구성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 소규모의 국내판매자료에 근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쟁점은 *EC - Pipe Fittings* 사건에서 다뤄졌다. 해당 사건에서 패널은 소규모의 국내판매가 국내의 판매상황을 대표할 수는 없어서 비록 정상가격의 산정기준으로는 사용되지 못하더라도 소규모판매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거래이기만 한다면 구성가격의 산정에는 이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 2.2.2 조 전문 (*chapeau*)은 조사당국이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판매 및 생산에서 파악된 자료만을 배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매출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결하였다.⁶⁵

또한 상소기관에서도 패널의 의견을 지지하였는데, 상소기관은 조사당국이 구성정상가격 산정을 위하여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산정할 때 소규모 매출을 통한 자료를 반드시 배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상소기관은 동 협정 제 2.2 조는 소규모 매출을 통상적인 경로이외의 판매와는 다른 별개의 경우로 적시하고 있으나, 제 2.2.2 조 전문 *chapeau* 조항은 명백히 통상적인 경로 이외의 판매만을 배제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동 조항과 관련하여 소규모 매출로 인한 자료는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⁶⁶ 즉, 상소기관은 동 사건에서와 같이 소규모 매출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거래에 속하는 경우에는 구성정상가격 산정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이윤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규모 매출에 관한 자료를 구성가격 산정에 포함하여도 적법하다고 평결하였다.⁶⁷

⁶⁵ WT/DS219/R, Paras. 7.135-136.

⁶⁶ WT/DS219/AB/R, Paras. 97-98.

⁶⁷ WT/DS219/AB/R, Paras. 101-102.

Guatemala - Cement II - 원가정보의 요청과 사용 [제 2.1 조, 제 2.2 조]

반덤핑조사 중 특히 덤핑부분에 대한 조사에 있어 대부분⁶⁸의 나라의 질 문서를 보면 원가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원가정보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이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 (i) 비교시장판매가격의 원가이하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cost below test
- (ii) 수출시장가격과 비교될 구성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constructed value
- (iii) 비교시장물품과 수출시장물품의 차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difference in merchandise

한편 원가정보의 요청과 관련한 사건으로는 *Guatemala - Cement II* 분쟁사건이 있다. 멕시코는 *Guatemala - Cement II* 사건에서 과테말라 당국이 가격정보에 근거하여 케이스를 진행하였으며, (즉, 구성가격을 계산하지 않으니 이를 위한 원가정보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원가이하로 판매하였다는 제소내용도 없었으므로 (즉, 원가이하판매에 대한 제소내용이 없었으므로 관련 원가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는 과테말라 당국이 답변자에게 원가정보 cost information 을 요청한 것이 반덤핑협정문 제 2.1 조와 제 2.2 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멕시코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패널은 제 2.1.조와 제 2.2 조에는 원가정보요청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과테말라 당국의 원

⁶⁸ 연구자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반덤핑조사를 경험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실상 연구자가 경험한 모든 나라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가정보요청은 반덤핑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멕시코의 주장을 기각하였다.⁶⁹

패널은 설령 반덤핑조사의 제소자가 원가미만 판매를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 2.1 조와 2.2 조의 어떤 내용도 조사당국이 원가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해당 판정에 따라 비록 원가미만 판매테스트를 수행하지 않고, 또한 구성가격이 이용되지 않고 비교시장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이 산정되는 케이스라 할지라도 조사당국에 의한 원가정보요청은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EC - Bed Linen - 예외적인 구성가격계산 예시의 합리성[제 2.2 조 및 제 2.2.2(ii)조]

반덤핑협정 제 2.2.2 조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 비용 등의 산정시 조사대상자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시현한 실제 자료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방법으로 산출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에 의거 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i) 당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
- (ii) 조사대상인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 시장에서 동종 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⁶⁹ WT/DS156/R Para. 8.183

실제 금액의 가중평균;

- (iii)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 단, 이러한 방법으로 확정된 이윤 금액은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동일한 일반적인 부류의 물품의 판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실현된 이윤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협정문의 제 2.2 에서 명시하는 것처럼 구성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은 “합리적 reasonable”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반덤핑협정문 제 2.2.2 조에 보면 예외적으로 구성가격을 구하는 예시가 3 가지 나오는데, 이 세가지 예 중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i) 과 (ii) 는 합리성의 조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느냐 아니면 별도의 독립적인 합리성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야지만 인정되는 방법론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EC - Bed Linen 사건에서 제소국인 인도는 구성 정상가격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제 2.2 조를 원용하여 동 조항의 ‘합리적인’(reasonable)이라는 단어는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제 2.2.2 조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도는 제 2.2.2(iii) 은 제 2.2.2 조 서문과 (i)호 및 (ii)호 하의 테스트로서 사용되는 ‘합리적인’의 정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제 2.2.2 (ii) 방법론 하에 있는 어떤 계산이라도 독립적인 합리성 테스트 (separate reasonable test)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EC 가 제 2.2.2(ii)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조사대상기업인 Bombay Dyeing 의 이윤에 기초하여 18%의 이윤율을 계산하고 다른 인도 수출자들에게 적용하고, 다른 국가의 생산자들에는 5-7%의 이윤율만 적용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제 2.2.2 조의 3 개 항목은 제 2.2 조가 언급하고 있는 합리적인

비용 산정의 대체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그 정의 자체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를 토대로 계산된 액수가 합리적인지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평결하였다.⁷⁰

따라서 패널의 판정에 따라 2.2.2 조의 예시 중 특히 (i) 과 (ii) 는 그 자체로 이미 합리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별도로 합리성여부에 대한 검증은 가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EC - Bed Linen - 예외적인 구성가격 산정방법 예시간의 우선순위 [제 2.2.2(i)~(iii)조]

반덤핑협정 제 2.2.2 조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 비용 등의 산정시 조사대상자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시현한 실제 자료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방법으로 산출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3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이 먼저 적용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EC - Bed Linen* 사건에서 논의되었다.

동 사건에서 EC 는 관리, 판매, 일반비 및 이윤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반덤핑협정 제 2.2.2 조 (ii)방법에 근거하여 인도산 침구류에 대한 구성가격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인도는 반덤핑협정 제 2.2.2 조의 (i), (ii), (iii)은 적용 우선 순위로 나열된 것이므로 EC 가 (ii)의 기준을 (i)에 우선하여 적용한 것은 반덤핑협정 제 2.2.2 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세 가지 기준 중 어느 기준이 더 나은(better) 기준

⁷⁰ WT/DS141/R Paras. 6.95-6.97

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동 규정의 (i), (ii), (iii)은 상호간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⁷¹ 따라서 패넬은 반덤핑협정 제 2.2.2 조의 (i), (ii), (iii)을 적용함에 있어 우선순위는 없다고 평결하였다.

이 판정은 특히 비록 제 2.2.2 조의 예시 (i) 과 (ii) 가 상세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타 합리적인 방법론이라고 총괄적으로 명시한 (iii) 에 의한 방법론을 적용하더라도 이 것이 (i)과 (ii)에 비하여 적용순서에 있어서 열등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는데, 직관적으로 상세한 예시가 있고 기타 등등의 방법이라고 표현된 경우 상세한 예시가 우선되리라고 생각하는 직관에 반하는 판정이라 할 것이다.

EC - Bed Linen - 구성가격 산정시 포함되는 수출자들의 수 [제 2.2.2 조]

반덤핑협정 제 2.2.2 조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 비용 등의 산정시 조사대상자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시현한 실제 자료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방법으로 산출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는 반덤핑협정 제 2.2.2(ii)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해당 회사가 아닌 다른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 시장에서 동종 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의 가중평균에 근거하는 방법이다.

인도는 *EC - Bed Linen* 사건에서 EC가 제 2.2.2(ii)조를 적용함에 있어 조문이 복수의 생산자를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EC가 단 하나의 다른 생산자로부터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동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⁷¹ WT/DS141/R Paras.6.59-6.61

인도는 제 2.2.2 조에서 '다른 수출자들 혹은 생산자들'의 복수로 나타내고 있으며, '가중평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하나 이상의 회사의 자료에 대한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임에도, EC는 Bombay Dyeing 만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제 2.2.2(ii) 단수에도 적용된다 하여 인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소기관은 이러한 패널의 판단을 거부하였다. 상소기관은 '다른 수출자들 혹은 생산자들'(other Exporters or producers)는 단수형을 포함한다고 보지 않았다. 또한, 가중평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를 초과하는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 관리비 및 이익률의 평균 금액이라는 개념은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하나일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평결하여 인도의 주장을 지지하였다.⁷²

EC - Bed Linen - 구성가격 계산에 있어 원가미만의 판매의 배제 여부 [제 2.2.2(ii)조]

반덤핑협정 제 2.2.2 조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 비용 등의 산정시 조사대상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실현한 실제 자료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방법으로 산출될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방법 중의 하나는 반덤핑협정 제 2.2.2(ii)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대상인 다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원산지국의 국내시장에서 동종 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실현된 실제 금액의 가중평균에 근거하는 방법이다.

⁷² WT/DS141/AB/R Paras. 72-77

실무적으로 구성가격을 계산한다 함은 원가 및 판매자료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원가, 비용, 이윤 등을 하나씩 구성하여 합산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특히 이윤을 추정함에 있어 판매자료를 어디까지 이용할 것이냐, 즉 모든 판매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자료에만 기초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거래의 조건으로 원가이상일 것이 필요하다면, 원가 미만 정보까지 포괄하여 이윤을 추정한 결과와 원가이상인 자료에 기초하여 이윤을 추정한 결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조사업체는 구성가격이 낮게 평가되기를 희망할 것이므로 당연히 구성가격에 이용되는 이윤도 낮게 평가되기를 원할 것이고 결국 이윤을 구하는데 이용되는 판매자료는 원가미만 거래까지 포괄하는 것을 바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논쟁의 여지가 생기는 이유는 협정문 제 2.2.2 의 예시에 특히 (i)과 (ii)에 있어 정상적인 거래조건이라는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표현이 명시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분쟁사건으로 EC - Bed Linen 사건이 있는데 패널의 의견이 다시 상소기관에서 반복된 쟁점사안이었다.

인도가 주장하기를, EC 가 EC - Bed Linen 사건에서 구성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를 고려했다기 보다는 정상적인 거래만을 토대로 이를 산출하고 원가 이하의 거래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조건은 제 2.2.2 조 서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제 2.2.2(ii)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제 2 조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원가 이하 판매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패널은 제 2.2.2(ii)조가 원가 이

하 판매를 배제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았으나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 당국은 원가 이하 판매 포함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⁷³

그러나 상소기관은 패널의 판단을 거부하였다. 상소기관은 제 2.2.2(ii) 조는 어떠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상소기관은 제 2.2.2(ii) 조는 다른 수출자 혹은 생산자로부터 실제로 발생하였고 실현된 가중평균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어떠한 예외나 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중평균의 계산은 그 금액이 정상거래 내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평결하였다.⁷⁴

상소기관의 판정에 비춰보면 제 2.2.2(i)이나 (ii)에 의해 구성가격을 구할 때는 원가미만의 거래, 즉 손실을 기록한 거래도 포함되어 이윤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판정을 실무에서 적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제 2.2.2 의 (i) 과 (ii)는 예외적인 구성가격 산정방식을 기술한 것이고 보다 일반적이고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방식은 제 2.2.2 의 전문 chapeau 에 있는 통상의 상거래 in the course of trade 의 조건을 적용 받아 원가미만의 판매는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 2.2.2 의 전문 chapeau 에 있는 통상적 상거래 in the course of trade 조항은 협정문 제정당시 논란이 있었던 문안으로, 당초 비용 및 이윤의 산정에 있어서는 원가이하의 판매를 포함하는, 즉 통상적이 아닌 상거래

⁷³ WT/DS141/R Paras. 6.84-86

⁷⁴ WT/DS141/AB/R Paras. 79-84

로 형성된 것도 모두 포함시켜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⁷⁵

⁷⁵ 신국제반덤핑법 p.19 이춘삼 청주대학교 출판부

제 3 절 공정한 비교

반덤핑협정 제 2.4 조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 공정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단계, 통상적으로 공장도 단계에서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당국은 제반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징의 차이 등을 포함한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타 차이점들에 대해서 매 건마다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요소들 중 일부는 중첩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하고 당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수출가격을 규정한 제 2.3 조의 경우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제반 과세를 포함한 비용 및 그로 인한 이윤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 경우에 가격비교가 영향을 받았다면 당국은 구성수출가격과 동일한 거래단계에서의 정상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 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적절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당 국은 공정가격비교를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동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 책임을 지워서 안된다.

이하 주제별로 공정한 비교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 물리적 특성에 따른 차이 조정
- 운송비의 조정
- 조세영향 고려

- 포장비
- 선물 거래 수익
- 가격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의 증명
- 번역되지 아니한 외국어 자료의 반영여부
- 화폐환산
- 판매 대금 미지급 거래 처리 문제

[관련 조문]

2.4.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에 공정한 비교를 한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 공장도단계에서 그리고 가능한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행하여진다. 제반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와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명된 그 밖의 차이점들을 포함하여 가격비교 7)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고려한다. 제 3 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관세 및 조세를 포함한 비용 및 발생한 이윤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가격비교가 영향을 받을 때에는 당국은 구성수출가격의 거래단계와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정상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 항에 따라 정당화된 적절한 고려를 한다. 당국은 공정한 가격비교를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당해 당사자에게 알리며, 이러한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책임을 지워서는 아니된다.

7) 위의 요소들 중 일부는 중첩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하고 당국은 이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p>협정 제2.4조는 조사 당국이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비교해야 한다는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매 건마다 그 내용에 따라서'(in each case on its merits)라는 의미는 가격 비교성(price comparability)을 유지하고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간의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adjustment)가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 당국은 적어도 물리적 특성상의 차이를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p>	<p>제2.4조 물리적특성</p>	<p><i>Argentina - Ceramic Tiles (DS189)</i></p>
<p>반덤핑협정 제2.4조가 차이가 있는 모든 경우에 조정을 자동적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가격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제2.4조 물리적특성</p>	<p><i>US - Softwood Lumber V (DS264)</i></p>
<p>비록 운송비용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가 적절하지 않아 조사당국이 이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최종결정시 그</p>	<p>제2.4조 운송비</p>	<p><i>Argentina - Poultry (DS241)</i></p>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이 공정한 비교를 보장하는 의무가 있는 반면, 이해당사자들도 가능한 한 구조적으로 조정에 대한 주장을 실체화 할 의무가 있다	제2.4조 조세차이	<i>EC - Pipe Fittings (DS219)</i>
반덤핑협정 제2.4조의 공정한 비교 의무와 관련하여 조사당국이 반드시 관련된 자료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표본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2.4조 조세차이	<i>EC - Pipe Fittings (DS219)</i>
현지실사는 재량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입증verification은 원칙적으로 서류검증을 통해 이루어는 것으로써 현지실사는 이를 보충하는 것이다	제2.4조 포장비	<i>EC - Pipe Fittings (DS219)</i>
제2.4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①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의 차이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차이는 또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주었어야 한다 ③ 가격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영향은	제2.4조 선물거래수익	<i>US - Softwood Lumber V (DS264)</i>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에 의하였는지 파악되어야 한다.		
반덤핑협정 제2.4조에 관한 prima facie case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과, 그 차이가 실제로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2.4조 가격차이증명	<i>Korea - Certain Paper (DS312)</i>
한국의 미국달러화기준 수출용원자재로결판매는 미국달러화에 의한 판매로 인정받을 수 있고 미화로 이루어진 수출가격과 비교할 경우에는 별도의 화폐환산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2.4조 제2.4.1조	<i>US - Stainless Steel DS(179)</i>
구성수출가격거래건에서, 차감비용은 수입일과 재판매일 사이에 발생하는 관세 및 조세를 포함한 비용을 의미한다	제2.4조	<i>US - Stainless Steel DS(179)</i>
직접수출가격거래건에서, 판매조건의 차이의 개념에는 구매자의 예견되지 못한 부도 및 이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차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제2.4조	<i>US - Stainless Steel DS(179)</i>

1. 물리적 특성에 따른 차이 조정

[사례 연구]

이와 관련하여서는 세 건의 분쟁사례가 있는데, 한 건 *Argentina - Ceramic Tiles* 사건은 모델구분으로 인하여 덤핑마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를 물리적 특성에 따른 차이조정과 연계하여 논쟁되었고, 다른 두건의 사건, *US - Softwood Lumber V* 사건과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사건은 직접 물리적 특성차이를 조정항목으로 계량화하는 과정에서의 빚어진 논쟁을 다루고 있다.

Argentina - Ceramic Tiles -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모델 구분

해당 논의는 *Argentina - Ceramic Tiles* 사건에서 다루어 졌는데, 동 사건에서 EC는 아르헨티나 당국이 Floor Tile을 색상, 도안 등 다른 요소를 합당하게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크기를 기준으로 3 등분한 다음, 덤핑 마진을 계산을 위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가중평균함에 있어 크기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협정 제 2.4 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EC 입장에서는 수출된 모델과 내수에 판매된 모델이 비록 크기는 비슷하지만 색상 등에서 명백히 물리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조사당국이 크기만을 기준으로 물품을 구분한 관계로 동일한 모델로 분류되어져,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가 적절하지 못한 것을 주장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경우의 사례를 또 들자면, 자동차를 단순히 배기량의 크기로 구분

하기로 한다고 가정할 때, 가령 현대 소나타 2000cc 와 BMW 2000cc 모델이 적절한 차이조정 없이 비교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⁷⁶

아무튼 이에 대하여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조사대상물품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다.

패널은 협정 제 2.4 조는 조사 당국이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 적절히 비교해야 한다는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⁷⁷ 특히, 패널은 ‘매 건마다 그 내용에 따라서’(in each case on its merits)라는 의미를 가격 비교성(price comparability)을 유지하고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간의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adjustment)가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 당국은 적어도 물리적 특성상의 차이를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다.⁷⁸

패널은 실제로 타일의 가격이 비단 크기뿐 아니라 색상, 강도, 도안, 광택 정도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작은 타일의 가격이 큰 타일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아르헨티나 당국도 충분히 인식한 점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크기만을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조사대상 물품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한 것은 협정 제 2.4 조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⁷⁹

US - Softwood Lumber V - 물리적 특성 차이에 대한 조정은 항상 해야 하는 것인가

⁷⁶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차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예로 들었다.

⁷⁷ WT/DS189/R Para. 6.111

⁷⁸ WT/DS189/R Para. 6.113

⁷⁹ WT/DS189/R Para. 6.117

US - Softwood Lumber V 사건에서 미국 상무부는 넓이, 길이, 두께의 치수와 관련된 특성에 대한 물리적 특성차이조정을 하지 않고 치수가 다른 모델을 비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캐나다가 미국이 제 2.4 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다소 복잡한 미국상무부의 모델매칭과 물품특성차이 조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상무부는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상무부가 지정한 모델비교특성(model-matching characteristics)에 근거하여 일종의 통제번호(CONNUM; Control Number) 을 부여하게 된다. 그런 다음 상무성은 동일한 identical 모델의 미국수출과 내수판매를 비교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상무성기준으로는 동일모델이라면 동일한 CONNUM 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설명하자면,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먼저 특성을 정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조사대상물품이 승용차라고 한다면 어떤 특성들을 조합하면 승용차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를 검토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배기량과 브랜드 두 가지로 자동차라는 가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렇다면 승용차라는 조사대상물품의 모델비교특성 model-matching characteristics 는 배기량과 브랜드 두 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배기량과 브랜드별로 일종의 코드 혹은 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이 뒤따른다.⁸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고 가정하자.

⁸⁰ 코드 혹은 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실제로는 각각의 차이가 코드나 번호에 반영되도록 부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배기량 코드 1은 배기량 코드 4 보다는 배기량 코드2와 상대적으로 비슷한 배기량을 가진 분류가 되는 원리이다.

배기량	코드 혹은 번호
1000cc 미만	1
1000cc 이상 2000cc 미만	2
2000 cc 이상 3000cc 미만	3
3000cc 이상	4

브랜드	코드 혹은 번호
아반테	1
쏘나타	2
그랜저	3
에쿠스	4

이제 다음은 배기량과 브랜드 중 누가 더 중요한 특성인지를 따지는 과정인데 이를 특성간 우선순위 product hierarchy 를 정한다고 한다.

여기서는 브랜드가 배기량보다 우선되는 특성이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하면 제품통제번호 CONNUM 을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은 다 준비한 것이다.

즉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 CONNUM 을 부여해 보겠다.

예를 들어 쏘나타 2000cc 라면 CONNUM 은 브랜드코드 2 와 배기량코드 3 을 조합하여 2-3 이 될 것이다.

그랜저 2700cc 라면 CONNUM 은 브랜드코드 3 과 배기량코드 3 을 조합하여 3-3 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일단 CONNUM 을 부여하게 되면 그 다음은 기계적으로 CONNUM 이 같은 제품끼리 비교된다면 동일모델간 비교 identical matching 이라고 부르게 되고 CONNUM 이 다른 모델끼리 비교된다면 유사모델간 비

교 similar matching 가 일어났다고 부르게 된다. 한편 유사모델간 비교 similar matching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품특성차이 조정 DIFMER; difference in merchandise 를 해주게 되는데 양 모델의 변동제조원가의 차이만큼이 조정되게 되며⁸¹ 이 과정은 실무에서는 기계적으로 덤핑율 계산 프로그램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제 다시 분쟁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결국 미국상무부가 유사모델비교 similar matching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변동제조원가만큼의 물품특성 차이 조정 DIFMER Adjustment 를 해주지 않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패널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는데, 패널은 우선 반덤핑 협정 제 2.4 조가 차이가 있는 모든 경우에 조정을 자동적으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가격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조정이 제기될 때마다 조사당국이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물론 조정을 실체화하는 필수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는 점도 덧붙였다.⁸²

패널은 주어진 차이점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차이로 인하여 구분 가능한 가격 차이의 패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동 사건에서는 치수 (넓이, 두께, 길이)가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조정이 허용되는 패턴이나 기준으로부터의 차이가 있는지

⁸¹ 물론 유사모델비교 similar matching 과정에서는 DIFMER Test 라고 하는 과정이 추가되지만 여기서는 해당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⁸² WT/DS264/R, Para. 7.176.

여부가 자료에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⁸³ 즉, 캐나다가 미국이 반덤핑협정 제 2.4 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미상무부가 치수에서의 차이가 변동제조원가에서의 차이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 그렇지 않다고 결정하였으며,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제출한 판매자료를 검토한 후, 그 차이도 미미하다고 결정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록에서 물품들의 가격변동이 조사기간 동안 단속적이고 일관성 없어 치수차이가 가격변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도 확인하였다.⁸⁴

따라서 패널은 유사모델비교에서 식별가능한 가격 차이 등이 없었으므로 캐나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Argentina - Poultry -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물리적 특성차이 조정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사건에서는 앞의 두 사건과 달리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조정한 것이 반덤핑협정 제 2.4 조 위반이라는 제소국의 주장을 다루고 있으며 패널은 조사당국의 근거없는 물리적 특성차이조정은 협정문 제 2.4 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⁸³ WT/DS264/R, Para. 7.179.

⁸⁴ WT/DS264/R, Paras. 7.175-176.

동 사건에서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당국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각각 판매되는 가금류의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없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9.09% 증가시켰다고 주장하였다.⁸⁵

패널은 아르헨티나 수출자들과 외부컨설팅업체인 JOX 가⁸⁶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였지만, 동 기록이 아르헨티나 당국에게 물리적 특성의 차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결정하였다.⁸⁷ 따라서 패널은 제출된 다른 수출자와 브라질 정부의 자료를 고려해 볼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당국이라면 JOX 의 자료에만 근거하여 물리적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더 나아가 상충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공정한 조사당국은 전문가들과 더 논의를 하였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아르헨티나 조사당국이 근거 없이 물리적 특성에 의한 차이를 자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반덤핑협정 제 2.4 조와 부합하지 않았다고 평결하였다.

2. 운송비의 조정

Argentina - Poultry - 운송비의 조정

동 사건에서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조사당국이 일부 브라질 기업들 (Sadia 및 Avipal)의 정상가격산정과 관련하여 운송비용에 대하여 조정을 하

⁸⁵ WT/DS241/R, Paras. 7.250-251.

⁸⁶ JOX는 JOX Assessoria - Agropecuaria S/C Ltda.의 약칭으로서 브라질의 농업분야 전문 컨설팅 업체이다. 아르헨티나의 반덤핑조사 신청시 아르헨티나의 신청자들은 JOX가 발간한 정보를 증거로 제출한바 있다.

⁸⁷ WT/DS241/R, Paras. 7.253-259.

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⁸⁸

이에 대하여 패널은 아르헨티나 조사당국이 Sadia 라는 기업에 대하여 운송비용을 조정하지 아니한 이유가 최종결정에서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덤핑협정 제 2.4 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결하였으나,

반면 Avipal 의 경우 최종결정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조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조사당국이 운송비용에 대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평결하였다.⁸⁹

즉, 패널은 비록 운송비용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가 적절하지 않아 조사당국이 이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최종결정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평결하였다.⁹⁰

3. 조세영향 고려

공정한 비교를 규정한 반덤핑협정 제 2.4 조는 가격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GATT VI:4 조는 어떠한 물품도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소비용인 때의 동종물품이 부담하는 관세 또는 조세로부터 동 물품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또는 이러한 관세 또는 조세가 환불된다는 이유로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C - Pipe Fittings - 조세영향 고려

⁸⁸ WT/DS241/R, Para. 7.231.

⁸⁹ WT/DS241/R, Para. 7.239.

⁹⁰ WT/DS241/R, Paras. 7.236-236.

EC - Pipe Fittings 사건에서 브라질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브라질의 “IPI Premium Credit”과 “PIS/COFINS”라는 두 가지의 세금공제에 대하여 EC 가 적절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C 가 반덤핑협정 제 2.4 조 및 GATT VI:4 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분쟁은 두 가지 세금공제와 관련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1) IPI Premium Credit

브라질의 ‘IPI Premium Credit’은 수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투입량에 대하여 브라질 시장에서 발생한 간접세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출자들에게 수출가격의 20%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브라질은 EC 가 IPI Premium Credit 으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GATT VI:4 조 위반이며, 가격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조세의 차이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EC 가 브라질 수출자에게 어떠한 추가정보가 필요한지 통지하지 않았으며, 브라질의 조세법에 의한 정당화를 증명하는 불합리한 부담을 브라질 수출자에게 요구하였으므로 반덤핑협정 제 2.4 조 및 GATT VI:4 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⁹¹

이에 대하여 패널은 GATT VI:4 조에 비추어 반덤핑협정 제 2.4 조를 해석하였다. 즉, 패널은 조사기관이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은 적어도 조세에서의 확인된 차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패널은 조사기관이 공정한 비교를 보장하는 의무가 있는 반면, 이해당사자들도 가능한 한 구조적으로 조정에 대한 주장을

⁹¹ WT/DS219/R, Para. 7.152.

실체화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다.⁹²

동 사건에서 패널은 브라질의 수출자들이 일부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여전히 물품에 부과된 특정한 조세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패널은 EC 가 당해 조세의 실제 금액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과정에서 수출자에게 밝혔으므로, 수출자는 답변할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⁹³

따라서 패널은 EC 가 IPI Premium Credit 과 관련한 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협정 제 2.4 조 및 GATT VI 조를 위반하였다는 브라질의 주장이 증명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였다.⁹⁴

2) PIS/COFINS Credit

브라질 수출자가 받는 또 다른 세금공제는 PIS/COFINS Credit 으로, 동 제도는 수출되는 최종물품의 투입에 대하여 5.37%에 해당하는 면세를 받는 제도이다. 브라질은 EC 가 PIS/COFINS Credit 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정한 비교를 하지 못하였고, 동 제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의적이고, 조작적이며 형벌적인(악의적인) 표본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반덤핑협정 제 2.4 조 및 GATT VI:1 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조정시 특정 거래와 관련한 자료의 표본의 대표값을 사용하는 방법이 반덤핑협정 제 2.4 조상의 공정한 비교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조사기관이 조정시 광범위한 자료를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EC 가 조정을 한 방법이 표본의 대표값을 고려하였고, 환급 금

⁹² WT/DS219/R, Paras. 7.157-158.

⁹³ WT/DS219/R, Para. 7.164.

⁹⁴ WT/DS219/R, Paras. 7.166-167.

액을 배분하기 위하여 해당 방법이 필요하였으며, 주어진 실무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전수조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합리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패널은 EC 가 사용한 방법이 시간과 인력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 덤핑마진의 크기와 관련한 계산 결과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많이 수출된 종류를 표본으로 한 방법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하였다.⁹⁵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 2.4 조나 다른 조항에서도 조정을 계산하는 방법은 제공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특정 방법의 사용에 대하여 문헌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당국도 EC 의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고려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EC 가 PIS/COFINS Credit 과 관련한 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덤핑협정 제 2.4 조 및 GATT VI 조를 위반하였다는 브라질의 주장이 증명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였다.⁹⁶

즉 문제의 핵심은 반덤핑협정 제 2.4 조의 공정한 비교 의무와 관련하여 조사당국이 반드시 관련된 자료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표본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당국이 비용에 대한 조종을 함에 있어 표본을 이용하는 경우를 허용한 관정으로 보인다.

⁹⁵ WT/DS219/R, Para. 7.174.

⁹⁶ WT/DS219/R, Paras. 7.178-179.

4. 포장비

EC - Pipe Fittings - 포장비

브라질은 EC 가 포장비용과 관련하여 조정을 거부함으로써 반덤핑협정 제 2.4 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브라질은 조사대상제품의 포장비는 내수용이 수출용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수출판매에 25%, 국내판매에 75%의 포장비용을 배부하였는데, EC 가 포장비용이 가격 비교에 미치는 정도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수용포장비용이 수출용포장비용보다 다 소요되는 상황을 현지실사시에 직접 확인할 수도 있었음도 불구하고, 추가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입증책임을 지운 것으로 제 2.4 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⁹⁷

이에 대하여 패널은 EC 가 포장비용의 차이를 적절히 가격비교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현지실사는 재량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입증 verification 은 원칙적으로 서류검증을 통해 이루어는 것으로써 현지실사는 이를 보충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포장비의 배부차이를 현지실사에서 직접 목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브라질의 주장을 기각하고 EC 가 브라질 업체들에게 불합리한 입증책임을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⁹⁷ WT/DS219/R, Para. 7.181.

해당 사례는 비록 포장비용을 둘러싸고 진행되었으나 실상은 현지실사의 입증력에 대한 매우 의미있는 패널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즉 현지실사의 증거력이나 입증력을 보충적으로 평가하고 서류심사의 입증력을 주된 것으로 보았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5. 선물 거래 수익

US - Softwood Lumber V - 선물 거래 수익

반덤핑협정 제 2.2.1.1 조는 조사대상 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이 있는 모든 비용들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경우 조사대상 수출자가 생산자가 보유한 자료에 근거하여 비용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거래로 인한 수익 혹은 위험헤지 risk hedge 가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쟁점은 *US - Softwood Lumber V* 사건에서 논의되었다.

해당건은 선물거래로 인한 수익을 직접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서 직접판매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지와 그렇지 않으면 선물거래로 인한 수익을 이자비용과 상쇄할 수 있는지의 사안이었다.

(i) 선물거래로 인한 수익을 직접판매와 연관된 것으로 보아서 직접판

매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가....

패널은 반덤핑협정문 제 2.4 조가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판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이 규정이 이용되려면 두 시장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차이가 확인되었다면, 확인된 차이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해석하였으며, “비교가능성”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정의될 것이 아니라 조사당국이, 사실에 기초하여 사안별로 어떤 요소가 가격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주는지가 파악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패널은 제 2.4 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의 차이가 존재하여야 한다.

차이는 또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가격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에 의하였는지 파악되어야 한다.

다시 해당 사안으로 돌아와서 패널이 볼 때는 선물거래로 인한 수익을 직접비용에서 상쇄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 결국 선물거래로 인한 수익이 비교되는 두 시장에서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에 영향을 주는 차이냐는 것을 먼저 결정하여야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캐나다의 수출업체 Slocan 이 체결한 선물계약의 성격,

선물 거래의 실상 등을 검토한 바, 선물거래로 인한 수익이 특정한 거래, 특히 미국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보았다. 즉 실제 가격에 미친 영향과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에서의 차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제 2.4 조에 따른 차이비용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캐나다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ii) 선물거래로 인한 수익을 이자비용과 상쇄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패널은 사건의 본질을 직접 다루지는 아니하였고 캐나다의 주장이 반덤핑협정문 제 2.2.1.1 조에서 조사당국에 부여한 의무와 어떠한 연관이 없으므로 캐나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6. 가격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의 증명

Korea - Certain Paper

반덤핑협정 제 2.4 조는 가격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정하여 공정한 비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누가 증명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증 문제는 *Korea - Certain Paper* 사건에서 논의되었다.

동 사건에서 인도네시아는 조사대상기업인 Pindo Deli 와 Indah Kiat 가 CMI 라는 판매기업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내수 판매를 하기 때문에, 내수

판매에는 CMI 가 제공하는 판매 서비스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나, 대한민국 수출은 CMI 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므로 대한민국 수출가격과 내수 가격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를 차감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반덤핑협정 제 2.4 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2.4조에 관한 *prima facie case*⁹⁸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가 실제로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조사 과정 및 패널 심리 중 CMI가 Pindo Deli, Indah Kiat 물품의 인도네시아 내수 판매를 위해 소요된 비용이 있었다는 점만 반복할 뿐, 이로 인해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국내 판매에 판매회사가 개입되었다 하여 수출가격과 당연히 차이가 있다고 간주될 수는 없으며, 차이의 존재와 그로 인한 가격 비교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입증에 실패하였으므로, *prima facie case*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평결하였다.

동 사건의 평결로 미루어 볼 때, 반덤핑협정 제 2.4 조에 관한 *prima facie case* 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과, 그 차이가 실제로 가격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판매에만 판매회사가 개입되었다 하여 수출가격과 당연히 차이가 있다고 간주될 수는 없으며, 차이의 존재와 그로 인한 가격 비교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입증하여야 한다.

⁹⁸ 반증이 없으면 승소가 되는 사건. 언뜻 보기에 증거가 확실한 사건.

7. 번역되지 아니한 외국어 자료의 반영여부

Argentina - Poultry

반덤핑협정 제2.4조는 가격의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고려되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특히 제공된 정보가 비교가능성과 관련이 있으되,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동 협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사건에서 논의되었다.

동 사건에서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조사당국이 브라질의 컨설팅업체인 JOX가 제출한 세금, 금융비용, 판매 수수료 및 운송비로 인한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⁹⁹ 이에 대하여 아르헨티나는 JOX가 제출한 자료가 아르헨티나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스페인어가 아닌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다고 반박하였다.¹⁰⁰

패널은 우선 JOX가 조사대상기업이 아니며, 아르헨티나 조사당국의 요청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해당사자로서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JOX가 제출한 자료가 번역되어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배제하여서는 안된다고 평결하였다.¹⁰¹ 더구나, 아르헨티나 당국은 번역되지 아니한 JOX의 자료 중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판매되는 가금류의 물리적 특징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정상가격에 반영한 반면, 동 쟁점

⁹⁹ WT/DS241/R, Para. 7.241.

¹⁰⁰ WT/DS241/R, Para. 7.242.

¹⁰¹ WT/DS241/R, Paras. 7.246-248.

에서는 번역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고, JOX가 제출한 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고 평결하였다.

8. 화폐환산 (특정 내수판매가격에 대한 이중 환산) [제 2.4.1 조]

US - Stainless Steel

공정한 비교를 규정하고 있는 반덤핑협정 제 2.4 조는 세부적으로 화폐 환산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 제 2.4.1 조는 가격비교시 화폐단위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은 판매일자의 환율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물시장 (Forward markets)에서의 외환의 판매가 관련 수출판매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면 동 변경에는 선물판매환율이 사용된다. 환율변동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국은 조사기간중 환율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수출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최소 60 일간의 환율조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화폐단위 변경의 문제는 *US - Stainless Steel*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동 사건에서의 주요 쟁점은 포항제철의 한국 시장에서의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승인서를 이용한 수출용원자재로컬판매에 대한 미 상무부의 처리에 관한 사안이었다.

본건은 특별히 한국이 개입된 건이므로 이 사건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승인서를 이용한 수출용원자재로컬판매는 한국의 독특한 거래중의 하나로, 완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해당 수출완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원자재를 구매할 때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관세환급, 무역금융 등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포항제철의 제품을 국내에서 구입하는 회사가 포항제철의 제품을 이용하여 다른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에 포항제철과 해당 회사와의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거래형태인 것이다.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승인서를 이용한 수출용원자재로컬판매는 일반 내수거래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화, 즉 달러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승인서를 이용한 수출용원자재로컬판매는 미달러화 기준으로 주문, 판매, 그리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와 회사의 회계기록은 원화로 환산되어 기록된다.

여기서의 쟁점은 한국의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승인서를 이용한 수출용원자재로컬판매의 어떤 화폐로 이루어졌냐에 대한 문제이고, 만약 미국달러화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별도의 화폐환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보통의 국내판매처럼 원화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해당 원화에 대하여 화폐환산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기 쟁점을 꼼꼼히 곱씹어보면 어느 방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출자가 적용하였던 환율과 미상무부가 적용할 환율이 동일하다면 그 결과도 동일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승인서를 이용한 수출용원자재로컬판매의 판매가격이 달러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1,000 인 상황에서, 회사의 회계기록과 세금계산서는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기록할 테니, 환율 1,500 원/\$를 적용하여 1,500,000 원으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만약 상기 거래를 미화기준 거래로 본다면 정상가격은 그냥 화폐환산 없이 \$1,000 이 되는 것이고, 상기 거래를 원화기준 거래로 본다면 정상가격은 화폐환산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지만 미상무부가 적용하는 환율도 1,500 원/\$ 라면 $1,500,000/1,500 = \$1,000$ 의 정상가격이 다시 도출되어 양자간의 차이는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본건의 이면에는 미상무부가 적용하는 환율과 포항제철이 세금계산서작성 혹은 회계기록상 적용하였던 환율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것이고, 미상무부의 고시환율이 포항제철이 적용한 환율보다 낮았기 때문에 미국상무부가 포항제철의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이용한 수출용원자재로컬판매를 “원화”기준으로 보고, 어떻게든 낮은 상무성고시환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려고 시도한 조사당국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배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려면, 그 때의 시대상황과 미국미상무부에서 고시한 환율의 특성이 관련이 되어 있다.

당시 조사대상기간에 한국의 IMF 사태를 맞았던 1997년 11, 12월이 포함되어 있었고 조사대상기간동안 환율이 극심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였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높다는 것, 혹은 원가가치가 평가절하된다는 것은

덤핑율이 작게 나오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반대로 환율이 낮다는 것 혹은 원가가치가 평가절상되는 경우에는 덤핑율이 높게 나오게 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환율변동이 덤핑마진에 주는 영향을 줄이고자 환율변동을 가급적 완만하게 반영한 미국상무부고시환율을 이용하여 덤핑율을 계산한다. 즉 실제로 급격한 환율상승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상무부고시환율을 이용하면 상당히 완만한 환율상승이 일어난 것처럼 계산되게 되어있다.

그럼 위의 예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비록 해당 건의 판매일에 포함 제철이 적용한 환율이 1,500 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급격한 환율상승기간 중에 있었다면 미국상무부고시환율은 상당히 완만한 상승률을 적용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1,500 원/\$보다 낮게, 예를 들어 1,200 원/\$으로 되어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만약 미국의 시각처럼 원화거래로 간주하여 화폐환산을 수행한다면, 정상가격은 $1,500,000/1,200=\$1,250$ 이 산출되게 됩니다. 이는 미화기준으로 판매를 간주할 때의 정상가격 \$1,000 보다 높게 평가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분쟁에서의 핵심해석사항은 반덤핑협정문 제 2.4.1 조가 되었

2.4.1 제 4 항에 의한 비교시 화폐단위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은 판매일자 8)의 환율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단, 선물시장에서의 외환의 판매가 관련 수출판매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물판매환율이 사용된다. 환율변동은 무시되

고, 조사시 당국은 조사기간중 환율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최소 60 일의 수출가격 조정기간을 부여한다.

8) 일반적으로, 판매일자는 계약일, 구매주문일, 주문확인일 혹은 송장작성일 중 실제적인 판매조건이 설정된 일자이다.

패널은 동 조항은 단지 수출가격과 내수가격의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 화폐환산이 필요한 경우에만 화폐환산이 허용된다는 일반적인 원칙조항이라고 판단하고, 동 분쟁과 관련하여 비교 대상 내수가격이 이미 수출가격과 동일한 통화로 이루어졌다면 반덤핑협정 제 2.4.1 조에 의한 화폐환산은 요구되지도 않으며 허용되지도 않는다고 확인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다만 패널은 과연 미국달러화¹⁰²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내국 신용장 혹은 구매승인서를 이용한 수출용원자재로컬판매가 미국달러기준의 판매로 보아야 할지 원화기준의 판매(회계기록과 세금계산서상 금액)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별도의 심리를 하였고, 제기된 두 케이스에 대하여 각각 다른 판정을 하였는데, 한 건은 원화기준 판매로 본 미국상무부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고, 다른 한건에서는 원화기준 판매로 본 미국상무부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동일한 이슈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온 이유는 패널이 해당 심리의 기준은 조사당국의 사실판단의 문제로 놓고 다른 관계로, 조사 당시 처한 상황이나 정보 제공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수출용원자재로컬판매의 성격과 실제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

¹⁰² 실제로는 원화기준 수출용원자재로컬판매도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였다.

진 건에서는 이를 미화기준 판매로 보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 반면, 다른 건에서는 조사당국의 기존 판결을 인정하여 주었다.

결국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미국달러화기준 수출용원자재로컬판매는 미국달러화에 의한 판매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미화로 이루어진 수출가격과 비교할 경우에는 별도의 화폐환산이 요구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9. 판매 대금 미지급 거래 처리 문제 [제 2.4 조] - 공정한 비교

US - Stainless Steel

반덤핑협정 제 2.4 조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의 공정한 비교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시된 요소들 중의 하나는 판매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나 판매조건의 범위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미회수 판매대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US - Stainless Steel* 사건에서 논의되었다.

해당 사건의 배경은 한국 포항제철의 자회사 POSAM 을 통한 미국수출 중 일부 건에 대하여 고객회사가 부도처리되어 대금회수가 되지 못한 일이 있었다. 미국상무성은 예비판정에서 해당건을 수출판매데이터에서 제외시켰

으나 최종판정에서는 이를 직접판매비용 direct selling expenses 로 간주하여 처리하였다.

즉, 미 상무부는 미회수 판매대금을 직접판매비용으로 간주하고 포항제철의 모든 미국수출에 배분 조정하였는데, 직접수출가격 EP; export price 거래에 해당되는 미국비관계 수입상을 통하여 이루어진 수출에 대하여는 상기 배분된 직접판매비용을 내수판매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구성수출가격 CEP; constructed export price 거래에 해당되는 관계수입상인 POSAM 을 통한 수출 판매에 대하여는 POSAM 의 판매가격에서 동 배분된 직접판매비용을 차감 조정하여 덤핑율을 상승시켰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판매대금의 미지급은 계약 위반이지, 제 2.4 조에서 언급하는 판매 조건(term and condition)의 차이가 될 수 없으며, POSAM 을 통한 수출에 적용한 차감 요소는 협정 제 2.4 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입 단계와 재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재판매 단계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비용으로 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¹⁰³

구성수출가격거래건, 즉 POSAM 을 통한 수출에 대한 조정과 관련하여, 패널은 차감비용은 동 조항상의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관세 및 조세를 포함한 비용으로 보아야 타당하며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한다는 것은 수입일과 재판매일 사이에 발생한다는 의미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패널은 문제가 된 대금미지급에 대한 차감은 재판매 이후에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재판매일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미회수 판매대금

¹⁰³ WT/DS179/Para.6.58

을 구성수출가격에서 차감한 행위는 제 2.4 조에서 말하는 조정(allowances)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려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한편 직접수출가격거래건, 즉 비관계수입상을 통한 수출에 대한 조정과 관련하여, 패널은 판매조건의 차이의 개념에는 구매자의 예견되지 못한 부도 및 이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차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패널은 판매조건은 판매 계약상 형성된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하므로, 판매조건의 차이(difference)란 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되고,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거래계약상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계약자체'의 위반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패널은 미상무부가 판매대금 미지급분을 차감요소로 조정한 것은 협정 제 2.4 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결하여 한국측 주장을 지지하였다.¹⁰⁴

¹⁰⁴ WT/DS179/R Para.6.80

제 4 절 기타

반덤핑협정 제 2.4.2 조는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조사기간동안의 덤핑마진의 존재는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의 가중평균간의 비교 또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거래별 비교를 통해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문]

2.4.2 제 4 항의 공정비교를 규율하는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사 기간 동안의 덤핑 마진의 존재를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가격의 가중평균과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또는 각각의 거래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의하여 입증된다. 당국이 상이한 구매자,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양태를 발견하고, 가중평균의 비교 또는 거래별 비교 사용으로 이러한 차이점이 적절히 고려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에 기초하여 결정된 정상가격이 개별 수출거래가격에 비교될 수 있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가중평균 정상가격 산정시 모든 국내 판매 거래를 포함하여야 하고, 특정한 경우에만 정상가격에서 국내판매	제2.4.2조 제2.2.1조	<i>Argentina - Poultry</i> (DS241)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거래를 제외할 수 있다		
<p>정상가격과 “비교가능하지 못한 non-comparable” 수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중평균정상가격과 ‘하나의’ 가중평균수출가격을 비교할 것을 회원국들은 요구받지 않는다. 즉 다중기간평균방식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는다.</p> <p>그러나 반덤핑협정 제2.4.2조가 다중 평균 방식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진 않지만, 다중기간평균방식의 적용의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p>	제2.4.2조	US - Stainless Steel DS(179)

[사례 연구]

Argentina - Poultry - 가중 정상가격산정시 국내 거래의 표본 사용 [제 2.4.2 조, 제 2.1 조, 제 2.2.1 조]

비록 반덤핑협정 제 2.4.2 조는 가중평균 수출가격의 산정시 모든 수출판매 거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중평균 정상가격은 모든 거래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사건에서 간략하게나마 논의되어 여기에 소개한다.

동 사건에서 브라질은 자국의 조사대상기업인 Sadia 와 Avipal 이 모든 관련된 국내판매 거래를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조사당국이 가중평균수출가격과 “통계적 표본”의 가중평균정상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가중평균정상가격이 모든 국내판매를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반덤핑협정 제 2.4.2 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⁵

이에 대하여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 2.2.1 조에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정상가격 산정시, 국내판매가 배제될 수 있다는 규정에 기반하여 가중평균 정상가격에서도 특정한 경우에만 국내판매거래가 배제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¹⁰⁶

따라서 패널은 동 사건은 특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아르헨티나 조사당국이 모든 국내판매거래를 포함하였어야 한다고 평결하였다.

즉, 패널은 회원국이 가중평균 정상가격 산정시 모든 국내판매 거래를 포함하여야 하고, 특정한 경우에만 정상가격에서 국내판매거래를 제외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US - Stainless Steel - 다중 기간 평균 문제 [제 2.4.2 조]

반덤핑협정 제 2.4.2 조는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조사기간동안의 덤핑마진의 존재는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의 가중평균간의 비교 또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거래별 비교를 통해 결

¹⁰⁵ WT/DS241/R, Para. 7.268.

¹⁰⁶ WT/DS241/R, Para. 7.272.

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구매자, 지역, 기간대별로 수출가격의 양태가 현저히 다르고, 가중평균대 가중평균 또는 거래대 거래비교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차이점이 고려될 수 없다는 적절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면, 가중평균 정상가격은 개별 수출거래가격과 비교될 수 있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덤핑율을 산정하는 기간과 관련한 문제가, *US - Stainless Steel* 사건에서 논의되었다.

동 사건에서 수출국인 한국은 외환 위기로 인해 자국의 원화가 1997 년 11 월 ~ 12 월 기간 중 대폭 절하되었다.

조사당국인 미 상무부는 덤핑마진 산정시 이러한 평가절하 효과를 적절히 고려하기 위해 plate 및 sheet 의 조사 기간을 2 개 기간 (1 월 ~ 10 월, 11 월 ~ 12 월)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미 상무부는 각각의 기간에 대해 덤핑마진을 산정하였고 이를 평균하여 최종 덤핑율을 계산하였고, 동 과정에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기간에 대하여는 덤핑마진을 마이너스가 아니라 "Zero"로 처리하여 두 기간을 평균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패널은 우선, 반덤핑협정 제2.4.2조가 다중 평균 방식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패널은 동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비교가능한' 수출거래란 표현에 주목하여, 하나의 가중평균정상가격과 "비교가능한" 모든 수출 거래에 대하여 하나의 가중평균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기초 하에 덤핑 유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정상가격과 “비교가능하지 못한 non-comparable” 수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가중평균정상가격과 ‘하나의’ 가중평균수출가격을 비교할 것을 회원국들은 요구받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패넬은 비교가능하지 않은 거래를 포함하여 가격 비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제2.4조의 공정 비교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언급하여 일단 미국상무부가 사용한 다중기간평균방식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¹⁰⁷

다만 패넬은 다중기간평균방식을 이용하는데 있어 “비교가능하지 않은” 사유가 해당 사건에서 적절히 고려되었는지를 검토하였는데, 미국이 조사기간을 세분화한 사유로, 즉 다중기간평균방식을 택한 이유가 오로지 조사대상 기간중의 정상가격의 변화(급격한 환율변동에 기인한)만을 고려하였다고 지적하고 이것만으로는 “비교가능하지 않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넬은 다중평균비교 방식(multiple averaging comparison methodology)은 비교가능하지 않다는 전제를 요구하므로, 미국의 판정은 미국가중 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 거래들의 가중 평균을 비교하도록 요구하는 반덤핑협정 제2.4.2조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결하였다.

즉, 패넬은 반덤핑협정 제2.4.2조가 다중 평균 방식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진 않지만, 오직 정상가격의 변화만을 고려하고 내수 판매와 수출판매 물량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미국의 다중 평균 방식은 협정 제2.4.2조에 위반한다고 평결한 것이다.

¹⁰⁷ WT/DS179/Paras.6.111-114

제 5 절 제로잉 [제 2.4.2 조]

반덤핑협정 제2.4.2조는 조사기간 동안의 덤핑마진을 일반적으로 가중평균-대-가중평균 또는 거래가격-대-거래가격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비교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예컨대,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패턴이 있는 경우 가중평균에 기초하여 결정된 정상가격이 개별 수출거래 가격에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동 조항에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거래가격과의 비교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국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관행을 지속해왔다.

그러한 관행 가운데 하나가 소위 제로잉 (zeroing)이다. 동 관행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시 조사대상물품의 세부기간별 또는 모델별로 계산된 덤핑마진을 가중평균하면서 음 (-)의 덤핑마진을 합산하지 않고 영(0)으로 처리하는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은 필연적으로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효과가 있어 많은 국가들이 그 금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러 분쟁사건에서 다루어졌다.

특히 제로잉zeroing 은 최근 미국의 제로잉zeroing관행 등과 관련하여 반덤핑분야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또한 최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반덤핑분야에서도 제로잉(Zeroing)금지를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에 별도의 절을 구성하여 보다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서는 제로잉 zeroing 을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부터 최근의 분쟁해결기구의 판결까지를 통사적으로 혹은 주제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제로잉 zeroing 과 관련된 논의
- 원심에서 가중평균가격 비교시 모델간 제로잉 zeroing
- 미국의 연례행정재심에서의 Simple Zeroing 의 반덤핑협정 합치여부
- 원심, 재심을 떠나 반덤핑조사에서 제로잉 zeroing 자체의 합치성

한편 제로잉과 관련하여서는 분쟁해결기구 특히 상소기구의 의견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판정의 핵심을 요약하는 방식을 벗어나 판정의 흐름과 논리를 최대한 풀어 해설하기로 한다.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의 제로잉 zeroing 과 관련된 논의

협상당시 제로잉 zeroing 문제는 표적덤핑target dumping 과 연관하여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춘삼교수의 신국제반덤핑법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므로 책의 해당부분을 적절히 인용하기로 한다.

108

¹⁰⁸ 이춘삼 신국제반덤핑법 p29-p31중 발췌 인용

협정문 2.4.2 조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를 다루고 있는데, 즉

- 정상가격의 가중평균과 수출가격의 가중평균간의 비교 (A to A) 또는
-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거래건별 비교 (T to T)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종래 가중평균가격으로 산출된 정상가격에 거래별 수출가격을 비교(A to T)하여 양(+)의 마진이 나오는 것만을 인식한 뒤 다시 가중평균하여 덤핑마진을 산출하는 각국의 관행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즉 종래의 각국의 관행에 따르면, 어떠한 시점에서 국내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국내판매가격을 가중평균 한 뒤, 이를 개별 수출가격과 비교하여 부(-)의 마진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제로잉 zeroing 이 적용된 것이다), 양(+)의 마진이 나오는 경우만을 가중평균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덤핑마진이 생기게 하거나, 이를 크게 할 수 있었는데 WTO 협정문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비교대상가격을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수판매와 수출이 항상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직관적으로 덤핑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수량은 모두 1개씩이다)

판매일	내수판매가격	수출판매가격
2007.01.15	100	100
2007.06.15	110	110
2007.12.15	120	120

이를 가중평균비교방식을 사용한다면 가중평균 내수가격은 110, 그리고 가중평균 수출가격도 110 이 되어 덤핑마진은 산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A to T 방식을 이용하면서 제로잉zeroing 기법을 도입하면 덤핑마진이 산출되게 된다.

판매일	내수판매가격	가중평균	수출판매가격	덤핑마진
2007.01.15	100	110	100	+10
2007.06.15	110		110	0
2007.12.15	120		120	-10 = 0 zeroing

즉 내수가중평균가격 110이 수출가격 100, 110, 120 각각과 비교되면서 차액을 합산함에 있어 음(-)의 차액을 제로잉zeroing함으로써 인위적인 덤핑마진 10이 도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WTO 협정문에서는 특별한 구매자, 지역, 기간대에 집중적 표적덤핑target dumping 이 행하여 지고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여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A to T), 덤핑마진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수출자가 일정한 구매자, 지역, 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표적덤핑target dumping 을 행하였음에도 전체적인 평균을 사용하게 되면 덤핑마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러한 유형의 표적덤핑을 막을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 일본 등을 비롯한 수출중심국들에서는 인위적인 덤핑마진 산출을 가져올 수 있는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가격의 비교방식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수입중심국에서는 집중적인 표적덤핑target dumping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반대하였다.

이때 미국은 수출중심국들의 주장을 과속운전자의 예로 비유하였는데, 이는 운전자가 어느 구간에서 속도를 위반하였음에도 전체 구간에서의 속도를 평균해보면 규정속도를 지켰다고 항변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아무튼 협상결과 양 입장이 절충되어 원칙적으로 가중평균가격간 또는 개별평균거래간에 비교를 행하되 예외적으로 표적덤핑target dumping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수출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협정문상에서 어떠한 경우에 표적덤핑target dumping 이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않았기 때문에 이의 해석과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당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WTO반덤핑협정문이 만들어질 때 이미 제로잉 zeroing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이를 표적덤핑target dumping 과 연계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제2.4.2조상의 가중평균간 비교 혹은 개별가격간 비교에서는 제로잉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표적덤핑target dumping 과 가중평균 대 개별가격비교방식을 연계하여 규정한 방법은 미국의 반덤핑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⁰⁹

2. 원심에서 가중평균가격 비교시 모델간 제로잉 zeroing

비록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정에서 가중평균가격 비교시 제로잉 zeroing을 금지하는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비교(A to A)방식에서도 조사대상물품내에 모델이 여러 개인 경우에 덤핑마진계산시에 문제

¹⁰⁹ 미국 C.F.R. 351.414.(f)

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EU의 관례상 제로잉zeroing 은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이 비교되는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유는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비교가 실제 계산에서는 모델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델별로 제로잉zeroing 을 적용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운영되었었다. 특히 이런 결과는 모델이 다양한 조상대상물품에서 더욱 더 불리하게 작용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만약 모델이 하나뿐이라면 제로잉zeroing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¹¹⁰)

EC - Bed Linen

이와 관련한 문제는 EC - Bed Linen 사건에서 드디어 다루어졌는데, 패널은 우선 반덤핑협정 제2.1조의 덤핑의 정의에 기반하여 덤핑마진이란 조사 대상이 된 제품에 대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제품의 개개 품목, 모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품목별 덤핑마진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는 EC의 덤핑 마진 산정 방식이 옳지않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2.4.2조는 원칙적으로 덤핑 마진을 계산하는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첫 번째, 즉 모든 비교 가능한 수출 거래에 대하여 가중 평균 정상가격과 가중 평균 수출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패널은 마이너스 덤핑 마진을 0으로 계산한 것은 모든 거래가격을 비교하지 않은 것이므로 협정 제2.4.2조의 위반이라고 평결하였다. 즉, 패널은 마이너스 덤핑 마진을 0으

¹¹⁰ 그러나 EU는 모델이 하나뿐인 경우에는 표적덤핑target dumping 의 혐의를 들어 가중평균정상가격과 개별수출가격을 비교하여 제로잉zeroing 을 행하기도 하였다. 1999년 조사개시된 EU의 Polyester Chip for Bottle 원심케이스에서 한국의 대한화섬은 실제로 이러한 판정을 받았다.

로 계산한 것은 모든 거래 가격을 비교하지 않은 것이므로 협정 제2.4.2조의 위반이라고 평결하였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평결을 지지하였다. 상소기구는 덤핑마진을 산정할 때 제2.4.2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all) 비교가능한 거래의 비교에 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EC가 마이너스 덤핑마진율을 zeroing함으로써 전체적인 덤핑마진을 산정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Zeroing은 공정한 비교 의무를 규정한 반덤핑협정 제2.4조와 제2.4.2조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Zeroing이 공정한 비교 의무를 규정한 반덤핑협정 제2.4조와 제2.4.2조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평결하였다.

EC - Pipe Fittings

또한 해당 건은 *EC - Pipe Fittings* 사건에서도 다루어져 패널은 EC가 제로잉 관행을 적용하였음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고, 동 관행이 '*EC - Bed Linen*'¹¹¹ 사건에서 반덤핑협정 제2.4.2조의 위반으로 평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¹¹² 즉, 제로잉 관행이 모든 비교가능한 거래 (all comparable transactions) 가격을 고려하지 아니하므로 반덤핑협정 제2.4.2조 위반이라고 평결하였다.

한편, *EC - Pipe Fittings* 사건에서는 패널은 산업피해분석시 저가판매 (price undercutting) 분석의 일부로서 사용된 제로잉 관행에 대하여 패널은 저가판매가 피해판정의 유일한 요소가 아니며, 조사기관이 저가판매 산정에

¹¹¹ WT/DS141/AB/R, European Communities -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tton-Type Bend Linen from India, para. 66.

¹¹² WT/DS219/R, Para. 7.214.

관한 재량권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¹¹³ 본 사안은 본 연구서의 범위 밖이므로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US - Softwood Lumber V

이러한 분쟁해결기구에서의 가중평균가격 비교시 모델간 제로잉zeroing이 반덤핑협정과 불일치한다는 판정이 있는 후에도 미국은 계속적으로 원심조사에서 모델간 제로잉zeroing관행을 유지하였고, 이에 해당 사안은 US - Softwood Lumber V 사건에서 또 다시 다루어졌다.

캐나다에 의해 제기된 본 분쟁에서 패널의 의견은 가중평균 대 가중평균 방식에서 제품모델간 제로잉zeroing 을 한 미국의 방식이 잘못 되었다고 하였으나, 이례적으로 미국의 방식을 지지한 1명 패널의 소수의견 dissenting opinion 도 있어 해당 논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케 한다. 한편 동 사안은 다시 상소기구에서도 다루어졌는데, 상소기구는 덤핑과 덤핑마진은 조사대상물품 전체에as a whole 대하여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제로잉 방식은 반덤핑협정 제2.4.2조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평결함으로써 패널의 다수 의견을 지지하였다. ¹¹⁴

US-Zeroing(EC)

그러나 여전히 미국의 가중평균가격 비교시 모델간 제로잉zeroing 관행이

¹¹³ WT/DS219/R, Paras. 7.279, 7.282.

¹¹⁴ WT/DS264/AB/R, Para. 99.

멈추지 않자 또다시 유럽연합이 해당 사안으로 미국을 제소하였는데 이것이 US-Zeroing(EC)사건이다. ¹¹⁵

본 건에서 유럽연합은 미국의 제로잉zeroing관행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공격하였다.

여기서는 주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가지 중 두개에 해당하는 원심에서의 모델간 제로잉문제만 다루고 뒤이어 미국연례재심에서의 제로잉을 다루도록 하겠다.

(i) 원심에서 가중평균 가격간 비교에서 모델간 제로잉zeroing 을 적용한 as applied 실제 미국의 15개 관정의 적법성 여부

패널은 이전 사건의 판례를 인용하여 미국의 제로잉방식은 반덤핑협정 제2.4.2조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ii) 원심에서 가중평균 가격간 비교에서 모델간 제로잉zeroing 관행 자체가 WTO협정문에 합치되는지 여부

¹¹⁵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최대의 보호무역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중의 하나일 것이다. 18세기 해밀턴에 의해 유치산업보호론이 창안되고 주창된 이래로 미국은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유무역을 실시한 적이 없다. 게다가 미국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관세 외의 다른 보호주의 정책을 서슴없이 사용하였다. -비관세 보호무역정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가령 일본자동차회사같은) 성공적인 외국의 수출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자발적인' 수출규제, (섬유간 다자협정을 통한) 직물 및 의류의 쿼터제, (영국의 곡물법 폐지와 비교되는) 농업보조금, 반덤핑관세 등이다 (물론 여기서 '덤핑'이란 반복되는 WTO의 결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국 정부가 외국회사들에게 불리하게 치우치는 쪽으로 정의한다) - [나쁜사마리아인들 p91, 349, 장하준지음] 에서 발췌 -

실제 미국의 제로잉은 성문화되었지는 않다. 이러한 성문화되어있지 않는 관행 자체에 대하여 분쟁해결기구의 판단을 요청하였는데, 상소기구는 불문의 관행이나 규범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문관행의 존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따져야 하기는 하였지만, 불문의 관행도 그 존재가 인정된다면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의 원심에서 가중평균간 비교에서의 모델간 제로잉 관행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행자체로 반덤핑협정 제2.4.2조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이 판정을 계기로 개별 사건 마다 미국의 원심에서 제로잉적용을 분쟁을 제기할 필요 없이, 미국이 원심의 가중평균간 비교에서 모델간 제로잉을 하는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된 것이다.

3. 미국의 연례행정재심에서의 Simple Zeroing 의 반덤핑협정 합치여부

US-Zeroing(EC)

주제의 일관성을 위해 앞의 사건을 주제만 달리하여 이어가도록 한다.

실무적으로 미국은 연례재심에서 가중평균 정상가격 대 개별수출가격간 비교방식을 선호한다. ¹¹⁶

즉 개별수출가격과 개별수출건에 해당하는 월의 가중평균된 정상가격을

¹¹⁶ 미 C.F.R. 351.414(c)(2)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수출건에 해당하는 월에 동일모델의 정상가격이 없다면 소위 “Six Month Window” 규정을 이용하여 비교에 이용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문제는 미국이 개별수출가격과 월별로 가중평균된 정상가격의 비교하는 과정에서 개별수출 건별로 제로잉zeroing 을 실시한 다음 가중평균 덤핑율을 구하고 있는데, 바로 미국의 연례재심에서의 가혹한 제로잉zeroing 방식을 “Simple Zeroing”이라 부른다.

EU는 이러한 미국의 연례재심에서의 “Simple Zeroing”관행이 반덤핑협정문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다.

동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패널의 의견이 거의 전면적으로 상소기구에서 뒤집어지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본 연구서에서는 지면관계상 상소기구에서 부인된 패널의 의견을 다루지는 아니하고, 상소기구의 판정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상소기구는 미국이 연례재심에서 “Simple Zeroing”을 적용한다면 이는 반덤핑협정 제9.3조 및 GATT VI조2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는 반덤핑협정 제2.1조의 ‘이 협정의 목적상’이란 구절상 덤핑의 정의는 반덤핑협정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고 margin of dumping 은 덤핑의 크기 magnitude of dumping 로써 덤핑과 같은 의미라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또한 이전의 사건 (EC-Bed Linen, US-Final Lumber AD Determination)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덤핑마진은 조사대상물품 전체 product as a whole 에 대해 산정establish 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반덤핑협정 제2.1조와 GATT VI

조1항의 문안상으로도 분명하다고 정리하였다. 또한 US-Softwood Lumber V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조사당국은 덤핑마진을 산정하기 위한 중간단계엿 복수비교나 복수평균을 산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중간단계의 계산치는 반드시 합산aggregate 해서 최종덤핑마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다시 확인하였다. 상소기구는 반덤핑관세액은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9.3조는 “해당 물품전체의”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중간단계의 계산치 일부만 취하고 (즉 +덤핑부분) 일부는 버려서(-덤핑부분)는 안되며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상소기구는 제9.3조와 GATT VI조2항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수출자에 부관된 반덤핑관세액은 동 수출자에 의해 결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다시 말하면 특정수출자나 해외 생산자의 덤핑마진은 그들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정산절차를 통해 징수할 수 있는 반덤핑관세액의 상한 ceiling 이라고 못박았다.

상소기구는 미국의 연례재심에서의 관세정산방식이 이러한 판단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미국은 각 수출거래가격을 해당 거래가 이루어진 달의 정상가격평균과 비교하여 만약 전자가 후자를 초과하면 0으로 처리하고, 전자가 후자보다 작은 경우만 합산하여 반덤핑관세액을 최종 확정하였다. 상소기구는 중간단계의 계산치를 모두 합산하여 덤핑마진계산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일부를 취하지 않았고 (0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미국 방식으로 확정된 반덤핑관세액은 해당 수출자의 실제 덤핑마진 (0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논단하였다.

상소기구는 이에 따라 미국이 관세 정산이 이루어지는 연례재심에서 적용한 제로잉방식은 반덤핑협정 제9.3조 및 GATT VI조2항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합치된다고 판단한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사실 상소기구는 미국이 연례재심에서 적용한 제로잉방식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이를 협정문의 일부 문단과의 불일치를 판정하였으나, 이러한 상소기구의 판정논리는 제로잉이 그동안 여러 차례 WTO 심리대상이 된 매우 중요한 이슈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소 투박하고 정교하지는 못해 보인다.

왜냐하면 상소기구가 인용한 조항들, GATT VI조1항과 반덤핑협정 제2.1조, 제9.4.2조등은 그 자체로 제로잉이나 비교와 관련된 조항이 아니므로 제로잉과 관련된 상소기구의 주장은 현행 다른 관행과의 모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전망적기초하의 정상가치를 통한 반덤핑규제제도 prospective normal value system 에서는 제로잉과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상소기구는 가장 문제가 되는 반덤핑협정 제2.4.2조와 미국의 연례재심에서의 simple zeroing 과의 합치여부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 여전히 분쟁의 불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4. 원심, 재심을 떠나 반덤핑조사에서 제로잉 zeroing 자체의 합치성

거듭되는 상소기구에서의 미국의 제로잉zeroing 관행에 대한 부정적인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로잉zeroing 관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드디어 미국을 상대로 모든 반덤핑조사에서 제로잉zeroing

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분쟁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이 *US-Zeroing(Japan)* 사건이 되겠다. 이 분쟁은 패널의 판정이 나온 후에, 상소기구에 의해 그 판정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상소기구의 판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겠다.

US-Zeroing(Japan)

먼저, 일본은 zeroing 방식 그 자체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조치라고 시비하였다. 이에 상소기구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미국이 의도적인 정책으로 zeroing 관행을 수 십년 간 시행하여 온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제소자인 일본의 주장과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여, zeroing은 그 자체로 시비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정하였다.

구체적인 zeroing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은 두 가지 종류의 zeroing을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나는 “Model Zeroing”이고 또 다른 하나는 “Simple Zeroing”이다.

(i) “Model zeroing”의 반덤핑 협정 제 2.4.2조의 위반여부

패널은 평균 비교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할 경우, 비교 가능한 모든 거래에 기초해야 한다는 반덤핑 협정 제 2.4.2조 전단의 규정상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Model Zeroing”이 동 조항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측에서도 상소하지 않았다.

(ii) "Simple Zeroing" 적용의 제 2.4.2조의 위반여부

상소기구는 덤핑과 덤핑 마진의 의미부터 고찰하기 시작하여, 덤핑 마진이란 덤핑의 크기이며 이는 한 상품 전체에 대해 구해지는 것이지 개별 거래에 대해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Transaction-to-Transaction 비교방법은 전체 덤핑 마진을 구하기 위한 계산 단계의 중간 과정이며, 덤핑 마진 계산에 있어 중간 값을 모두 합산하여야지 그 중 일부를 배척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다시 판정하였다.

상소기구는 또한 각 거래별로 덤핑 마진을 따로 구한다면 덤핑 마진은 알려진 수출자/생산자 별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산업피해는 덤핑 판정을 받은 수출자/생산자의 수입제품 전체를 토대로 국내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하는데, zeroing 이 허용된다면 일부 거래(수출가가 정상가격보다 높은 거래)가 덤핑 마진 산정시에는 덤핑 거래가 아닌 것이라 하여 제외되었다가 피해 판정시에는 다시 덤핑 마진인 것으로 취급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더 이상 zeroing 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일본은 원심, 연례재심, 신규수출자 재심 및 일몰재심의 모든 조사에 대한 미국의 "Model Zeroing" 및 "Simple Zeroing"이 WTO의 반덤핑 협정을 모두 위배된다고 제소 하였고, 상기 각각의 논점에 대해 상소기구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평가된다.

제 4 장 반덤핑조사절차 관련 쟁점

제 1 절 반덤핑조사 절차

반덤핑조사절차와 관련된 쟁점은 워낙 다양하고 협정문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어, 절 안에서도 다시 항목을 주제별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1. 조사신청 - 조사개시를 하기에 충분한 수준

본 항목에서는 제소자가 반덤핑조사신청서에 증거에 대한 분석까지 담아야 하는 것인지, 또는 조사신청서는 협정문에 열거된 모든 정보를 신청서에 담아야 하는 것인지, 조사개시를 하는데 있어 조사당국의 증거수집의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등에 관한 분쟁을 다루어 보도록 한다.

반덤핑협정 제 5.2 조는 반덤핑조사 신청이 포함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 조항은 덤핑과 피해 그리고 덤핑과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는 물론 신청자에게 합리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정보를 신청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자에게 합리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증거는 구체적으로 4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신청서상의 증

거는 동 협정 제 5.3 조에 따라 조사당국에 의해 정확성과 적절성이 검토되고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증거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가 합리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증거인지 여부와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지 여부는 여러 사건에서 논의되었다.

[관련 조문]

5.2 제 1 항의 신청은 (a)덤핑, (b)이 협정에 의해 해석되는 1994 년도 GATT 제 6 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피해, (c)덤핑수입품과 주장된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한다. 관련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은 이 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동 신청은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다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i) 신청자의 신원 및 신청자의 동종 상품 국내생산량 및 가치에 대한 기술. 서면신청이 국내산업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동 신청서는 동 신청이 대신하는 산업을 동종 상품의 알려진 모든 국내생산자(또는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자협회)명부로서 확인하여야 하며,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러한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량과 가치를 기술한다.

(ii) 덤핑혐의가 있는 상품에 대한 상세 기술, 당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명, 알려진 각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의 신원,그리고 알려진 당해 상품 수입자의 명부;

(iii) 당해 상품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또는, 적절한 경우, 동 상품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으로부터 제 3 국에 판매되는 가격이나 구성가격에 관한 정보) 및 수출가격에 관한 정보 또는 적절한 경우 동 상품이 수입회원국의 영토내의 독립된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될 때의 가격에 관한 정보

(iv) 제 3 조제 2 항과 제 4 항에 열거된 국내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소와 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덤핑혐의가 있는 수입품의 물량의 추이에 관한 정보, 동 수입이 국내시장의 동종 상품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덤핑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

5.3 당국은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하여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신청서에는 반덤핑 조사관련 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나 반드시 이러한 증거에 대한 분석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5.2조 제5.3조	<i>Thailand - H-Beams</i> (DS122)
조사신청서에 반덤핑협정 제3조에 열거된 모든 요소들 및 지표들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5.2조 제5.3조	<i>Mexico - Corn Syrup</i> (DS132)
신청서상 증거자료는 충분해야 할 것이다	제5.2조 제5.3조	<i>Guatemala - Cement II</i> (DS156)
조사당국의 사실확립이 적절하고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제5.3조 제17.6(i)조	<i>Mexico - Corn Syrup</i> (DS132)
조사개시를 위하여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제5.2조 제5.3조	<i>Argentina - Poultry</i> (DS241)
조사개시를 위한 충분한 증거여부를 결정할 때 덤핑 거래분만 고려하는 것은 안되며 전체 거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제5.2조 제5.3조 제2.4조	<i>Argentina - Poultry</i> (DS241)
조사개시를 위한 충분한 증거여부를	제5.2조	<i>Argentina - Poultry</i>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결정할 때 가격비교기간은 상당한 정도의 중복이 필요하다.	제5.3조 제2.4조	(DS241)
반덤핑조사 신청서는 신청자에게 합리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5.2조 제5.3조	US – Softwood Lumber V (DS264)

[사례 연구]

Thailand - H-Beams - 신청서상 증거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이 문제는 *Thailand - H-Beams* 사건에서 다루어졌는데, 동 사건에서 제소국인 폴란드는 태국의 조사당국이 반덤핑협정 제 5.2 조 및 제 5.3 조의 조사개시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폴란드는 태국 생산자들의 반덤핑 조사 신청서에는 반덤핑협정 제 5.2 조 서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자료, 증거 및 이에 대한 분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특히 반덤핑협정 제 5.2(iv)조에서 요구하고 “덤핑된 것으로 주장된 덤핑수입의 규모의 추이에 관한 정보, 동 수입이 국내의 동종물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제 3.2 조 및 제 3.4 조에 언급된 “국내산업의 현황과 관련 있는 요소와 지표에 나타나는 덤핑수입의 관련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즉, 폴란드는 신청서에 포함된 자료는 수량, 가격 영향 및 효과에 대한 정보

라기보다는 기초적인 수치만 나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¹⁷

이에 대하여 패널은 *Mexico - Corn Syrup* 사건¹¹⁸의 평결을 인용하면서, 신청서에는 반드시 증거에 대한 분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¹¹⁹ 패널은 태국정부가 제출한 신청인들의 표준 신청서 형식은 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자료, 증거,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덤핑의 증거에 대하여 태국으로 수입한 물품의 추정 비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가격 및 수량정보를 함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신청서에는 반덤핑 조사관련 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나 반드시 이러한 증거에 대한 분석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당해 신청서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평결하였다.

Mexico - Corn Syrup - 신청서상 모든 증거의 제시의 필요성

해당 건은 *Mexico - Corn Syrup* 사건에서 다루어졌는데, 동 사건에서 미국은 반덤핑조사 신청서에 국내산업에 대한 덤핑 수입품의 영향 및 관련 경제적 요소들의 관계와 같은 실질적 피해 위협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¹¹⁷ WT/DS122/R Para. 7.60

¹¹⁸ WT/DS132/R, Mexico - Anti-Dumping Investigation of High Fructose Corn Syrup(HFCS) from the United State

동 사건에서 패널은 조사신청서가 협정 제 3 조에 열거된 모든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반덤핑협정 제 5.2 조 문안대로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Paras. 7.73-74)

¹¹⁹ WT/DS122/R, Para. 7.77

그러나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 5.2 조는 조사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의 특정 종류에 관하여 '탄력적인 기준' (flexible standard)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 5.2 조(iv)에 언급된 '관련있는' (relevant) 그리고 '이와 같은' (such as) 용어를 보더라도 조사신청서에 반덤핑협정 제 3 조에 열거된 모든 요소들 및 지표들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¹²⁰ 따라서 패널은 신청서에는 반덤핑협정 제 3 조에 언급된 모든 경제적 요소들 및 지표들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평결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Guatemala - Cement II - 신청서상 증거자료의 충분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서에 모든 정보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개별 증거자료의 충분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 *Guatemala - Cement II* 사건에서 다루어졌다.

패널은 과테말라의 신청인들이 정상가격의 증거로 청구서와 수출가격 증거로 수입증명서만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반덤핑협정 제5.2조에 근거하여 볼 때, 제품 종류와 수량 및 공급자를 알기에 불충분하며 조사 기간 동안의 판매 현황을 알기에도 불충분하다고 밝히고, 따라서 과테말라 조사 당국이 충분하지 않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근거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므로 반덤핑협정 제5.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결하였다.

¹²⁰ WT/DS132/R Paras.7.73-74

Mexico - Corn Syrup - 조사당국의 사실확립이 적절하고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해당 건은 *Mexico - Corn Syrup* 에서 다루어졌는데, 미국은 멕시코가 반덤핑협정 제5.3조에 따른 피해우려 및 덤핑과 국내 피해와의 상관관계에 관한 충분한 증거 없이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우선 제5.3조 규정된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지 않으므로, 다른 조문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안을 심리하였다. 패널은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를 다룬 반덤핑협정 제17.6.(i) 의 조문을 인용하였는데, 해당 조문에 따라 조사당국의 사실확립이 적절하고, 해당 사실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의 여부가 본 건 판단의 핵심으로 보았다.

17.6 제 5 항에 언급된 사항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i) 패널은 사안의 사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국에 의한 사실의 확립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및 동 사실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공평하고 객관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의 확립이 적절하였으며 평가가 공평하고 객관적이었을 경우, 패널이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하여도 평가는 반복되지 아니한다.

패널이 판단할 때, 멕시코 조사당국은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보았는데, 구체적으로

- 반덤핑조사를 위해 증거로 받은 신청인들의 신청서는 물론
- 당국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수입증가, 가격 영향 및 국내산업의 상태

에 관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멕시코 조사당국이 조사한 정도는 반덤핑협정 제5.3조에 따른 조사개시를 정당화하는데 충분하다고 평결하였다.¹²¹

Argentina - Poultry - 조사개시를 위하여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산출함에 있어서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의 반영은 필수적인 절차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정항목은 실제 조사가 진행되어야 파악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사당국입장에서는 조사개시에 있어서 조정항목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고 검토하여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다.

이는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Duties* 사건에서 다루어졌는데, 브라질은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가금육과 아르헨티나에서 판매되는 가금육간에는 외형상의 차이가 있어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조정(e.g. 물리적특성의 차이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르헨티나 조사당국은 조사개시를 결정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고 또 이를 적절히 고려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아르헨티나 조사당국이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항목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보았는데, 조정사실 또는 조정금액에 대한 정보가 워낙 부실하였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패널은 아르헨티나의 조사개시결정이 반덤핑협정 제5.3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¹²¹ WT/DS132/R Paras. 7.96-98

Argentina - Poultry - 조사개시를 위한 충분한 증거여부를 결정할 때 덤핑 거래분만 고려하는 것은 안된다.

이는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Duties* 사건에서 다루어졌는데, 아르헨티나가 조사개시를 결정함에 있어 수출가격은 1997년 1월부터 6월, 그리고 1997년 8월의 가격에 기반하였고, 정상가격은 1997년 6월 30일 하루 동안의 가금류 가격에 기반하였기 때문이었다.¹²²

패널은 동 쟁점에 대하여 반덤핑협정 제 2.4 조와 관련성에 기반하여 평결하였다. 패널은 조사개시를 정당화하는 증거로서 덤핑된 거래만을 고려하는 관행에 대하여 제로잉 관행이 반덤핑협정 제 2.4.2 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EC-Bed Linen* 사건¹²³에 대한 상소기구의 평결을 인용하였다. 패널은 아르헨티나 당국이 특정 거래를 완전히 배제하였으므로 이것은 제로잉보다 더 문제가 있는 (*egregious*) 관행이라고 지적하였다.¹²⁴

이에 대하여 아르헨티나는 특정 거래가 덤핑되었다는 의미에서 덤핑이 있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고 항변하였으나, 패널은 개별적인 거래가 아닌 전체 거래에 대하여 덤핑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르헨티나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Argentina - Poultry - 조사개시를 위한 충분한 증거여부를 결정할 때 가격 비교시에는 상당한 정도의 기간의 중복이 필요하다.

¹²² WT/DS241/R, Para. 7.83-84.

¹²³ WT/DS141/R, European Communities -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tton-Type Bed Linen from India, para.55.

¹²⁴ WT/DS241/R, Paras. 7.77-80.

이는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Duties 사건에서 다루어졌는데, 아르헨티나가 조사개시를 결정함에 있어 수출가격은 1997년 1월부터 6월, 그리고 1997년 8월의 가격에 기반하였고, 정상가격은 1997년 6월 30일 하루 동안의 가금류 가격에 기반하였기 때문이었다.¹²⁵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 2.4 조에서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의 공정한 비교는 가능한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하여 두 기간이 상당한 정도로 겹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반덤핑협정 제 5.3 조의 목적상 매일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의 경우 하루 동안의 국내판매가 몇달의 수출가격과 충분히 겹쳐질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¹²⁶ 또한, 패널은 국내판매가 이루어진 기간으로 선택된 하루(1일)가 가격에서의 경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증거도 없었다고 지적하였다.¹²⁷ 따라서 패널은 아르헨티나 조사당국이 조사개시를 정당화하기 위한 충분한 덤핑의 증거가 없었으므로 반덤핑협정 제 5.3 조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¹²⁸

US - Softwood Lumber V - 신청서에 신청자에게 합리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모든 정보가 포함될 필요는 없다.

¹²⁵ WT/DS241/R, Para. 7.83-84.

¹²⁶ WT/DS241/R, Paras. 7.83-84.

¹²⁷ WT/DS241/R, Para. 7.85.

¹²⁸ WT/DS241/R, Para. 7.89.

US - Softwood Lumber V 사건에서 재미있는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이는 바로 제조자가 수출자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경우에서 비롯되었다.

수출국이었던 캐나다는 신청자가 수출자와 관계회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주요 캐나다 수출자의 판매 가격 및 비용 자료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²⁹ 또한, 캐나다는 미상무부가 신청자와 수출자간의 관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격 및 비용 자료 등과 같은 정보를 더 찾지 아니하고 신청자의 정보를 수락하였으므로 반덤핑협정 제 5.2 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³⁰

또한 캐나다는 수출자의 모회사의 제조자가 관계회사인 수출자의 가격이나 원가에 대한 상황을 신청서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자에게 합리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캐나다는 수출자와 제조자가 관계회사라는 신문기사가 신청서에 있었기 때문에 조사당국은 충분히 둘 간의 관계를 인지할 수 있었고 신청자에게 합리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패널은 반덤핑조사 신청서는 신청자에게 합리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제 5.2 조의 세부항목에 제시된 정보를 포함하면 되는데, 해당 신청서에는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협정 제 5.2 조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¹³¹

¹²⁹ WT/DS264/R, Para. 7.45.

¹³⁰ *Id.*

¹³¹ WT/DS264/R, Paras. 7.53-56, 7.59-61.

패널은 동 사건의 신청서에서 반덤핑협정 제 5.2(iii)조에서 제시된 정보를 포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동 사건에서 패널은 당해 신청서가 캐나다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우드 림버의 가격에 대한 정보, 소프트우드 림버의 구성가격에 대한 정보, 그리고 미국으로의 수출가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동 신청서는 반덤핑협정이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결하였다.

그리고 패널은 조사개시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반덤핑협정 제 5.3 조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패널들이 하였던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당국의 기준에 따를 따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¹³²

또한, 패널은 잠정 또는 확정 결정의 목적으로 반덤핑협정 제 2.2 조에 따른 덤핑마진 결정과 조사개시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동 사건의 패널은 증거의 충분성에서 요구되는 증거의 양질은 잠정 또는 확정 덤핑결정의 목적의 증거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기존 패널들의 의견을 따른다고 밝혔다.¹³³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 5.3 조가 조사개시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이 조사당국에게 좀 더 입증가능한 (probative) 증거가 이용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당국이 제출된 증거가 조사개시를 정당화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¹³⁴ 따라서 패널은 미국

¹³² WT/DS264/R, Paras. 7.78, 85.

¹³³ WT/DS264/R, Paras. 7.86.

¹³⁴ WT/DS264/R, Para. 7.87.

의 조사개시가 반덤핑협정 제 5.3 조와 부합한다고 평결하였다.

2. 조사신청서의 제공방법

반덤핑협정 제 6.1.3 조는 수출자 및 수출국 정부에 조사신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문에는 신청서 전문이 제공되는 형식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는데,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사건에서 이러한 쟁점이 논의되었다.

[관련 조문]

6.1.3 조사가 개시되는 즉시 당국은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접수된 서면신청서 전문을 알려진 수출자¹⁶⁾ 및 수출회원국의 당국에 제공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관련 이해 당사자도 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비밀정보의 보호요건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

¹⁶⁾ 일반적으로 수출자에게 부여하는 시한은 질의서 접수일로부터 기산되며, 이를 위해 질의서는 응답자에게 발송되거나 또는 수출회원국의 적절한 외교대표 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독자적 관세영역의 경우는 수출영역의 공식대표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1주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조사신청서 전문이 조사당국에 의해 능동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6.1.3조	<i>Argentina - Poultry</i> (DS241)

[사례 연구]

Argentina - Poultry - 조사신청서는 조사당국에 의해 능동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 6.1.3 조]

동 사건의 쟁점은 조사신청서 전문이 조사당국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신청서 전문을 입수가 가능한 상태로 까지만 만드는 것으로 충분한지가 다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패널은 "제공한다"는 의미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공급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당국의 실제적인 행위 (positive action) 을 요구한다고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이 동 조항에서 제공한다는 용어와 입수가 가능하다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¹³⁵ 패널은 이에 근거하여 아르헨티나 조사 당국이 알려진 수출자와 브라질 당국에 서면 신청서의 전문을 입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서면신청서를 능동적으로 (actively)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고, 반덤핑 협정 제 6.1.3 조와 부합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결하였다.¹³⁶

¹³⁵ WT/DS241/R, Paras. 7.169-172.

¹³⁶ WT/DS241/R, Paras. 7.172-173.

3. 조사개시의 결정과 중단 결정 [제 5.3 조 및 5.8 조]

[관련 조문]

5.8 관계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만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 1 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히 종결된다. 덤핑마진이 최소허용 수준이거나, 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된다.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덤핑마진은 최소허용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물량이 수입 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량의 3%미만을 점유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의 3%미만을 점유하는 국가들이 총체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상품 수입물량의 7%를 초과 점유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덤핑수입량은 일반적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조사개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조사는 중단된다	제5.3조 제5.8조	<i>Guatemala - Cement II</i> (DS156)
이미 충분한 증거에 의해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조사당국이 조사 개시의 근거가 된 정보의 충분성에 대해서 계속 검토할 필요는 없으며, 조사개	제5.8조	<i>US - Softwood Lumber</i> V (DS264)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시의 충분성을 부인하는 다른 정보가 입수된다고 해서 조사를 중단할 필요 는 없다		

[사례 연구]

Guatemala - Cement II - 조사개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조사는 중단된다

동 사건에서 멕시코는 과테말라가 조사개시 정당성과 관련한 증거의 충분성이 부족했으므로 신청을 기각하고 조사를 중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과테말라는 멕시코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반덤핑협정 제 5.8 조는 단지 조사가 개시된 후에 적용된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협정 제 5.8 조가 반덤핑조사 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패널은 *Mexico - Corn Syrup* 사건과 달리 본 사건은 증거의 불충분성으로 반덤핑협정 제 5.3 조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테말라 정부는 반덤핑협정 제 5.8 조에 따라 즉시 조사개시를 중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하였으므로 반덤핑협정 제 5.8 조도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¹³⁷

US - Softwood Lumber V - 조사진행중 추가로 발견된 조사개시를 위협하는

¹³⁷ WT/DS156/R Paras. 8.72-75

증거

한편 *US - Softwood Lumber V* 사건에서는 다소 다른 시각으로 해당 제 5.8 조에 대한 해석이 있었는데, 이미 조사개시가 충분한 증거에 의해 이루어진 이후에, 조사진행 중에 조사개시와 관련된 증거를 위협하는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에도 조사가 즉시 중단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우선 패널은 미국의 조사개시에 관한 증거는 충분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이미 충분한 증거에 의해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조사당국이 조사개시의 근거가 된 정보의 충분성에 대해서 계속 검토할 필요는 없으며, 조사개시의 충분성을 부인하는 다른 정보가 입수된다고 해서 조사를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였다.

즉 패널은 조사당국이 덤핑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를 종결해야한다는 의무는 조사당국에게 조사개시 이후에도 조사개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검토하고 동 증거를 약화시키는 다른 증거에 기반하여 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라고 지적하였다.¹³⁸

4. 덤핑과 피해에 대한 증거의 동시적인 검토 [제 5.7 조]

반덤핑협정 제 5.7 조는 덤핑과 그 피해의 증거를 조사개시부터 전체 조사과정에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덤핑과 피해가 동시에 검토되어

¹³⁸ WT/DS264/R, Para. 7.138.

야 하는 것인지, 순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조문]

5.7 덤프와 피해의 증거는 (a)조사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에서, 그리고 (b)그 이후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로부터 개시되는 조사 과정에서 동시에 고려된다.

[판정의 핵심]

[사례 연구]

Guatemala - Cement II

Guatemala - Cement II 사건에서 패널은 제 5.7 조가 조사당국이 덤프 및 피해의 증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았다.

Argentina - Poultry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Duties 사건에서 패널은 제 5.7 조가 피

해와 덤핑에 대한 증거를 고려할 때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규정으로 조사개시결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아니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Duties* 건에서 브라질은 조사개시 결정시 덤핑과 피해에 대하여 각각 다른 기간을 사용하는 것은 반덤핑협정 제 5.7 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¹³⁹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조사당국이 아르헨티나 조사당국이 덤핑의 충분한 증거를 위하여 사용한 자료의 기간은 1996 년 및 1997 년을 포함하나, 피해의 충분한 증거로서 사용된 자료의 기간은 1998 년 6 월까지라고 밝히고, 각각 다른 기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패널은 제 5.7 조는 조사당국이 증거를 고려하는 시점에 대한 주장인데, 브라질의 주장은 증거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주장이므로 동 조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쟁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기각하였다

5. 조사개시 및 반덤핑조치 관련 통지 및 공고

1) 조사개시의 통지 [제 5.5 조 및 제 12.1 조]

반덤핑협정은 조사개시와 조치결정에 대하여 적절하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조사의 개시의 경우 반덤핑협정 제 5.5 조는 제대로 요건을 갖춘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당국은 관련 수출국 정부에 동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 제 12.1

¹³⁹ WT/DS241/R, Paras. 7.113, 7.116.

조는 조사당국이 반덤핑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만족할 경우, 조사대상물품과 관련이 있는 회원국 또는 회원국들 및 조사당국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타 이해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문]

5.8 당국은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는 한 조사개시 신청서의 공표를 회피한다. 그러나 적합하게 서류를 갖춘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당국은 관련 수출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12.1 제 5 조에 따라 당국이 반덤핑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납득하는 경우, 자기 나라의 상품이 조사대상인 회원국 및 조사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당국에 알려진 다른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공고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정부의 조사개시 통지는 반덤핑조사 개시 공고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	<i>Guatemala - Cement II (DS156)</i>
관보에 반덤핑조사 개시 공고가 실렸다면 이 시점을 조사개시 공고일로 볼 수 있다	제5.8조	<i>Guatemala - Cement II (DS156)</i>
제12.1조의 통지의무는 이해 당사자	제12.1조	<i>Argentina - Poultry</i>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의 연락처를 획득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며, 공고가 통지 의무를 갈음할 수는 없다		(DS241)
제12.1조는 조사개시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조사당국이 결정하였을 때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특히 결정하였을 "때 (when)"의 의미는 결정 "하자마자 (as soon as)"로 해석된다	제12.1조	<i>Argentina - Poultry</i> (DS241)
조사개시 결정의 시점은 담당 부서의 내부 건의시점이 아니라 담당부서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제12.1조 제12.1.1조	<i>Guatemala - Cement II</i> (DS156)
신청서 접수 후 조사 개시 전에 조사 신청접수를 수입국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공식석상에서 구두로 언급하였다면 이 또한 통지로 볼 수 있다	제5.5조 제12.1조	<i>Thailand - H-Beams</i> (DS122)
분쟁해결양해 어느 부분에서도 제소국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소한 절차적 의무 위반을 묵인하라는 근거는 없으며, 모	제5.5.조 DSU 제3.8조	<i>Guatemala - Cement II</i> (DS156)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든 의무는 절차적이건 본질적이건 준수되어야 한다		

[사례 연구]

조사개시의 적절한 통지에 대하여는 여러 사건에서 논의되었다.

Guatemala - Cement II - 조사개시의 통지는 조사개시 공고 이전에

Guatemala - Cement II 사건에서 패널은 정부의 조사개시 통지는 반덤핑조사 개시 공고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한편, 관보에 반덤핑조사 개시 공고가 실렸다면 이 시점을 조사개시 공고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해석을 사실관계에 적용하면서 동 사건에서 조사 개시 공고가 1996 년 1 월 11 일 과테말라 관보에 실렸으므로, 과테말라의 조사개시통지가 반덤핑조사개의 공고일 1996 년 1 월 11 일 이전에 행하여졌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Argentina - Poultry - 알려진 수출자에 대한 조사개시의 통보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Duties 사건에서는 알려진 수출자에 대한 조사당국의 통지 의무를 다루었는데, 동 사건에서 브라질은 반덤핑협정 제 12.1 조에 따라 아르헨티나 조사당국이 반덤핑조사개시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결정하였다면 이를 이해당사자와 수출국에게 통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⁴⁰ 브라질의 주장에 따르면 1999년 2월 브라질의 5개 수출자들이 조사개시에 대하여 통지받았으나, 기타 7개 수출자들은 1999년 9월에 통지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브라질은 7개 수출자들 중 5개 수출자들은 1999년 1월 이미 조사당국에 알려져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아르헨티나는 기타 7개 업체의 연락처를 알아내기가 어려워 지연통지가 불가피하였으며 공고(public notice)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패널은 동 협정 제 12.1 조의 성격상 통지 의무는 조사당국이 연락처 (contact details)를 알아내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의무라고 설명하였다. 동 사건에서 아르헨티나가 자국에 주재한 브라질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반적인 서한은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지적하였다.¹⁴¹

그리고 패널은 제 12.1 조의 통지 의무는 이해 당사자의 연락처를 획득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며 공고 및 통지 의무를 명시한 조항에 비추어 공고가 통지 의무를 갈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 12.1 조는 조사개시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조사당국이 결정하였을 때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특히 결정하였을 "때 (when)"의 의미는 결정 "하자마자 (as soon as)"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조사개시점에서 통지받지 아니한 기타의 브라질 수출자들에게 1999년 9월 질의서가 발송되었다면 이는 조사개시 이후 약 8개월 이후 발송되었다고 지적하였다.¹⁴²

¹⁴⁰ WT/DS241/R, Para. 7.125.

¹⁴¹ WT/DS241/R, Paraz. 7.132-133.

¹⁴² WT/DS241/R, Para. 7.134-135.

따라서 패널은 조사개시시점에서 통지를 받지 아니한 7 개 기업은 조사 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므로, 이해당사자이며 조사개시 신청서에 첨부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조사당국에게 알려진 이해당사자임에도 통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협정 제 12.1 조 위반이라고 평결하였다.¹⁴³

Guatemala - Cement II - 조사개시 공고 시점 및 공고의 내용 [제 12.1 조 및 제 12.1.1 조]

반덤핑협정 제 12.1 조는 조사당국의 조사개시 통지와 공고에 대하여 또 제 12.1.1 조는 조사개시 공고의 내용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12.1.1 조사개시 공고는 다음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 23)를 통해 입수 가능하도록 한다.

- (i) 수출국명 및 관련상품명,
- (ii) 조사개시일,
- (iii) 신청서에서 덤핑이라고 주장되는 근거,
- (iv) 피해의 주장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의 요약,
- (v)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송부되어야 할 주소,
- (vi) 이해당사자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허용된 시한

Guatemala - Cement II 사건에서는 조사당국의 내부 건의시점을 조사개시결정시점으로 보아 조사개시의 공고를 해야 하는 지를 다루었었다.

¹⁴³ WT/DS241/R, Para. 7.131.

구체적으로 동 사건에서는 멕시코는 과테말라 조사당국이 1995년 12월 15일 반덤핑 조사 개시를 건의하는 보고서를 경제부 (Minister of Economy)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과테말라 정부가 조사 개시 공고를 1995년 12월 15일에 즉시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였으므로 반덤핑협정 제 12.1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조사개시 결정의 시점은 담당 부서의 내부 건의시점이 아니라 담당부서의 최종 결정이 내려진 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테말라 경제부가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2일 후인 1996년 1월 11일에 조사 개시 결정 공고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즉,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12.1조는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 아닌 그 후에 공고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최종결정이 내려진 시점을 조사개시 결정 시점으로 봐야 하므로 과테말라가 제12.1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평결하였다.¹⁴⁴

Guatemala - Cement II 사건에서는 또한 조사개시의 공고의 내용에 관한 쟁점이 있었는데, 패널은 조사개시공고에는 반덤핑협정 제 12.1.1 조에 나열된 항목 (관련 물품명, 덤핑주장의 근거, 피해주장의 기초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패널은 과테말라의 공고가 동 목록들 중 '덤핑이라고 주장되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테말라는 조사 당국의 별도 보고서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동 보고서가 공고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

¹⁴⁴ WT/DS156/R Paras. 8.87-89

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과테말라가 반덤핑협정 제 12.1.1 조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¹⁴⁵

Thailand - H-Beams - 구두통지의 합법성 여부 [제 5.5 조 및 제 12.1 조]

상기 설명된 반덤핑협정 제 5.5 조 및 제 12.1 조는 반덤핑조사 개시 및 결정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형식으로 통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구두 통지가 동 협정에서 요구하는 통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분명하지 않았으나, 동 쟁점은 *Thailand - H-Beams* 사건에서 논의되어 패널은 서면통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적절히 문서화된 정부 관료간 공식회합에서의 구두 통지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동 사건에서 태국은 1996 년 6 월 21 일 반덤핑조사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조사개시 6 주전인 1996 년 7 월 17 일 폴란드 정부 관료와 본 사건의 신청서 접수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1996 년 7 월 18 일 동 회의의 요약본이 기록된 태국 정부 문서를 폴란드 관료에게 송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폴란드는 조사신청은 서면통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야 하나, 정부 관료들의 구두 합의로 본 조사신청 통지가 이루어 졌으므로 이는 반덤핑협정 제 5.5 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⁴⁶

패널은 우선 반덤핑협정 제5.5조상의 통지는 '신청서 접수 후 조사 개시 전'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조사개시 6주전에

¹⁴⁵ WT/DS156/R Paras. 8.93-95

¹⁴⁶ WT/DS122/R, Paras. 7.80-84

태국과 폴란드 관료의 회의가 진행되었으므로 이는 동 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통지 형식에 관하여, 패널은 통지는 '알림'(inform) 혹은 '알게 하는 것' (make known)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서면통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동 조항에 명시적으로 서면통지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공식석상인 정부 관료간 회의에서의 통지는 동 규정을 만족한다고 평결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5.5조는 신청서 접수 후 조사 개시 전에 조사신청접수를 수입국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통지는 서면통지 뿐만 아니라 신청서 접수 사실을 공식석상에서 구두로 언급하였다면 이 또한 통지로 볼 수 있다고 평결하였다.¹⁴⁷

이에 덧붙여 패널은 적절히 문서화된 신청서의 접수 사실은 통지 내용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면서, 폴란드가 태국정부가 보내준 1996년 7월 17일 회의 요약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동 요약본은 신청 사실을 충족하기 때문에 태국의 통지는 모든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지적하였다.

Guatemala - Cement II - 통보지연으로 인한 협정무효화 또는 침해 정도
[DSU 제 3.8 조]

반덤핑조사의 개시에 대한 통지 및 공고가 지연되어 불이익을 받은 경우, 반덤핑협정에서 보장하는 이익에 대한 무효화 또는 침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분쟁해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반덤핑협정이 아닌 분

¹⁴⁷ WT/DS122/R, Paras. 7.92

쟁해결양해¹⁴⁸ 제 3.8 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쟁해결양해 제 3.8 조에 따르면, 반덤핑협정이 포함된 “대상협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견 명백한 무효화 또는 침해사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규칙위반이 동 대상협정의 당사국인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됨을 의미하며, 이 경우 피소국이 제소국의 협정의무 위반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Guatemala - Cement II* 사건에서 논의되었다. 동 사건에서 제소국인 멕시코는 과테말라가 공고를 지연함으로써 답변서 제출하는데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과테말라는 비록 공고의 지연이 있었으나 반덤핑협정을 무효화 또는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과테말라는 이러한 위반이 멕시코가 주장하는 것처럼 반덤핑협정을 무효화 또는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멕시코에게 조사 개시의 통보를 개시하기 전에는 어떠한 조사 단계도 밟지 않았으므로 멕시코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조사대상기업인 *Cruz Azul* 의 경우 답변 기한을 2개월 연장하여 줬다고 항변하였다.

패널은 우선 분쟁해결양해 제 3.8 조의 규정은 WTO 규정의 의무 위반은 제소국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했다는 것을 반증추정 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를 사실관계에 적용하면서 패널은 과테말라는 반덤핑협정 제 5.5 조에 따라 조사개시 전에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공고와 관련하여 반덤핑협정 제 6.1.3 조 및 제 12.1 조를 위반하였다고 언급하고, 과테말라가

¹⁴⁸ 분쟁해결양해란 ‘분쟁해결을관할하는규칙및절차에대한양해’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의 약칭으로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 하지 않았다고 반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과테말라의 주장을 기각하였다.¹⁴⁹

따라서 패널은 분쟁해결양해 어느 부분에서도 제소국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소한 절차적 의무 위반을 묵인하라는 근거는 없으며, 모든 의무는 절차적이건 본질적이건 준수되어야 한다고 평결하였다.¹⁵⁰

6. 핵심적 고려사항의 적정 통보 여부

반덤핑협정 제 6.9 조는 최종판정 이전에 당국은 확정조치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핵심적 고려사항들을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개는 당해 당사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동 조항에서는 핵심적 고려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여러 사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련 조문]

6.9 당국은 최종판정 이전에 확정조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공개는 당사자가

¹⁴⁹ WT/DS156/R Paras. 8.109-110

¹⁵⁰ WT/DS156/R Paras. 8.111-112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예비판정의 근거가 확정판정의 사실적 근거와 상당히 다를 때는 예비판정에 근거한 사실들의 공개만으로 최종판정의 근거가 공개되었다고 보는 것은 불충분하다	제6.9조	<i>Guatemala - Cement II (DS156)</i>
핵심적 사항의 통보는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제6.9조	<i>Argentina - Ceramic Tiles (DS189)</i>
핵심적 사항의 통보가 모든 사실의 빠짐없는 통보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이유까지 통보할 필요는 없다	제6.9조	<i>Argentina - Poultry (DS241)</i>

[사례 연구]

Guatemala - Cement II - 핵심적 고려사항의 적정 통보 여부 [제 6.9 조]

Guatemala - Cement II 사건에서 제소국은 과테말라가 조사대상기업 Cruz Azul 에게 확정반덤핑조치와 관련한 ‘핵심적 고려 사항’(essential facts under consideration)을 신속히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반덤핑협정 제 6.9 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⁵¹ 그러나 과테말라는 예비판정의 세부적인 보고서와 함께, 문제의 파일을 설명하는 공지와 접근방법에 대하여 공지에서 설명하였으므로 “핵심적 사항” (essential facts)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하였다.¹⁵²

패널은 예비판정의 근거가 확정판정의 사실적 근거와 상당히 다를 때는 예비판정에 근거한 사실들의 공개만으로 최종판정의 근거가 공개되었다고 보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사건에서 예비판정시 실질적 피해의 위협에 대한 근거가 사용된 반면, 최종결정시 사실상 실질적 피해에 그 근거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패널은 두 판정은 상당히 다르므로 잠정 조치의 결정 근거를 공개하였다고 이를 확정 조치의 근거 공개로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의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면 예비판정에 근거한 사실들만을 공개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핵심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 근거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통보해야지 단순히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였다고 해서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

Argentina – Ceramic Tiles - 핵심적 고려사항의 적정 통보 여부 [제 6.9 조]

Argentina – Ceramic Tiles 사건에서 패널은 먼저 반덤핑협정 제 6.9 조가

¹⁵¹ WT/DS156/R Para. 8.224

¹⁵² WT/DS156/R Para. 8.225

핵심적 고려 사항을 공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핵심적 고려 사항은 반드시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 예를 들면 고려중인 핵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¹⁵³

패널은 기록을 통하여 아르헨티나 당국이 조사 기록 일체를 이탈리아 수출업체에게 공개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탈리아 수출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제조사들이 제출한 가격 정보에 근거하여 덤핑 판정을 내리겠다는 점이 설명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조사 기록에는 수출업체와 제조사가 제출 자료가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을 뿐이어서 동 기록만 보고는 수출업체는 아르헨티나 당국이 자신들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제조사들의 자료를 토대로 최종 판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결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조사 당국이 비록 조사 기록 일체를 수출업체에게 공개하였으나 그 자료가 명료하지 않아 수출자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아르헨티나는 제 6.9 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결하였다.¹⁵⁴

Argentina - Poultry - 핵심적 고려사항의 적정 통보 여부 [제 6.9 조]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Duties 사건에서는 핵심적 사항의 통보와 관련하여 상세한 측면의 검토가 있었는데, 동 사건에서 브라질은 구체적으로 조사당국이 일부 국내 및 수출 판매가격에 대한 자료가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산정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¹⁵³ WT/DS189/R Para. 6.125

¹⁵⁴ WT/DS189/R Para. 6.130

이에 대하여 패널은 궁극적으로 최종결정에 사용되는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의 정보가 확정조치의 결정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정보가 사용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이 핵심적인 사실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패널은 일부 정상가격 또는 수출가격의 정보가 최종결정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확정조치 결정에 관한 기반이 되는 사실은 아니라고 평결하였다.¹⁵⁵

또한 패널은 제 6.9 조가 핵심적인 고려사실(facts)을 통보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reason)까지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7. 답변서 제출기간의 적정성 여부 [제 6.1.1 조]

반덤핑협정 제 6.1.1 조는 반덤핑 조사 관련 질의서에 대한 회신, 즉 답변서를 위해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는 최소한 30 일간의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한의 연장요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이러한 연장요청은 가능한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문]

6.1.1 반덤핑 조사에 사용되는 질의서를 받는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에게 응답¹⁵⁾을 위해 최소한 30 일이 주어진다. 동 30 일기간의 연장을 위한 어떤 요청에 대하여도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이러한 연장은 가능한 한 허용

¹⁵⁵ WT/DS241/R, Para. 7.223-224.

되어야 한다

15) 일반적으로 수출자에게 부여하는 시한은 질의서 접수일로부터 기산되며, 이를 위해 질의서는 응답자에게 발송되거나 또는 수출회원국의 적절한 외교대표 또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독자적 관세영역의 경우는 수출영역의 공식대표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1주일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제 6.1.1 조에서 어떤 질의서가 송부되어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에 대한 질의서의 미발송이 동 조항의 위반은 아니라	제6.1.1조	<i>Argentina - Poultry</i> (DS241)

[사례 연구]

Argentina - Poultry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Duties 사건에서 답변서 제출기간 30일 보장 여부 및 피해 질의서 송부 미발송 문제가 논의되었다.

동 사건에서 브라질은 조사당국이 일부 수출자들에게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을 20일만 주었으며, 이들 수출자들은 피해에 대한 질의서는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반덤핑협정 제 6.1.1 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¹⁵⁶

¹⁵⁶ WT/DS241/R, Para. 7.136.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조사당국이 발송한 정보 요청이 반덤핑협정 제 6.1.1 조상의 "질의서"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수출자들이 조사당국의 질의서에 답변하도록 요청 받았다고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으므로 1999년 9월 15일 브라질 수출자에게 송부된 정보 요청은 질의서 형식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패널은 송부된 질의서를 받은 수출자 가운데 1개 수출자가 조사당국의 정보요청에 첨부된 질의서의 11개 항목에 답변하였으므로 수출자들이 명백히 질의서에 답변하도록 요청받은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보고, 따라서 답변 제출기간을 20일만 제공하였으므로 반덤핑협정 제 6.1.1 조 위반이라고 평결하였다.¹⁵⁷ 그러나 제 6.1.1 조에서 어떤 질의서가 송부되어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에 대한 질의서의 미발송이 동 조항의 위반은 아니라고 평결하였다.

8. 현지실사 [제 6.7 조]

반덤핑협정 제 6.7 조는 현지실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종 조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관련 기업의 동의를 얻고 당해 회원국의 정부대표에게 통지하여 이러한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또는 상세사항을 추가로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¹⁵⁷ WT/DS241/R, Paras. 7.141-142.

이와 관련하여 반덤핑협정 부속서 I 에 기술된 절차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행해지는 조사에 적용된다. 당국은 비밀정보 보호요건을 조건으로,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관련 기업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부속서 I:7 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동 결과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분쟁사건에서 현지실사와 관련한 쟁점은 주로 부속서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관련 조문]

6.7 당국은 관련 기업의 동의를 얻고 당해 회원국의 정부대표에게 통보하여 이러한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또는 상세사항을 추가로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속서 1 에 기술된 절차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행해지는 조사에 적용된다. 당국은 비밀정보 보호요건을 조건으로,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관련 기업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 9 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동 결과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부속서 1

제 6 조제 7 항에 따른 현장조사 절차

1. 조사개시와 함께 수출회원국의 당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에게 현장조사 실시 의사가 통보되어야 한다.

2. 예외적인 상황에서 조사단에 비정부 전문가를 포함하려고 할 경우, 수출회원국의 기업과 당국은 이 사실을 통보 받아야 한다. 이러한 비정부 전문가의 비밀정보 보호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 방문계획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수출회원국 관련 기업으로부터 명시적인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 표준 관행이 되어야 한다.
4. 관련 기업의 동의를 얻은 즉시 조사당국은 방문대상 기업의 명칭, 주소 및 합의된 방문 일시를 수출회원국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방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당해 기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통보가 있어야 한다.
6. 질의서에 대한 설명을 위한 방문은 수출기업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방문은 (a)수입회원국의 당국이 당해 회원국의 대표에게 통보를 하고, (b)그 대표가 이러한 방문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7. 현장조사의 주요 목적이 제공된 정보의 검증 혹은 추가정보의 획득에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질의서에 대한 응답을 접수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단, 기업이 질의서에 대한 응답접수전의 현장조사에 동의하고 수출회원국 정부가 조사당국에 의해 예정된 방문을 통보받고 이를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검증되어야 할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과 추가로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방문전에 관련 기업에 통보하는 것이 표준관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입수한 정보에 비추어 현장에서 추가적인 상세사항의 제공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8. 수출회원국의 당국이나 기업에 의해 제기되고 성공적인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수적인 문의나 질문에 대한 회신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방문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비정부 전문가의 조사단 참여는 허용되거나 가급적 독립적인 전문가가 참	6.7조 부속서 I	<i>Guatemala - Cement II</i> (DS156)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비정부 전문가의 조사단 참여이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참여사실은 통보되어야 한다.	6.7조 부속서 I	<i>Guatemala - Cement II</i> (DS156)
비록 제출되지 않은 정보라 할지라도 현지실사에서 조사할 수 있다	부속서 I:7	<i>Guatemala - Cement II</i> (DS156)
협정 제6.7조의 목적은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 당사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잔여 조사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6.7조	<i>Korea - Certain Paper</i> (DS312)
제6.7조 상의 통보에는 현장 조사 결과 검증되었거나 또는 검증 되지 못한 자료를 포함하여, 현장 조사의 모든 측면에 관한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6.7조	<i>Korea - Certain Paper</i> (DS312)
제6.7조는 통보의 형식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한 반드시 문서로 통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통지도 가능하다	6.7조	<i>Korea - Certain Paper</i> (DS312)

[사례 연구]

Guatemala - Cement II (DS156): 현지실사의 절차

Guatemala - Cement II 사건에서 현지실사 절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동 사건에서 제소국인 멕시코는 조사대상 기업인 Cruz Azul 사에 대한 과테말라 당국의 현장 조사시 과테말라 당국이 (1) Cruz Azul사와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 비정부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시키려고 하였으며; (2) 비정부 전문가가 포함된 사실을 멕시코 정부에 통보하지도 않았고; (3) Cruz Azul사가 제출하지 않은 정보까지 조사하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멕시코는 반덤핑협정 제6.7조는 물론 부속서 I의 2항, 3항, 7항, 8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우선 반덤핑협정 제 6.7 조 및 부속서 I 은 어느 것도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 비정부 전문가의 조사단 참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과테말라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은 그 다음으로 반덤핑협정 부속서 I:2 항을 평가하였다. 패널은 부속서 I:2 항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조사단에 비정부 전문가를 포함하려고 할 경우, 수출회원국의 기업과 당국은 이 사실을 통보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동 조항에 따라 멕시코가 과테말라로 조사당국으로부터 비정부 전문가 조사단 포함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하였는지 평가하였다. 패널은 통보 증거에 비중을 두고 심리하였다.

패널은 과테말라 당국이 비정부 전문가의 조사단 포함 사실을 사전에 멕시코 정부에 통보한 증거가 없으며, 반덤핑협정 부속서 I:2 항의 위반이라고 평결하였다. 즉, 패널은 현장 조사시 비정부 전문가는 조사단에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국가에 대하여 비정부 전문가 조사단 참여에 관하여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평결하였다.

그러나 공평하고 객관적인 당국이라면 해당 기업과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 비정부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과테말라 당국의 행위는 사려 깊지 못한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비난하였다.¹⁵⁸

한편, 패널은 해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사실은 비정부 전문가의 인적 사항으로 충분하며 비정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것까지는 없다고 보았다.¹⁵⁹

또한, 패널은 부속서 I:7 항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 조항은 현지실사의 주요 목적이 제공된 정보의 검증 혹은 추가정보의 획득에 있기 때문에 현지실사는 질의서에 대한 응답을 접수한 후에 행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수한 정보에 비추어 현장에서 추가적인 상세사항의 제공을 배제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패널은 이와 관련하여 정보 수집 범위를 당해 기업이 이미 제출한 정보에 국한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특히 부속서 1 의 7 항의 내용은 추가 정보의 획득이 현장 조사의 목적이며 추가적인 상세 사항의 제공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평결하였다.¹⁶⁰

② *Korea - Certain Paper* 사건: 현지실사 내용의 공개

동 사건에서 인도네시아는 한국 무역위원회가 현지실사 후 CMI 라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대상 기업인 Indah Kiat 와 Pindo Deli 에 대해서 입수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겠다고 구두 설명한 것은

¹⁵⁸ WT/DS156/R Para. 8.189

¹⁵⁹ WT/DS156/R Paras. 8.197-8.198

¹⁶⁰ WT/DS156/R Paras. 8.201-8.203

통보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므로 현지실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라는 제 6.7 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우선 동 협정 제 6.7 조의 목적이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 당사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잔여 조사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현장 조사 결과의 통보 내용은 검증되었거나 또는 검증 되지 못한 자료를 포함하여, 현장 조사의 모든 측면에 관한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동 사건을 검토하였다.

패널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한국 무역위원회는 인도네시아 측에 현지실사 결과를 적절히 통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으며, 패널은 공표문 역시 현장 조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제 6.7 조에서 통보의 형식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한 반드시 문서로 통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구두 통보의 형식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한국이 비록 통보의 형식에서의 문제는 없었으나 통보의 내용에 있어 적절한 수준의 정보가 포함된 통보를 하지 못함으로써 제 6.7 조에 부합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결하였다.

동 사건으로 미루어 반덤핑협정 제 6.7 조 상의 통보에는 현장 조사 결과 검증되었거나 또는 검증 되지 못한 자료를 포함하여, 현장 조사의 모든 측면에 관한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 6.7 조는 통보의 형식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한 반드시 문서로 통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 2 절 증 거

1. 증거 제출 및 이익 방어 기회 제한 여부 [제 6.1 조 및 6.2 조]

반덤핑협정 제 6 조는 반덤핑조사에서의 증거를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 제 6.1 조는 조사당국이 조사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또 이해관계자가 관련있다고 판단한 정보의 제출을 막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정문 제 6.1.2 조는 비밀정보로 분류된 것 이외의 정보는 여타 이해관계자에게 즉각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협정문 제 6.2 조는 이해관계자가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의무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아울러 정보제공은 구술로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문]

제 6.1 조 / 제 6.1.2 조 / 제 6.2 조

6.1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모든 이해당사자는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통보 받으며 당해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들이 간주하는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다.

6.1.2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요건을 조건으로, 일방 이해당사자에 의해 서면으로 제시된 증거는 조사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신속히 입수될 수 있도록 한다.

6.2 반덤핑 조사의 전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당국은 요청에 따라 모든 이해당사자가 상반된 이해를 갖는 당사자와 회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반박주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회의 제공시 비밀보호의 필요 및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도 이러한 회합에 참석할 의무는 없으며, 회합 불참이 그 당사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해당사자는 또한 정당한 경우 구두로 다른 정보를 제시하는 권리를 갖는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수출자의 증거제출기회가 박탈당하면 안된다	제6.1조	<i>US - OCTG Sunset Reviews (DS268)</i>
이해관계자 스스로 반론서(a rebuttal brief)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거제출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6.1조	<i>US - OCTG Sunset Reviews (DS268)</i>
조사에 참가하고 (participating)하고 있다는 통상적인 의미는 ‘공유한다 (share)’는 또는 ‘참여한다 (take part in)’는 의미로, 이는 조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일종의 행동을 취해야 (undertake some action) 한다는	제6.1.2조	<i>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Duties (DS241)</i>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의미이다		
이해당사자가 진행중인 조사를 알지 못하였다면 그는 반덤핑협정 제6.1.2 조상의 조사에 참가하는 이해당사자 일 수 없다	제6.1.2조	<i>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Duties (DS241)</i>

[사례 연구]

① US - OCTG Sunset Reviews 사건: 신속 절차의 증거 제출 및 이익방어 기회

미국은 일몰재심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일몰재심 개시에 관련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을 때, 일몰재심 신속절차 (expedited sunset review)¹⁶¹를 적용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신속절차가 증거 제출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반덤핑 협정 제6.1조에 위반되며, 묵시적 포기 업체에 대해 덤핑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이익 방어 기회를 규정하고 있는 제6.2조에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¹⁶¹ 신속일몰재심(이는 신속연례재심과 상계관세에 있어서의 신속재심과 구별된다)은 완전일몰재심과 대비하여 이용되는데, 조사참여에 대하여 부적절한 이해관계자의 답변이 있다면, 조사를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여 버린다.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함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판정을 내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C.F.R § 351.102. Expedited sunset review is used in these regulations as a shorthand expression for the 120-day expedited sunset review conducted by the Department under section 751(c)(3)(B) of the Act. The Department will conduct an expedited sunset review when respondent interested parties provide inadequate responses to a Notice of Initiation under new § 351.218(e)(1)(ii).

패널은 제6.1조와 관련하여 미국 조사 당국이 신속 절차(*expedited review*)를 적용하였으나 이로 인해 수출자의 증거제출 기회가 박탈당한 바가 없으므로 미국 당국의 행위는 협정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그 근거로서 미국 당국의 최종 통지문에 아르헨티나 수출업체인 Siderca사가 제출한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 Siderca사가 미국 당국에 반론서(*a rebuttal brief*)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¹⁶²

또한, 패널은 특정 업체들이 재심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협조적인 수출자에게까지 제6.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신속 절차를 적용한 미국 당국의 행위는 반덤핑협정 제 6.1조에는 합치되지만, 묵시적 포기 업체에 대한 자동적인 덤핑 지속 가능성의 판정은 제6.2조에는 합치되지 않는다고 평결하였다. 따라서 증거 제출의 기회와 이익 방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속 절차를 규정하는 것 자체로 협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②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Duties* 사건: 이해당사자의 정보 접근 여부

반덤핑협정 제 6.1.2 조는 공개본인 경우에는, 1 개의 이해관계자에 의해서면으로 제출된 증거는 조사에 참가하고 있는 여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즉각

¹⁶² WT/DS268/R Para 7.230-7.231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자들이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증거를 신속히 입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Duties* 사건에서 논의되었다.

동 사건에서 제소국인 브라질은 조사당국이 일부 수출자에게 조사개시 및 답변을 제출할 필요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수출자들이 신속히 입수가능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⁶³

패널은 우선 조사에 참가하고 (participating)하고 있다는 통상적인 의미를 ‘공유한다 (share)’는 또는 ‘참여한다 (take part in)’는 의미로 보고, 이는 조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일종의 행동을 취해야 (undertake some action)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이해당사자가 진행중인 조사를 알지 못하였다면 반덤핑협정 제 6.1.2 조상의 조사에 참가하는 이해당사자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동 사건에서 수출자들은 1999년 9월 15일까지 조사개시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사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조사당국도 이들에게 당해 증거를 신속히 입수가능하게 하도록 해야한다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 6.1.2 조가 조사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증거가 신속하게 입수가능하도록 의무를 조사당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브라질의 일부 수출자들은 조사개시여부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사에 참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¹⁶⁴

¹⁶³ WT/DS241/R, Para. 7.148.

¹⁶⁴ WT/DS241/R, Para. 7.153.

2. 입수가능한 사실 이용의 적법성 [제 6.8 조]

반덤핑협정 제 6.8 조는 이해당사자로부터의 정보의 획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울 경우 조사당국이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부속서 II 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판정을 할 경우의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 6.8 조의 적용시 부속서 II 도 함께 준수되어야 한다.

부속서 II 는 덤핑방지조치위원회의 권고사항(1984.5)를 수용한 것으로 실제 여러 분쟁사건에서 협정문 제 6.8 조는 부속서 II 와 함께 논의되었다.

[관련 조문]

6.8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이항의 적용에 있어서 부속서 2 의 규정이 준수된다.

부속서 2

제 6 조제 8 항에 따른 입수가능한 최선의 정보

1. 조사개시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와 이해당사자가 회신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당국은 합리적인 기간내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국내산업에 의한 조사개시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포함, 이용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당국이 자유로이 판정

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알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당국은 또한 이해당사자가 특정매체(예를 들어 컴퓨터 테이프)나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이 행해지는 경우 당국은 선호되는 매체 혹은 컴퓨터 언어로 응답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의 합당한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컴퓨터 체제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해당사자가 전산화된 회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며, 요청받은 대로 응답을 하는 경우 이것이 이해당사자에게 예를들어 불합리한 추가비용이나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당국은 전산화된 응답의 요청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이해당사자가 이러한 매체나 컴퓨터 언어로 전산화된 회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며 요청받은 대로 응답을 할 경우 이것이 이해당사자에게 예를 들어 불합리한 추가비용이나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한다면, 당국은 특정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된 응답의 요청을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검증가능하며 부당한 어려움이 없이 조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출되고 적시에 제공되었으며, 적용이 가능한 경우, 당국이 요청하는 특정 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제출된 정보는 판정이 내려질 때 고려되어야 한다. 이해당사자가 선호되는 매체 또는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국이 제 2 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선호되는 매체나 컴퓨터 언어로 응답하지 아니한 것이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4. 정보가 특정매체(예를 들어 컴퓨터 테이프)로 제공된 경우 당국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정보는 서면자료 또는 당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밖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5. 이해당사자가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면 비록 제공되는 정보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지 아니하더라도 이것은 당국이 이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증거 또는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즉시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내에 추가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경우 조사시한이 적절히 고려된다. 당국이 이러한 설명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증거 또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공표된 판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7. 당국이 조사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 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정상가격에 관한 조사결과를 포함한 판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당국은 특별한 신증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당국은 가능하다면 공표된 가격표,공식 수입통계 및 세관보고서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 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이해당사자에게 정보 접근 거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는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제6.8조 부속서 II	<i>Guatemala - Cement II</i> (DS156)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비정부 전문가가 조사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현지실사 거부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6.8조 부속서 II	<i>Guatemala - Cement II</i> (DS156)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행동이다		
반덤핑협정이 이해 당사자에게 '전적인' (at any cost) 협조 의무를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제6.8조 부속서 II	<i>Guatemala - Cement II</i> (DS156)
답변마감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제 6.8조의 합리적인 기간내 자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은 아니다	제6.8조	<i>US - Hot-Rolled Steel</i> (DS184)
이전에 제공된 적이 없어 고도의 새로운 검증이 필요한 가격, 비용 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면 비록 뒤늦게 제출된 자료라 하더라도 함부로 배제하면 안된다	제6.8조	<i>US - Hot-Rolled Steel</i> (DS184)
만일 어떤 정보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면 조사 당국은 입수가 능한 사실을 배제하고, 반드시 제출된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제6.8조	<i>US - Hot-Rolled Steel</i> (DS184)
부속서 II:3항의 적시에 (in a timely fashion) 라 함은 합리적인 기간을 의미한다	부속서 II:3	<i>US - Hot-Rolled Steel</i> (DS184)
조사당국이 답변자에게 이해가 상충되는 관계회사의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이를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것	제6.8조 부속서 II:7	<i>US - Hot-Rolled Steel</i> (DS184)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을 보고 입수 가능한 사실을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된다.		
<p>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추가 설명의 기회 또한 부여되어야 한다.</p> <p>특히 정보를 배제한 이유는 최종판정문에도 공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제6.8조 부속서 II:6</p>	<p><i>Argentina - Ceramic Tiles (DS189)</i></p>
<p>정보는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느 하나의 측면은 부속서 II:3항을 충족하면서도 다른 측면은 부속서 II: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판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충족하는 정보의 측면이 결함 있는 다른 정보의 측면과의 관계상 “부당한 어려움 없이”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판정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p>	<p>부속서 II:3</p>	<p><i>US - Steel Plate (DS206)</i></p>
<p>최선을 다했다는 사실만으로 입수가 가능한 사실의 사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주어진 능력을 고려한 최선의 능력을 의</p>	<p>제6.8조 부속서 II:5 부속서 II:6</p>	<p><i>Egypt - Rebar (DS211)</i></p>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미하며 이해당사자의 고도의 협력과 그러기 위한 노력을 수반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필요한 정보는 당해 수출자가 자료 제출의 어려움에 대하여 적시에 조사 당국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배제될 수 있다	6.8조 부속서 II	<i>Argentina - Poultry (DS241)</i>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입수가능한 사 실은 단순히 그 자체로 정확하고 유 용한 정보가 아니라(not simply correct or useful <i>per se</i>)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한 정보(most fitting or most appropriate) 를 의미한다	6.8조 부속서II.7	<i>Mexico -Rice (DS295)</i>
조사대상기간동안 수출실적이 없어서 수출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6.8조 부속서II.7	<i>Mexico -Rice (DS295)</i>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사례 연구]

① *Guatemala - Cement II* 사건

동 사건에서 멕시코는 과테말라 조사당국이 반덤핑협정 제 6.8 조에 의거해 입수가능한 사실 (Fact Available)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멕시코는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비정부 전문가가 조사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조사대상 기업인 Cruz Azul 사의 조사 수검 거부는 합당하였고, 이것이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패널은 이해당사자에게 정보 접근 거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이는 받아 들여 질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패널은 반덤핑협정은 이해 당사자에게 '전적인' (at any cost) 협조 의무를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테말라 당국이 입수 가능한 사실원칙을 성급하게 원용한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평결하였다.¹⁶⁵

② US - Hot-Rolled Steel 사건: NSC 와 NKK 의 경우

동 사건에서 조사 기간 중 일본 3 사는 문제가 되는 열연 강재를 실제로 중량을 측정하여 판매하기도 하였고, (실제 중량 기준) 제품의 크기를 기준으로 중량을 추정하여 판매하기도(이론 중량 기준)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상무부는 덤핑 마진을 산출하기 위해 일관된 측정 기준 (consistent unit of measurement)으로 톤당 가격을 계산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에 이론중량 기준의 판매분을 실제 중량 기준 판매분으로 환산하는데 적용할 중량 환산 기준 (weight conversion factor)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 요청에 대하여 일본 NSC 사는 이론 중량 기준 판매분은 실제 중량을 측정하지 않고 판매하므로 중량 환산 기준을 산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

¹⁶⁵ WT/DS156/R Para. 8.251

으나, 후에 이룬 중량 기준 판매분의 실제 중량 측정자료가 생산 database 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현장 조사 14 일전 중량 환산 기준을 제출하였다. NKK 사 역시 처음에는 중량 환산 기준을 작성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후에 같은 조사 대상인 KSC 사가 최대로 추산 가능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을 알고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 중량 환산 기준을 현장 조사 9 일전 제출하였다. 그러나 미상무부는 NSC 사와 NKK 사의 제출 자료를 인정치 않고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중량을 환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소국인 일본은 비록 늦게 제출하였지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일본의 기업에 대하여 미 상무부가 입수가 가능한 사실을 사용한 것은 반덤핑협정 제 6 조 및 부속서 II 에 위반되며 제 2.3 조 및 제 2.4 조와 제 9.3 조도 아울러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⁶⁶ 반면, 미국은 NSC 와 NKK 의 경우 미상무부 규정에 기재된 마감일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따라서 반덤핑협정 제 6.8 조상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우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을 적용하는 반덤핑협정 제 6.8 조가 마감일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적용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패널은 부속서 II:3 항을 적용하였다. 동 조항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제출된 정보가 검증가능하며 부당한 어려움 없이 조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출되고 적시에 제공되었다면 결정시 당해 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패널은 동 사건에서 NSC 와 NKK 가 제출한 자료는 검증 가능하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데도 배제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

¹⁶⁶ WT/DS184/R Para. 7.31

자료는 이전에 제공된 적이 없어 고도의 검증이 필요한 가격, 비용 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당국이라면 NKK 와 NSC 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따라서 미국은 협정 제 6.8 조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¹⁶⁷

이에 대하여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단은 지지하였으나, 다른 논리에 근거하여 평결하였다. 상소기구는 NSC 와 NKK 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미 상무부가 정한 시한은 넘겼지만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반덤핑협정 제 6.1.1 조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응답 기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상소기구는 협정 제 6.8 조에 대하여 만일 어떤 정보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면 조사 당국은 입수가 가능한 사실을 배제하고, 반드시 제출된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부속서 II:3 항은 조사 당국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정보의 요건으로서 어려움 없이 조사에 이용 가능할 것과 적시에 (in a timely fashion) 제공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적시란 합리적인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미상무부가 단지 자신들이 정한 시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것인지 검토하지 않은 채 두 회사가 제공한 정보 대신 입수 가능한 사실을 이용한 것은 협정 제 6.8 조 위반이라고 평결하였다.¹⁶⁸

¹⁶⁷ WT/DS184/R Para.7.59

¹⁶⁸ WT/DS184/AB/R Paras.89-90

③ US - Hot-Rolled Steel 사건: KSC 의 경우

동 사건에서 미 상무부는 일본의 조사대상기업에게 열간 압연강을 미국 내 현지법인 affiliates 를 통해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현지 법인의 재판매 가격과 생산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조사대상 기업 중 KSC 는 미국 판매분 상당량을 미국 내 현지 법인인 California Steel Industries 사 (이하 “CSI”라 함) 에게 판매하였는데, 이 회사는 KSC 와 브라질 업체 CVRD 가 50 대 50 투자한 회사로서 당해 덤핑 조사 신청자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KSC 는 CSI 를 통제하고 있지도 못하며, 동 회사가 덤핑 조사 신청자중의 하나이므로 재판매 가격과 생산가를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동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고, KSC 가 부속서 II:5 항상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보았다.¹⁶⁹ 따라서 미상무부는 KSC 사가 비관계 고객에게 미국향으로 판매한 가격 중 두 번째로 높았던 가격을 입수 가능한 자료로서 대신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미국이 제조국의 한 회사에게 조사 신청자중의 하나인 회사의 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협정 제 6.8 조와 부속서 II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CSI 사가 덤핑 조사 신청사이므로 KSC 와는 분명히 이해가 상충되며, 브라질 합작 업체 CVRD 도 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 업체이면서 미국 시장에서 KSC 와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역시 KSC 와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KSC 가 주주 자격을 이용하게 무리하

¹⁶⁹ 반덤핑협정 부속서 2의 제5항

이해당사자가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면 비록 제공되는 정보가 모든면에서 이상적이지 아니하더라도 당국이 이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여서는 아니된다.

게 CSI 사의 재판매 가격과 생산가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같은 행위는 이 세 업체의 영업 관계를 훼손했을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KSC 가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미 상무부가 판단하고 입수 가능한 사실을 불리하게 적용한 것은 부속서 2 의 7 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부속서 II:7 항은 이해당사자가 협조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 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황은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패널은 동 사건에서 이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미 상무부가 일본에게 이해가 상충되는 회사의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이를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입수 가능한 사실을 불리하게 적용한 것은 협정 제 6.8 조 및 부속서 II:7 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결하였으며, 상소기구도 이러한 패널의 평결을 지지하였다.¹⁷⁰

④ Argentina - Ceramic Tiles 사건

동 사건에서 제소국은 조사대상인 이탈리아 수출업체가 가격 정보를 제공하였는데도 아르헨티나 당국이 합리적인 설명 없이 이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정보를 사용한 것은 반덤핑협정 제 6.8 조와 부속서 II 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⁷¹

패널은 이와 관련하여 반덤핑협정 부속서 II:6 항을 적용하였다. 부속서 II:6 항에 따르면 증거 또는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¹⁷⁰ WT/DS184/AB/R Paras.109-110

¹⁷¹ WT/DS189/R Paras.6.12-14

당사자는 즉시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설명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패널은 동 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즉시 통보하지 하여야 함에도 아르헨티나 당국이 즉시 통보하지 않았고,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정보를 배제한 이유가 최종판정문에도 공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¹⁷² 따라서 패널은 아르헨티나 당국은 협정 제 6.8 조 및 부속서 II:6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결하였다.¹⁷³

⑤ US - Steel Plate 사건

동 사건에서 미상무부가 인도의 수출업체가 판매가에 관하여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한 검증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입수가능한 사실'을 사용한 것이 반덤핑 제 6.8 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인도는 부속서 II:3 항에서 제출된 정보가 검증가능하며 부당한 어려움이 없이 조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출되고, 적시에 제공되었으며, 적용이 가능한 경우 덤핑결정시 고려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미국이 제출된 자료를 배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우선 부속서 II의 규정을 검토하고, 부속서의 규정이 의무적인 성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였다. 패널은 우선부속서 II:3 항을 검토하였다. 즉, 수출업체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부속서 II:3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사당국은 판정을 함에 있어 동 정보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며, 동 정보의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입수 가능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¹⁷² WT/DS189/R Para.6.80

¹⁷³ WT/DS189/R Paras.6.66-67

패널은 정보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독으로는 부속서 II:3 항을 충족하면서도 연관 있는 다른 항목의 정보가 부속서 II:3 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하여 판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조사당국이 부속서 II:3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가 결합 있는 다른 정보와의 관계상 “부당한 어려움 없이”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그 판정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패널은 미 상무부의 판정문이나 조사기록에 수출업체가 제공한 미국내 판매정보가 다른 정보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드러나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패널은 미국 내 판매정보가 제 3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동 정보가 검증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US - Hot-Rolled Steel* 사건의 판정을 인용하면서 동 정보가 ‘부당한 어려움 없이’ 이용될 수 있으며 적시에 제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미 상무부의 조치가 반덤핑협정 제 6.8 조 및 부속서 II:3 항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평결하였다.

⑥ *Egypt - Steel Rebar* 사건

동 사건에서 제소국인 터키는 이집트 조사당국이 정당한 근거 없이 수출업체의 비용정보를 문제 삼고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동 조사당국에 의한 ‘입수 가능한 정보’의 이용은 반덤핑협정 제 6.8 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터키는 수출업체가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고 조사당국이 특정 업체에는 정보가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속서 II:5 항 및 II:6 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덤핑협정 부속서 II:5 항은 이해당사자가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면 비록 제공되는 정보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지 아니하더라도 이것은 당국이 이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사건에서 패널은 터키가 능력에 따른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 않고 “공평하고 객관적인 조사당국”이라면 위 수출업체 Colakoglu, Diler 및 Habas가 반덤핑협정 제 6.8 조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이므로 이집트 조사당국이 동 수출업체에 대하여 ‘입수 가능한 정보’를 이용한 것은 제 6.8 조 또는 부속서 II:5 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결하였다.

그 다음으로 패널은 우선 부속서 II:6 항은 증거 또는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그 이유가 통보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추가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패널은 수출업체 Icdas 및 IDC 와 관련하여 이집트 조사당국이 추가답변을 거의 빠짐없이 입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를 당사자에 사전에 통지하여 추가 설명이나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하는데 이집트 조사당국이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반덤핑협정 제 6.8 조 및 부속서 II:6 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결하였다.

⑦ *Argentina - Poultry Anti-Dumping Duties* 사건

동 사건에서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조사당국이 아르헨티나 국내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브라질 수출자가 제출한 정보를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입수가능한 사실을 사용함으로써¹⁷⁴ 반덤핑협정 협정 제 6.8 조 및 부속서 II 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우선 조사당국이 수출업체 인가와 같은 절차적인 요건을 부여하는 행위는 반덤핑협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또한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 6.8 조상 "적절하게 제출된"의 의미가 WTO 회원국의 국내법의 관련 절차적 규정에 따라 제출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입증되지 아니한 수출자인 Catarinense 가 제출한 정보는 배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패널은 Frangosul 이라는 브라질 수출기업이 적시 제출의 어려움에 대한 통보도 없이 조사개시 7 개월이 지나서야 제출한 정상가격 정보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된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조사당국이 국내절차에 따라 승인된 법적 지위가 없는 수출자의 정보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반덤핑협정 제 6.8 조 및 부속서 II 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평결하였다.¹⁷⁵ 또한, 합리적인 기간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필요한 정보는 당해 수출자가 자료 제출의 어려움에 대하여 적시에 조사당국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배제될 수 있다고 평결하였다.¹⁷⁶

Mexico -Rice 사건: 자료 일부 미제공자에 대한 대우

동 사건에서 수출국인 미국은 멕시코가 자료를 일부 제공하지 않는 수출자에 대해서 입수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것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¹⁷⁴ WT/DS241/R, Paras. 7.174-182.

¹⁷⁵ WT/DS241/R, Paras. 7.184-193.

¹⁷⁶ WT/DS241/R, Paras. 7.193-198.

동 사건에서 조사대상인 Producers Rice 는 조사 기간 동안 멕시코로 쌀을 수출하지 않았으나 질문서에 답변하는 등 멕시코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멕시코 당국은 덤핑마진의 산정에 필요한 수출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조자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 6.8 조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조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조사 당국이 입수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해석하고, Producers Rice 의 경우는 조사 당국이 입수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멕시코 당국이 다른 이해 당사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를 보다 신중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Producers Rice 에 대해서만 불리한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도 협정 제 6.8 조 및 부속서 II:7 항 위반이라고 평결하였다.

3. 증거자료의 제공의무 준수 [제 6.1.2 조 및 6.4 조]

반덤핑협정 제 6.1.2 조는 비밀정보로 분류된 것 이외의 정보는 여타 이해관계자에게 즉각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협정은 조사당국이 가능한 경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데 관련된 비밀이 아닌 반덤핑조사에 사용된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또한 이

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을 준비할 기회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문]

6.1.2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요건을 조건으로, 일방 이해당사자에 의해 서면으로 제시된 증거는 조사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신속히 입수될 수 있도록 한다.

6.4 당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데 관련되고 제 5 항에 정의되어 있는 비밀이 아니며 당국에 의해서 반덤핑조사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또한 이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입장을 준비할 기회를 적시에 제공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제6.1.2조는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접근이 '통상적이고 일상적인'(regular and routine)인 것으로 해석된다.	제6.1.2조	<i>Guatemala - Cement II</i> (DS156)

[사례 연구]

Guatemala - Cement II 사건-증거자료 제공의무

동 사건에서 수출국인 멕시코는 과테말라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않아 협정 제 6.1.2 조 및 제 6.4 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동 사건에서 멕시코는 과테말라 경제부가 1996년 11월 4일 Cruz Azul 사의 대리인이 본 사건의 서류(case file)를 열람하려 했으나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공증 문서를 제시하였다. 본 공증 문서에는 책임자가 부재중이어서 서면신청을 했으나, 과테말라 관료가 본 서류를 검토해야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동 문서에서 멕시코는 과테말라가 공청회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문서 사본을 20일이 지난 후에야 전달받았다고 언급하였다. 멕시코는 이를 근거로 멕시코는 과테말라의 이와 같은 행동은 반덤핑협정 제 6.1.2 조와 제 6.4 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우선 반덤핑협정 제 6.1.2 조는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접근이 '통상적이고 일상적인'(regular and routine)인 것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¹⁷⁷ 또한,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 6.1.2 조는 '신속히'(promptly) 이해당사자에게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해당사자가 증거를 요청할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동 사건에서 공청회 제출 자료 사본을 20일 후에나 제공한 것은 증거 자료 사본을 '신속히'(promptly) 상대 이해당사자에게 제공 하라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¹⁷⁸

한편, 과테말라가 제공한 공청회 기록문서 중 일부가 누락된 것도 자료 제공 의무 위반이라는 멕시코의 주장에 대하여는, 패널은 이를 고의성이 없는 행위로 보고 이러한 우발적인 자료 누락은 자료 제공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¹⁷⁷ WT/DS156/R Para. 8.113

¹⁷⁸ WT/DS156/R Paras. 8.135-145

4. 조사기간 연장의 합법성 [제 6.2 조]

반덤핑협정에서 덤핑의 예비판정 이후 추가적인 조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몇몇 관련 규정이 있다. 반덤핑협정 제 6.1 조는 반덤핑 조사와 관련한 모든 이해당사자는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통보받으며 당해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들이 간주하는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협정 제 6.2 조는 전체 조사과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협정 제 6.8 조의 입수가능한 증거와 관련하여 부속서 II:1 항은 조사개시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와 이해당사자가 회신시 이러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문]

6.2 반덤핑 조사의 전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당국은 요청에 따라 모든 이해당사자가 상반된 이해를 갖는 당사자와 회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반박 주장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회의 제공시 비밀보호의 필요 및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도 이러한 회합에 참석할 의무는 없으며, 회합 불참이 그 당사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해당사자는 또한 정당한 경우 구두로 다른 정보를 제시하는 권리를 갖는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반덤핑협정 어느 규정에서도 조사과정중에 조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부속서 II:1	<i>Guatemala - Cement II</i> (DS156)
조사기간 중 많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중 조사 당국이 정보 수집을 최신화 (update)해야 할 상황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부속서 II:1	<i>Guatemala - Cement II</i> (DS156)
제소자로부터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사실은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	<i>Guatemala - Cement II</i> (DS156)

[사례 연구]

Guatemala - Cement II 사건-조사기간의 연장

동 사건에서 수출국인 멕시코는 과테말라가 예비판정 후 추가적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은 협정 제 6.1 조 및 제 6.2 조를 위반한 것이며 부속서 2의 1 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멕시코는 과테말라가 예비판정을 내린 후 추가적으로 조사 기간을 6 개월 연장하여서 멕시코의 이익을 충분히 방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협정 제 6 조 1 항 및 제 6 조 2 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멕시코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되는 정보는 조사 개시 후 가능한 조속히 명시(specify)되어야 하므로 이는 협정의

부속서 II:1 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멕시코의 주장은 잠정 조치 발동후의 조사기간 연장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부속서 II:1 항을 포함하여 반덤핑협정 어느 규정에서도 조사과정 중에 조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조사기간 중 많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중 조사 당국이 정보 수집을 최신화 (update)해야 할 상황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멕시코는 더 이상의 진전된 이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패널은 멕시코가 과테말라의 반덤핑협정 부속서 II:1 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¹⁷⁹ 따라서 패널은 반덤핑 조사기간 중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패널은 과테말라가 멕시코의 Cruz Azul 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2 주간의 시간적 여유기간을 허용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기회가 충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테말라가 반덤핑협정 제 6 조 1 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평결하였다.¹⁸⁰

그러나 패널은 과테말라가 제소자로부터 조사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하고도 이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반덤핑조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반덤핑협정 제 6 조 2 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결하였다.¹⁸¹ 따라서, 패널은 이해당사자에게 추가로 답변을 작성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했다면 이를 즉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¹⁷⁹ WT/DS156/R Para. 8.177

¹⁸⁰ WT/DS156/R Para. 8.178

¹⁸¹ WT/DS156/R Para. 8.179

5. 비밀정보의 취급 [제 6.5 조]

반덤핑협정은 비밀정보에 대하여 특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협정 제 6.5 조는 조사당국에 제공된 정보가 그 성질상 경쟁자에게 유리하고 제공자에게 불리한 것이거나 혹은 제공자가 비밀취급요청을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할 경우에는 비밀로 취급되어 정보제공자의 특별한 허가 없이는 공개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관련 조문]

6.5 성격상 비밀인 정보(예를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개되어서는 아니된다.¹⁷⁾

¹⁷⁾ 회원국은 특정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한정적인 보호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제6.5조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비밀로 취급해야 하므로 비밀정보 요청이 없었다면 비밀정보로 취급	제6.5조	<i>Guatemala - Cement II</i> (DS156)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하지 않아야 한다.		

[사례 연구]

① *Guatemala - Cement II* 사건

동 사건에서 멕시코 정부는 과테말라 당국이 제조기업의 명시적인 요청은 물론 이에 대한 정당성이 없었는데 에도 제조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비밀 정보로 취급함으로써 자료 접근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제조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에도 과테말라 당국이 이를 비밀 정보로 취급한 것은 협정 제 6.5 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먼저 반덤핑협정 제6.5조는 성격상 비밀인 정보와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패널은 동 사안에 대한 쟁점은 비밀정보 요청이 있었느냐에 초점을 맞춰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제조기업이 제공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는데에도 과테말라 당국이 이를 비밀 정보로 취급한 것은 동 조항 위반이라고 평결하였다.¹⁸²

¹⁸² WT/DS156/R Para. 8.221

6. 조사당국의 자료검증 의무 여부 [제 6.6 조]

반덤핑협정 제 6.6 조는 입수가능한 자료에 대한 상황을 제외하고, 조사당국이 조사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판정의 기초로 되기 위해서는 그 정확성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및 부록 I 은 현장실사시 적용될 기준으로 범핑방지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1983.11.15)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조사당국에게 자료검증 의무에 대한 조항이지만 해당하는 자료의 범위는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관련 조문]

6.6 제 8 항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국은 조사과정에서 이해당사자에 의해 제공되며 조사결과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납득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조사당국은 정보출처의 명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도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 할 수 있으며, 특히 당해 자료가 저명한 언론기관의 기사라면 믿을만한 자료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제6.6조	US - DRAM (DS99)

[사례 연구]

US - DRAM - 조사당국의 자료검증 의무

동 사건에서 한국은 1996 년도 덤핑 결정시 미국이 검증되지 않은 언론 보도나 기관 보고서 등 신청인의 자료에 의존한 것은 협정 제 6.6 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패널은 우선 동 협정 제 6.6 조가 모든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즉, 제 6.6 조는 조사당국이 모든 정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정보 출처의 명성을 고려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패널은 미국이 덤핑결정을 위하여 인용한 신청인 자료는 Goldman Sachs, Lehman Brothers, Wall Street Journal 및 New York Times 와 같이 저명한 언론기관의 자료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한국의 주장이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가 검증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동 사건의 평결에 따르면 조사당국은 정보출처의 명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제출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 할 수 있으며, 특히 당해 자료가 저명한 언론기관의 기사라면 믿을만한 자료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징수

1. 비표본대상업체에 대한 반덤핑관세 [제 9.4 조]

반덤핑협정 제 9.4 조는 당국이 제 6.10 조 규정에 따라 (표본추출등의 방법으로) 검사대상을 제한할 경우, 동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i)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부과된 덤핑마진의 가중평균, 또는 (ii) 덤핑방지관세의 지급의무가 예상되는 정상가격을 기초로 산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가격간의 차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조사당국은 반덤핑협정의 취지에 비추어 제 6.8 조에 언급된 상황에서 결정된 덤핑마진과 영 (0) 및 최소 마진 (*de minimis margin*)은 무시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9.4 당국이 제 6 조제 10 항의 둘째 문장에 따라 검사를 제한하는 경우 검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i)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설정된 덤핑마진의 가중평균 또는,
- (ii) 반덤핑관세의 지불책임이 예상되는 정상가격을 기초로 계산된 경우, 선정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가중평균정상가격과 개별적으로 검사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가격간의 차이, 단, 이 항의 목적상 당국은 영의 마진 및 최소허용마진과

제 6 조제 8 항에 언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해진 덤핑마진은 무시한다. 당국은 제 6 조제 10 항제 2 호에 규정된 대로 검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개별적인 관세 또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제9.4조는 의무적인 조항으로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즉 무시해야 할 덤핑마진의 범위, 제6.8조상의 입수가능한 상황에 기초하여 산출된 마진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부만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산정된 마진도 가중평균시 제외하여야 한다.	제9.4조	US - DRAM (DS99)

[사례 연구]

US - DRAM - Partial BIA 마진의 가중평균마진계산에 포함여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1930 년 관세법 735(c)(5)이 동 조항에 부합하는지가 US - Hot-Rolled Steel 사건에서 다루어졌다.

동 사건의 쟁점이 된 미국의 1930년 관세법 735(c)(5)는 입수가능한 사

실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산정된 덤핑마진만을 무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⁸³ 즉, 일부만 입수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¹⁸⁴ 산정된 마진은 무시하지 않을 수 있다.

동 사건의 경우 미국은 비표본 업체의 덤핑마진을 표본 3개사 덤핑마진의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였고, 표본3개사의 덤핑 마진은 모두 입수 가능한 사실에 일부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미국의 1930년 관세법 735(c)(5) 그 자체(as such)와 이를 적용한(as applied) 미국의 조치는 반덤핑협정 제9.4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9.4조가 의무적인 규정이며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였다. 즉, 무시해야 할 덤핑 마진의 범위, 제6.8조상의 입수가능한 상황에 기초하여 산출된 마진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수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제9.4조에서 말하는 마진이란 덤핑 계산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며, 제6.8조에 언급된 상황은 일부 요소가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덤핑 계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관련 규정은 입수 가능한 사실에 일부 기초한 덤핑 마진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1930년 관세법 735(c)(5) 그 자체로서 (as such) 협정 제9.4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평결하고, 동시에 동 법에 따른 미 상무부의 비표본업체에 대한 덤핑마진도 적용된 (as applied) 조치로서 제 9.4조 위반이라고 평결하였다.

또한, 패널은 나아가 미국은 WTO 협정 발효 이전에 자국 법규를 반덤핑협정에 합치하도록 규정한 반덤핑협정 제 18.4 조와 WTO 설립을 위한 마

¹⁸³ 실무적으로 Total BIA 혹은 Total FA

¹⁸⁴ 실무적으로 Partial BIA 혹은 Partial FA

라케쉬 협정 제 16.4 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결하였다.¹⁸⁵ 상소기구는 이러한 패널의 평결을 모두 지지하였다.¹⁸⁶

2. 반덤핑관세의 소급 [제 10 조]

잠정조치 및 덤핑방지관세는 원칙적으로 잠정조치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결정한 날 이후에 소비를 위해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소급적용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소급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반덤핑협정 제 10 조는 반덤핑관세의 소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 협정 제 10.2 조는 실질적 피해에 대한 최종판정 (피해의 우려 및 산업확립의 실질적인 지연을 이유로 하는 판정은 제외)이 내려진 경우, 또는 피해의 우려로 인한 최종판정 중 '잠정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았더라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잠정조치로부터 확정 덤핑방지관세부과전의 기간에 대하여 반덤핑관세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정 제 10.4 조는 피해가 피해의 우려 또는 실질적인 지연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확정 반덤핑관세는 피해의 위협 또는 실질적인 지연에 대한 결정일 이후에만 부과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잠정 조치 적용기간 중 모든 예치된 현금은 환불되고 모든 담보는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¹⁸⁵ WT/DS184/R Paras.7.72-7.73

¹⁸⁶ WT/DS184/AB/R Paras.109-110

한편 반덤핑관세는 잠정조치가 취해진 기간까지 소급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특별히 잠정조치를 시행하기 90 일전까지 소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협정문 제 10.6 조에서 다루고 있다. 물론 특별한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개시 이전에 수입된 물품에까지 소급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90 일소급요건 중 단기간에 걸친 대량의 덤핑수입과 덤핑수입에 대한 수입자의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조사당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는 많다.

미국은 이를 긴급상황 *critical circumstances* 라 하여 예비판정이전의 수입물품의 쇄도를 방지하고자, 상무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상무부는 원심조사에서 다음의 2 가지 경우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긴급상황을 결정하고 예비판정의 공포 90 일전 이후로 통관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관세청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i) 조사대상물품이 이미 미국 또는 다른 지역에서 반덤핑관세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혹은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상이 수입물품이 덤핑으로 판매되고 있고 이러한 판매가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음이 확실한 경우, (수입자가 비관계이면 예상 덤핑마진이 25%이상인 경우, 수입자가 관계회사이면 예상 덤핑마진이 15%이상이라면 덤핑과 산업피해의 여부를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ii)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통상 조사개시일로부터 3 개월)에 걸쳐 조사대상제품의 집중적인 수입(15%이상의 증가)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10.6 당국이 당해 덤핑수입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정할 경우 확정 반덤핑관세는 잠정조치 적용전 90 일 이내에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다.

(i) 피해를 초래한 덤핑 전력이 있거나 혹은 수출자가 덤핑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덤핑이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수입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다. 또한, (ii) 관련 수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경우 덤핑수입품의 시기 및 물량과 다른 상황(수입품 재고의 급격한 증가와 같은)에 비추어 적용될 확정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를 심각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걸친 대규모 수입품에 의해 피해가 초래된다.

10.7 당국은 조사개시 이후, 제 6 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제 6 항에 규정된 대로 반덤핑관세를 소급 징수하는 데에 필요할 수 있는 평가 또는 산정의 보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을 경우 잠정조치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덤핑 수입이 피해 판정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져야, 반덤핑 관세를 소급부과 할 수 있다.	제10.2조	<i>Mexico - Corn Syrup (DS132)</i>
미국의 관세법 733(e)(1)조, 긴급상황	제10.6조	<i>US - Hot-Rolled Steel</i>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적용에 대한 요건은 협정문에 저촉되지 않는다.	제10.7조	(DS184)

[사례 연구]

① *Mexico - Corn Syrup* 사건: 반덤핑관세 소급부과 및 환급

미국은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을 경우, 반덤핑관세를 소급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덤핑협정 제 10.2 조의 규정상 부과 당국은 소급부과의 결정에 앞서 우선 잠정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덤핑수입이 피해 판정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판단을 먼저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반덤핑 관세를 소급 부과한 멕시코의 조치는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멕시코는 동 결정은 잠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포함한 예비판정과 함께 조사당국의 최종 결정에서 총체적인 분석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을 경우 잠정조치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덤핑 수입이 피해 판정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져야, 반덤핑 관세를 소급부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멕시코의 해석은 이러한 판단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멕시코가 반덤핑협정 제 10.2 조 및 제 10.4 조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¹⁸⁷

¹⁸⁷ WT/DS132/R Paras. 7.190-193

② *US - Hot-Rolled Steel* 사건: 미국 관련 법규의 WTO 협정과의 합치성 여부

일본은 *US - Hot-Rolled Steel* 사건에서 미국의 1930년 관세법 733(e)(1)조가 제 10.6 조 및 제 10.7 조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일본은 미국의 1930년 관세법 733(e)(1)조가 반덤핑협정 제 10.6 조에 규정된 모든 조건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고, 증거 기준도 반덤핑협정 제 10.7 조상의 충분한 증거기준에 못 미치므로 규정 자체가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우선 WTO 규정과 합치되지 않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합치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강행 법규이고, 강행 법규는 그 자체로 회원국의 WTO 의무와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GATT의 관행임을 상기하였다. 즉, 패널은 1930년 관세법 733(e)(1)조가 미국 당국에게 반덤핑협정상의 의무와 저촉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였다.

패널은 긴급상황 기준으로 반덤핑협정 제 10.7 조의 '충분한 증거(sufficient evidence)' 대신 1930년 관세법 733(e)(1)조에서 '의심하고 신뢰할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basis to believe or suspect)' 라고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하지만 미 당국이 1930년 733(e)(1)조상의 근거를 적용하여 온 관행을 보면 충분한 근거로 표현된 기준과 호환 가능하게 적용하여 왔으므로, 동 법이 제 10.7 조의 "충분한 근거" 기준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패널은 1930년 관세법 733(e)(1)조가 제 10.6 조상의 포함된 것과 같은 동일한 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생략이 미 당국이 제 10.6 조상의 요건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즉, 패널은 제 10.6 조에 규정된 '반덤핑 관세의 구제효과를 심각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덤핑 수입'이란 반덤핑 관세 소급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사 당국이 도달하여야 해야 하는 결론이지 충분한 증거가 예비 조사

시점에 제공되어야 하는 조건(condition)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1930 년 관세법 733(e)(1)조가 수입자의 인지가능성에 기초하여 대규모 수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제 10.6 조의 반덤핑 관세의 구제 효과를 심각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수입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패널은 1930 년 관세법 733(e)(1)조는 반덤핑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평결하였다.

3. 미소마진의 기준 적용범위 [9.3 조 및 5.8 조]

반덤핑협정 제 9.3 조는 반덤핑관세의 금액을 산정할 때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덤핑협정 제 5.8 조는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덤핑마진을 최소허용수준 (미소마진)인 것으로 간주하고, 반덤핑조사를 즉각적으로 종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이 제 9.3 조에도 적용되는지 반덤핑협정에서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제소한 US - DRAM 사건에서 미소마진 2%가 반덤핑관세액을 산정하는 제 9.3 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논의되었다.

[관련 조문]

5.8 관계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만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 1 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히 종결된다. 덤핑마진이 최소허용 수준이거나, 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덤핑수입

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된다.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덤핑마진은 최소허용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물량이 수입 회원국 내 동종 상품 수입량의 3%미만을 점유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입회원국 내 동종 상품 수입의 3%미만을 점유하는 국가들이 총체적으로 수입회원국 내 동종 상품 수입물량의 7%를 초과 점유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덤핑수입량은 일반적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9.3 반덤핑관세의 금액은 제 2 조에 따라 정해진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반덤핑협정 제5.8조의 de minimis 의 적용범위는 ‘신청’(application) 및 ‘조사’(investigation)에 한해서 적용이며 협정 9.3조의 반덤핑관세부과 평가절차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제5.8조 제9.3조	US-DRAM (DS99)

[사례 연구]

US - DRAM 사건

동 사건에서 한국은 반덤핑협정 9.3 조에 의한 반덤핑 관세액 산정시 협정 5.8 조의 미소마진 2%를 적용치 않고 미국의 재심규정상 0.5%기준을 적용한 것은 반덤핑협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제 5.8 조의 2 문에서 언급된 조사를 종결하는 '경우'(cases)의 범위는 문맥상 동 조항의 1 문에서 언급된 '신청'(application) 또는 '조사'(investigation)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반덤핑협정 각주 22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조사 결과 그 자체가 확정 반덤핑 관세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였다.¹⁸⁸ 따라서 패널은 제 5.8 조상의 미소마진 기준은 협정 제 9.3 조의 반덤핑관세부과 평가 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평결하였다. 즉, 반덤핑협정 제 5.8 조의 *de minimis*의 적용범위는 '신청'(application) 및 '조사'(investigation)에 한해서 적용이며 협정 9.3 조의 반덤핑관세부과 평가절차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동 사건에서 제시되었다.

¹⁸⁸ 반덤핑협정 각주 22는 반덤핑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산정되었을 경우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의 산정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사결과 그 자체가 당국에 대해 확정 반덤핑관세의 종료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 4 절 반덤핑조치의 지속가능성과 재심

1. 덤핑사실이 없는 경우 반덤핑조치의 지속 가능 여부 [제 11.1 및 11.2 조]

반덤핑관세의 존속기간과 재심에 관한 반덤핑협정 제 11.1 조는 덤핑방지관세가 산업피해로 야기하는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정도 및 기간내에서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덤핑방지관세는 당국의 자의적인 혹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덤핑을 상쇄하는 정도를 넘어서도록 부과되거나 부당하게 장기간 부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반덤핑협정 제 11.2 조는 덤핑방지관세부과이후 조사당국에 의하여 직권으로 혹은 일정한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 재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계속적인 부과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재심을 행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정한 합리적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는 조사당국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당하게 장기간 이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관련 조문]

11.1 반덤핑관세는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정도 내에서 그 효력이 지속된다.

11.2 당국은 정당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관세의 지속적인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21) 이해당사자는 당국에 대해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의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 관세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두가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 항에 따른 검토결과 반덤핑관세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아니하다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즉시 종결된다.

21) 제 9 조제 3 항에 규정된 반덤핑관세의 최종 지불책임에 관한 결정은 그 자체로서 이 조에서 의미하는 검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과거의 조사대상기간중에 존재한 덤핑을 현존하는 덤핑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제1조 제11.1조	<i>EC - Pipe Fittings (DS219)</i>
반덤핑협정이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덤핑결정 determination을 조사대상기간 중에 발생한 사안이 미래에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반덤핑관세 부과이전에 다시 검토할 것을 조사당국에게 강제하	제1조 제11.1조	<i>EC - Pipe Fittings (DS219)</i>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고 있지는 않다		
비록 덤핑이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반 덤핑관세부과 철회 혹은 종결을 강제 하지는 않는다	제11.2조 제11.3조	US - DRAMS (DS99)

[사례 연구]

① EC - Pipe Fittings 사건

동 사건에서 수출국인 브라질은 조사대상기간 중에 자국 통화를 42%정도 평가절하하였다. 이로 인하여 비록 조사대상기간을 통하여 본다면 덤핑마진이 도출되지만, 최종판정시점에서는 통화의 평가절하효과가 전적으로 반영되어 덤핑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브라질은 EC 가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덤핑을 상쇄하는데 필요한 한도를 넘어 반덤핑조치를 유지함으로써 동 협정 제 11.1 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평가절하라는 상황에 대해서 EC 가 반덤핑관세의 지속적인 부과에 대한 재심을 동 조치의 부과와 동시에 직권으로 개시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협정 제 11.2 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⁸⁹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 11.1 조는 회원국에게 별개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적인 덤핑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유효한 일반적인 요건이라고 전제하였다. 결국 패널은 동 분쟁의 쟁

¹⁸⁹ WT/DS219/R, Paras. 7.88, 109, 114.

점을 반덤핑 조사를 통하여 덤핑 사실의 존재를 확인한 조사당국이 확정 반덤핑 관세부과를 결정하기 직전에 덤핑사실 존재에 대한 결정 determination 을 재평가 reassess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로 파악하였다. 패널은 조사라는 것의 속성상 가능한 한 근접한 이전의 특정기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할 수 밖에 없으며, 과거의 조사대상기간 중에 존재한 덤핑을 현존하는 덤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패널은 반덤핑협정이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덤핑결정 determination 을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사안이 미래에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반덤핑관세 부과이전에 다시 검토할 것을 조사당국에게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정하였다.

한편 패널은 브라질의 자국통화평가절하로 인한 반덤핑관세의 지속부과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당국이 스스로 검토해야 하는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이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정리하고 해당 건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패널은 브라질화의 평가절하가 비록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최종적으로 수렴시켰다 할지라도 브라질통화의 불안정성에 비추어 볼 때 EC 가 협정에 위배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② US - DRAMS 사건 - 덤핑부존재시 반덤핑관세의 지속 가능여부

동 사건에서 제소국인 한국은 반덤핑협정 11.2 조에 비추어 재심결과 덤핑이 없을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⁹⁰ 패널은 우선 동 조항에서 “피해”의 계속 또는 재발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려고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으나, “덤핑”의 재발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계속적인’ (continued)라는 의미에는 반덤핑관세가 현재의 덤핑을

¹⁹⁰ WT/DS99/R Para 6.24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덤핑 위해 필요한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제 11.2 조상 산업피해조사에 관하여 현재 덤핑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조사당국은 미래에 피해가 야기될 것인지 조사할 수 있으며, 인과관계의 의미에서 본다면 관계당국은 덤핑의 예상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¹⁹¹ 따라서 패널은 제 11.2 조를 조사당국이 현재 상황의 분석으로만 조사를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없다고 평결하였다.

또한, 패널은 덤핑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반덤핑관세 부과를 철회해야 한다는 한국에 해석에 대하여, 일몰재심을 규정한 제 11.3 조를 검토하였다. 반덤핑협정 제 11.3 조는 모든 확정 반덤핑관세는 부과일로부터 5 년이내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권이나 신청으로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류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 종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패널은 제 11.3 조에서 언급된 '재발' (recurrence)의 의미에서 덤핑이 중단되었으나 반덤핑관세부과 철회로 인하여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한국의 해석이 제 11.3 조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¹⁹¹ WT/DS99/R Para.6.26-29

2. 덤핑행위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제 11.2 조]

반덤핑협정 제 11.2 조는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이후의 재심을 규정하고, 제 11.3 조는 일몰재심을 규정하고 있다. 두 조항은 모두 반덤핑관세에 대한 재심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반덤핑관세의 지속적인 부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과정에서 관세의 철회 또는 변경 시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문]

11.2 당국은 정당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관세의 지속적인 부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²¹⁾ 이해당사자는 당국에 대해 덤핑을 상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세의 부과가 필요한지 여부, 관세가 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러한 두가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 항에 따른 검토결과 반덤핑관세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아니하다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즉시 종결된다.

²¹⁾ 제 9 조제 3 항에 규정된 반덤핑관세의 최종 지불책임에 관한 결정은 그 자체로서 이 조에서 의미하는 검토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11.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정 반덤핑관세는 부과일(또는 제 2 항에 따른 검토가 덤핑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면 제 2 항에 의한 가장 최근

의 검토일 또는 이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종결된다. 다만, 당국이 동 일자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일자 이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 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²²⁾ 이러한 검토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세는 유효할 수 있다.

²²⁾ 반덤핑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사정되었을 경우 제 9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가장 최근의 산정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사결과 그 자체가 당국에 대해 확정 반덤핑관세의 종료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협정문의 긍정표현을 함부로 부정표현으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은 자칫 협정의 원래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 Likely vs Not Likely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제11.2조	US - DRAMS (DS99)

[사례 연구]

① US - DRAMS 사건

동 사건에서 제소국인 한국은 미상무부의 규정이 덤핑행위를 할 것 같은 가능성 ('likely') 기준이 아닌 덤핑행위를 하지 않을 것 같은 'not likely'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반덤핑협정과 불일치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우선 제 11.2 조가 산업피해 관계에 있어서 'likely' (덤핑행위를 할 것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패널은 'likely'와 'not likely'는 동일한 관점이 아닌 바, 덤핑할 것 같지 않다는 기준을 덤핑할 것 같다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즉,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¹⁹²

또한, 패널은 제 11.2 조가 반덤핑관세를 계속 부과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덤핑에도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패널은 'not likely'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미 상무부의 353.25(a)(ii)는 그 자체로 협정 제 11.2 조에 위배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재심도 협정 위반이라고 평결하였다.¹⁹³

¹⁹² WT/DS99/R Paras. 6.45-47

¹⁹³ WT/DS99/R Paras. 6.50-55

3. 일몰재심 관련 쟁점

반덤핑협정 제 11.3 조는 일몰재심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모든 덤핑방지관세는 부과일로부터 5 년이내에 종결된다고 되어있다. 다만 행정재심에서 덤핑과 피해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¹⁹⁴ 이것이 이른바 자동소멸 sunset clause 인 것이다. 그러나 덤핑방지관세 종료일 이전에 조사당국이 자체적으로 혹은 종결일 이전의 합리적인 기간내에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신한 자의 정당한 요청에 따라 개시된 재심에서 관세부과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적 또는 재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사당국이 결정하게 되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종결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해당 재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계속하여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일몰재심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었는데,

- 일몰재심에서의 증거수준
- 일몰재심의 조치단위
- 일몰재심에서의 명시적, 묵시적 포기 간주조항
- 일몰재심과 미소마진

등이 분쟁사안으로 다루어졌다.

¹⁹⁴ 미국의 반덤핑관세의 평가를 위한 연례 행정재심은 일반적으로 덤핑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지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관련 규정]

11.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정 반덤핑관세는 부과일(또는 제 2 항에 따른 검토가 덤핑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면 제 2 항에 의한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이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종결된다. 다만, 당국이 동 일자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일자 이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 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²²⁾ 이러한 검토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세는 유효할 수 있다.

²²⁾ 반덤핑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사정되었을 경우 제 9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가장 최근의 산정과정에서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사결과 그 자체가 당국에 대해 확정 반덤핑관세의 종료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제5.6조는 원심에서의 조사개시를 위한 증거기준으로 제11.3조상의 재심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원심의 증거기준은 재심의 증거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	제11.3조 제5.6조	<i>US - 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DS244)</i>
제11.3조에 제6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몰재심은 개별 수출자	제11.3조 제6.10조	<i>US - 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i>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단위가 아니라 반덤핑조치단위order-wide 로 이루어질 수 있다		<i>Review (DS244)</i>
조사기관은 명시적 포기의 경우에도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결론에 의해 뒷받침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조사기관의 의무는 계속된다.	제11.2조 제11.3조	<i>US - OCTG Sunset Review (DS268)</i>
수출자가 비록 불완전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조사당국은 이를 묵시적 포기로 간주할 수 없다	제6.1조	<i>US - OCTG Sunset Review (DS268)</i>
수출자가 답변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당국은 이를 묵시적 포기로 간주할 수 있다.	제6.2조	<i>US - OCTG Sunset Review (DS268)</i>
반덤핑협정 제5.8조상의 2% 미소마진 기준이 일몰재심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제5.8조	<i>US - 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DS244)</i>

[사례 연구]

아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몰재심과 관련한 분쟁의 대부분이 미국의 일몰재심정책이나 규정과 관련하여 일어났다.

US - 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 일몰재심에서의 증거수준

[11.3 조 및 5.6 조]

US - 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사건에서 수출국인 일본은 반덤핑협정 제 5.6 조상의 원심 조사의 기준이 반덤핑협정 제 11.3 조의 재심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덤핑협정 제 5.6 조는 직권으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덤핑, 피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미국 일몰재심법 Section 751(c)(1) 및 (2)조와 동법 규정 351.218(a) 및 (c)(1)조가 충분한 증거 없이 미 상무부의 자동적인 재심 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⁹⁵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 11.3 조는 명시적으로 또는 문맥상 일몰재심의 개시에 적용되는 증거기준에 대하여 제시하고는 있지 아니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패널은 동 협정 제 5.6 조는 원심에서의 조사개시를 위한 증거기준으로 제 11.3 조상의 재심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원심의 증거기준은 재심의 증거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평결하였다.¹⁹⁶

US - 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 일몰재심의 조치단위 [11.3 조 및 6.10 조]

¹⁹⁵ WT/DS244/R, United States- Sunset Review of Anti-Dumping Duties on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from Japan, Para. 7.21.

¹⁹⁶ WT/DS244/R, Paras. 7.28-39.

US - 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사건에서 수출국인 일본은 미국 조사당국이 일몰재심에서 각각의 알려진 개별수출자가 아닌 오더 order 단위에 기반하여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미국의 일몰재심에 관한 정책공고 policy bulletin¹⁹⁷에 기반한 (order-wide) 결정은 반덤핑협정 제 6.10 조 및 제 11.3 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⁹⁸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 6.10 조가 원칙적으로 조사당국이 수출자 회사에 기반한 덤핑마진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인 반면, 제 11.3 조는 덤핑관세의 철회시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 11.3 조에 제 6 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결하였다.¹⁹⁹ 이에 대하여 상소기구 역시 가능성 결정이 반덤핑 조치 단위로 (order-wide)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일몰재심에 관한 정책공고 policy bulletin 의 section II.A.2 에 규정된 요건이 반덤핑협정 제 6.10 조 및 제 11.3 조와 일치하며, 따라서 미상무부의 결정이 반덤핑협정과 일치하다고 평결하였다.²⁰⁰

US - OCTG Sunset Review - 명시적•묵시적 포기 간주 조항의 적법성 여부 [제 11.3 조]

¹⁹⁷ US Department of Commerce-Import Administrations, Policy Bulletin; Topic: Policies Regarding the Conduct of Five-year("Sunset") Reviews; [Federal Register: April 16, 1998 (Volume 63, Number 73), page 18871-18877]

¹⁹⁸ WT/DS244/R, Para. 7.192.

¹⁹⁹ WT/DS244/R, Paras. 7.201-208.

²⁰⁰ WT/DS244/AB, Paras. 156-162.

명시적 포기란 조사당사자가 포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일몰재심 전과정에 걸쳐 아예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을 의미하며, 묵시적 포기란 답변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완전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US - OCTG Sunset Reviews 사건에서 제소국인 아르헨티나는 미국의 명시적 포기 조항의 경우 당국이 정당한 검토 없이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게 하므로 협정 11.3 조에 위반되며, 묵시적 포기 조항의 경우 수출자에게 부여된 증거 제출과 이익 방어 기회 제한하여 협정 6.1 조 및 6.2 조에 위반되므로 관련 조항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¹

결론적으로 패널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명시적 포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결론에 의해 뒷받침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할 조사당국의 의무는 계속되며, 조사당국은 수출자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 없이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순히 추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²⁰²

또한 상소기구는 불완전한 답변서 제출의 경우에 이것을 포기로 간주하는 것은 제 6.1 조 및 6.2 조에 보장된 절차적 권리가 박탈된 것이라는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답변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상소기구는 패널의 입장을 번복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잘못된 이해당사자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당사자의 권리가 '부인(denied)'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²⁰³ 패널의 평결을 거부하였다. 즉, 상소기구는 답변서를 아

²⁰¹ WT/DS268/R Para 3.1

²⁰² WT/DS268/R Para 7.99

²⁰³ WT/DS268/AB/R Para 252

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당국이 이를 묵시적 포기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US - 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 미소마진 규정의 일몰재심에
의 준용여부 [제 5.8 조 및 제 11.3 조]

반덤핑협정 제 5.8 조는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마진이 2% 미만인 경우 이러한 덤핑마진을 최소허용수준 (미소마진)인 것으로 간주하고, 반덤핑조사를 즉각적으로 종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소마진 기준이 일몰재심을 규정한 제 11.3 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US - 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사건에서 다루어졌다.

동 사건에서 일본은 미국 일몰재심 규정 section 351.106(c)조에서 미 상무부가 미소마진의 기준을 0.5%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덤핑협정 제 5.8 조 및 제 11.3 조 위반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은 제 5.8 조에 규정된 2% 미소마진 기준이 일몰재심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⁴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 11.3 조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문맥상 일몰재심에서의 덤핑의 지속 및 재발가능성 결정하기 위한 미소마진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동 협정 제 5.8 조가 일몰재심에 적용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반면, 일본은 제 5.8 조의 협상기록에 의거하여 협상자들이 반덤핑협정 제 5.8 조의 미소마진 기준이 일몰재심에 적용되도록 의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조약법 해석원칙에 따라 이를 거

²⁰⁴ WT/DS244/R, Para. 7.58.

부하였다.²⁰⁵ 따라서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 5.8 조상의 2% 미소마진 기준이
일몰재심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결하였다.²⁰⁶

²⁰⁵ WT/DS244/R, Para. 7.83-84.

²⁰⁶ WT/DS244/R, Para. 7.85.

제 5 절 개별덤핑마진 불산정 사유의 적법성 여부

[제 6.10 조]

반덤핑협정은 제 6.10 조는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당국은 조사대상 물품과 관련된 개개의 알고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각각의 덤핑마진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수 또는 관련물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러한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국은 대상자 선정시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추출 기법을 사용하여, 이해당사자 또는 물품의 수를 제한하여 검사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조사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이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하여 검사할 수 있다.

[관련 조문]

6.10 당국은 일반적으로 조사대상 상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한다.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관련 상품의 유형의 수가 너무 많아 이러한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당국은 그 선정시 당국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검사를 이해당사자 또는 상품의 합리적인 수로 제한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조사 될 수 있는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판정의 핵심]

판정사항의 요약	관련조문	관련분쟁사건
단지 수출자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하였거나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았거나 또는 사용 불가능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로 개별 덤핑 마진의 산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6.10조	<i>Argentina - Ceramic Tiles (DS189)</i> <i>Argentina - Poultry (DS241)</i>

[사례 연구]

① *Argentina - Ceramic Tiles* 사건

동 사건에서 수출국인 이탈리아는 아르헨티나가 이탈리아 4 개 업체에 대해 동일한 덤핑 마진을 적용한 것은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산정하라는 협정 제 6.10 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⁰⁷ 아르헨티나는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이 없었고 일부 업체는 판매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개별 마진 산정이 어려웠다고 항변하였다.

패널은 우선 제 6.10 조에서 수출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 마진을 산정하라는 원칙은 표본 기업 개개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며, 조사 대상 기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이러한 일반 원칙에서의 면제를 정당화 하

²⁰⁷ WT/DS189/R Para. 6.82

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개별마진 산정 불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아르헨티나의 최종 판정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르헨티나가 제 6.10 조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²⁰⁸

또한, 패널은 아르헨티나가 최종 판정문에 개별마진 산정 불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공평하지 못한 평가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²⁰⁹

② *Argentina - Poultry* 사건

동 사건에서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조사당국이 일부 수출자들 (Caterinense, Frangosul)에 대하여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²¹⁰

이에 대하여 패널은 *Argentina - Ceramic Tiles* 사건²¹¹을 인용하면서, 반덤핑협정 제 2 조와 제 6.8 조는 제출된 정보가 신뢰할 수 없거나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덤핑마진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당국이 특정한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완성하도록 허락한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사실에 근거하여 각 수출자의 개별 덤핑마진을 결정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패널은 반덤핑협정 제 6.10 조가 조사당국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이며 순수하게 절차적인 성격으로서 알려진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게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석하

²⁰⁸ WT/DS189/R Para. 6.101

²⁰⁹ WT/DS189/R Para. 6.92

²¹⁰ WT/DS241/R, Para. 7.209.

²¹¹ WT/DS189/R, *Argentina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Imports of Ceramic Floor Tiles from Italy*, footnote 36.

였다.²¹² 따라서 패널은 단지 수출자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하였거나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았거나 또는 사용 불가능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로 개별 덤핑 마진의 산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평결하였다.

²¹² WT/DS241/R, Paras. 7.212-217.

제 5 장 한국의 반덤핑법과 WTO 판정

제 1 절 한국의 반덤핑법과 WTO 반덤핑협정

한국의 반덤핑제도는 1963년 관세법 제7조 2에 ‘부당염매방지관세’로 도입되었고, 이는 1983년 덤핑방지관세로 명칭이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1985년까지도 덤핑방지관세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반덤핑제도를 도입한 계기는 1986년 2월 24일 GATT의 반덤핑코드에 가입하면서이다.²¹³ 한국은 가입과 동시에 동 협정에 따라 관세법 및 동 법 시행령을 개정·보완하였다. 그 결과 1986년 일본 및 대만산 D.C.P와 아세트알데히드 그리고 홍콩산 알긴산소다의 3개 품목에 대하여 최초로 반덤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서 WTO 설립협정이 발효되고, 따라서 부속서에 포함된 반덤핑협정도 발효하게 되었다. 한국은 GATT 계약당사국으로 WTO 에 가입되면서 자동적으로 반덤핑협정에 가입되었다. 한국은 동 협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반덤핑관세법을 개정·보완하였다

한국의 반덤핑제도는 무역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관세법 제51조에서 56조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원칙과 잠정조치, 가격약속, 소급적용,

²¹³ 덤핑, 반덤핑 - 반덤핑관세제도의 이용 및 대응, 산업자원부, 2001.1

그리고 재심사 및 일몰규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가격결정과 피해조사 그리고 가격약속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방식 등 한국의 반덤핑법의 주요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도 반덤핑관세 부과에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의 반덤핑법은 대체로 반덤핑협정에 준한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반덤핑법제도는 미국이나 EC처럼 기존에 존재하던 제도를 반덤핑협정에 일치시켰다기 보다는 애당초부터 반덤핑협정에 준하여 제정되었으므로 규정상에서 반덤핑협정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항은 없다고 보여진다.

제 2 절 한국의 반덤핑법과 WTO 판정

지금까지 한국이 WTO에 피소된 사건에서 반덤핑조치로 피소되어 패널판정까지 받은 사례는 *Korea - Certain Paper* 사건이 처음이다. 패널은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검토하고 19개 세부쟁점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사가 반덤핑협정과 일치하였는지 또는 불일치 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²¹⁴ 대부분의 주요 쟁점에서는 무역위원회의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에 대한 반덤핑조사 및 반덤핑결정이 반덤핑협정과 일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무역구제제도인 반덤핑제도가 반덤핑협정과 일치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6개 쟁점에서 패널의 불일치 결정이 내렸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패널이 동 사건에서 위반 결정을 내린 세부쟁점들은 한국의 반덤핑법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조사기관의 자료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증거에 대한 쟁점들이 문제되었다. 구체적으로 패널은 덤핑마진 산정시 구성가격을 산정하면서 제2차적인 출처의 자료를 사용할 때 특별히 신중하였는지, 덤핑과 관련한 현지실사의 결과에 대하여 적절하게 공개하였는지, 피해결정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피해요소들을 적절하게 평가하였는지, 그리고 조사개시를 요청하는 신청서에 기재된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특히 패널은 동 사건에서 조사기관이 자료를 사용하는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비공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도록 결정하였다.

²¹⁴ 소송경제 등의 이유로 배제된 쟁점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동 결정에서는 자료 사용에 대한 조사기관의 결정을 문제삼지는 아니하였고, 사용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비공개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고 명시적으로 이해당사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서 불일치 결정이 내려졌다.

주요 쟁점에서 한국이 승소하였다는 것은 그만큼의 한국 반덤핑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조사관행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불일치하다고 결정을 받은 부분들, 즉 자료의 공개와 합리적인 설명의 제공, 피해분석 등의 부분에서는 조사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고 볼 것이다.

한편 본건은 이행패널까지 이어졌다.

이행패널 보고서의 결과, 한국은 두 가지 쟁점에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평결을 받았는데, 두 가지 모두 원심의 패널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이며, 증거의 사용에 대한 내용들이다.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성가격을 산정하면서 2차 출처로부터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한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평결이 다시금 논의되었다. 무역위원회는 이행과정에서 제출된 정보대신 다른 자료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특별한 신중'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평결을 받았다.

또한, 피해를 재결정하면서 원심에서의 패널 평결에 대하여 산업피해 관련지표를 모두 평가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공고하면서도 평가전 의견을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행 평결을 받았다.

이와 같이 이행절차에서도 반덤핑관련 법 또는 규정보다는 증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본 장의 첫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반덤핑관련 법제도는 반덤핑협정에 기반하고 있고, 사실상 반덤핑협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법제도에 관한 분쟁보다는 한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조사절차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만이 반덤핑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비되어 있을 뿐이며,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에게 구체적인 조사절차나 증거사용은 조사기관의 역량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사과정이나 구체적인 판단 혹은 증거사용이 균일하지 못한 편으로 매 케이스에서 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상세한 규정의 부재가 분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조사당국의 인지가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조사당국의 적극적인 사실판단을 제한하고 방해할 수도 있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무역위원회의 전문화와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 6 장 반덤핑관련 향후 DDA 논의점

제 1 절 개관

반덤핑협정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채택된 GATT1994 VI조 이행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을 지칭한다. 동 협정은 기존 GATT 1947 체제에서 상계조치와 함께 반덤핑조치를 규정한 GATT VI에서 발전한 협정이다. 반덤핑조치는 케네디 라운드와 도쿄라운드를 거치면서 구체화되었으나 전체 계약국이 합의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공통으로 적용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치면서 일괄타결협상의 일부로서 반덤핑협정이 채택되었고, 이는 WTO 출범시 공통적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이르러 반덤핑협정이 구체화되었으나 여전히 그 규정이 모호하거나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 조사당국이 자의적인 해석을 할 여지가 있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간 반덤핑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이 논의되었고, 반덤핑협정의 개정은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에서 출범할 뉴라운드 협상의 일부로서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뉴라운드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반덤핑협정에 대한 협상도 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

나 2001년 11월 도하 카타르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 의제 (Doha Development Agenda: DDA)가 합의되었다. 동 DDA에 반덤핑협 정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2002년부터 반덤핑협정에 개정에 대한 협상이 개시되었다.

제 2 절 DDA 에서의 반덤핑규범 개정에 대한 협상 개시 및 그 동향

1. 도하각료선언 반덤핑규범관련 위임사항

1) 도하각료선언에서의 반덤핑관련 위임사항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던 제 4 차 각료회의는 회의일정을 연장하면서 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WTO 회원국들은 2001 년 11 월 14 일 각료선언을 채택하는데 동의하였다. 동 각료선언은 농업, 비농산품, 반덤핑, 환경 등의 협상의제를 설정하는 작업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괄수락의 방식으로 2005 년 1 월 1 일 이전에 협상을 종료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각료회의 과정에서 일본, 칠레, 한국 등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반덤핑규범의 개정을 협상의제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계속해서 반대하였다. 반덤핑과 보조금과 관련한 WTO 규범 협상은 2001 년 11 월 12 일 미국이 협상 가능성을 보이면서 각료회의 마지막 날까지 논의가 계속되었고, 결국 미국의 주장대로 각료선언문에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 목적은 유지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반덤핑규범의 개정이 포함된 규범협상은 작업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도하각료선언의 28 항에 제시되어 있다. 도하각료선언 제 28 항의 주요 내용은 ①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의 규범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 개시하고, ②동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 목적은 유지해야하고, ③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고려하면서, ④수산 보조금의

WTO 관련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것도 목표로 하며, ⑤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되는 WTO 조항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해야한다고 규정하였다.²¹⁵ 규범분야의 협상은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으로 나누어지고 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함께 수산보조금이 협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반덤핑협정에 대한 협상은 반덤핑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 목적을 유지하고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고려하면서 반덤핑협정의 규범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협상이 개시되는 것이다. 또한, 28 항은 규범분야 협상방법으로 회원국은 무역왜곡적 관행에 대한 원칙을 포함한 조항을 가려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를 명확히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2 단계 협상방법을 채택하였다.

2) 이행문제에서의 반덤핑관련 부분

WTO 회원국은 각료선언과는 별도로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WTO 협정의 이행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행관련문제및관심사항에대한결정’(Implementation - Related Issues and Concerns : Decision) 을 채택하였다.

이행문제는 시애틀 각료회의 실패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될 정도로 뉴라운드 출범 준비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도하각료회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이견으로 뉴라운드 출범이 좌절되었던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의 전처를 따르지 않기위해 개발도상국을 고려하였고 그 결과 이행관련문제및관심사항에대한결정 (이하 ‘이행결정’이라함)이 채택되었다.²¹⁶

²¹⁵ WTO 문서, WT/MIN(01)/DEC/1, 2001.12.20

²¹⁶ WTO, WT/MIN(01)/1, 2001년 11월 14일 채택, 2001.11.20.

동 이행문제 관련 결정문에는 개발도상국들이 기존의 WTO 협정의 준수를 돕고, 기존 협정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WTO 회원국들이 취할 약 50 가지의 행동방안이 합의되었는데 농업, 위생 및 검역조치, 섬유 및 의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무역관련투자조치, 반덤핑, 관세평가, 원산지규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대한 WTO 협정과 관련된 행동방안이 규정되어 있다.

동 이행결정은 도하각료선언에서 작업계획의 일부로 통합되었고,²¹⁷ 따라서 이행결정의 반덤핑관련 부분도 DDA 협정의 통합된 일부가 되었다. 동 이행결정에서는 반덤핑협정과 관련하여 4 개 사항을 다루고 있다.

2. 반덤핑규범의 개정에 대한 협상방법 및 동향

1) 반덤핑규범의 개정에 대한 협상방법

이행결정에서 반덤핑협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반덤핑 조사에서 부정적 판정이 내려진 후 365 일 이내에 동일 회원국의 동일 물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가 신청된 경우, 동 신청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조사개시 검토에서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점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진행시키지 않을 것에 합의, ② 반덤핑협정 15 조 (반덤핑조치 적용에 있어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의무규정을 인식하지만 반덤핑위원회는 그 적용 방법의 명확화 문제에 대하여

²¹⁷ 도하각료선언의 12항은 이행결정이 작업계획의 통합된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하여 동 규정의 조작화 방법에 대한 적절한 권고를 12 개월 내에 작성, ③ 반덤핑협정 5.8 조 (조사 종결)가 덤핑수입품의 물량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동 규정의 이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반덤핑위원회에 기간 적용에 있어 가능한 최대한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목적 하에 동 문제를 연구하여 권고를 12 개월 내에 작성할 것을 지시, ④ 반덤핑위원회에 반덤핑협정 18.6 조 (종결조항)에 따른 동 협정의 연례검토의 개선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12 개월 내에 일반이사회에 그 권고안을 보고할 것을 지시.

각료선언에서는 구체적 협상대상으로 규정된 분야와 관련된 이행문제는 협상에서 처리하며, 그 이외 분야의 이행문제는 관련 WTO 기관에서 우선사항으로 처리될 것이며, 그 결과를 2002 년 말까지 무역협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2) 반덤핑규범의 개정에 대한 협상경과

반덤핑을 포함한 규범협상은 제5차 각료회의때 규범협상그룹의장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진행된 협상을 검토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규범협상 그룹은 2002년 초부터 2003년 11월 제5차 각료회의전까지 11차례의 공식회의를 개최하였다. 규범협상그룹의 첫 공식회의에서는 실질적인 논의내용은 없었으며 향후 동 그룹의 운영방안과 회의일정이 결정되었다.²¹⁸ 이후 10차례에 걸친 공식회의가 개최되었고, 당해 회의에서는 반덤핑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가 주로 논의되었다. 반덤핑과 관련하여 규범협상그룹에 제출된 작업문서는 2007년 9월 현재 모두 114건으로 반덤핑협정에 대한 개

²¹⁸ WTO, TN/RL/M/1, 2002.3.11.

정을 위한 논의 쟁점들이 제시되었다.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대한 협상은 제 5 차 각료회의까지 지속되었으나, 동 각료회의에서는 회원국간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의가 결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WTO 일반이사회는 2004 년 7 월 도하개발의제의 작업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2004 년 8 월 1 일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한 소위 '7 월 패키지' (July Package)를 일반이사회 결정으로 채택하였다. '7 월 패키지'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지속한다는 일종의 다짐으로써 가장 문제시되던 농업분야에 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반덤핑을 포함한 규범 분야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한다는 일반적인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다. 이듬해 홍콩에서 개최된 제 6 차 각료회의에서도 별다른 합의없이 단지 2005 년 1 월 1 일의 기한을 2006 년으로 협상기한을 연장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6 년 7 월 개최된 일반이사회는 협상을 정지하자는 WTO 사무총장 Pascal Lamy 의 권고를 받아들였고, 이후로 지금까지 비공식적인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행상황이 없는 상황이다.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이행문제를 규범협상그룹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하여 회원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규범협상그룹 의장은 이행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인도와 브라질이 이행관련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행결과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지는 아니하였다.

이행문제와 관련하여 반덤핑과 관련된 첫 번째 항은 덤핑에 대한 부정판정이 내려진 후 365일 이내에 동일 회원국의 동일 물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가 신청된 경우, 동 신청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사개시 검토에서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점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진행시키지 않을 것에 합의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사는 소위 back-to-back investigation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부분에서는 합의되었고 위임사항이 아니므로 반덤핑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아니하였다.

이행문제에서 반덤핑협정 5.8 조와 18.6 조에 관한 사항은 반덤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이 채택되었으나 15 조와 관련하여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는 일반이사회에 보고되었다.²¹⁹

반덤핑협정 15 조는 반덤핑조치 적용에 있어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의무규정이다. 이행결정은 동 조항의 그 적용방법을 명확화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동 규정이 기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권고안을 12 개월 내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반덤핑위원회 의장은 동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은 공통된 논의 기반조차 찾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덤핑협정 18.6 조에 규정된 연례보고서의 개선방안에 대한 권고안이 2002년 11월 27일에 채택되었다. 동 권고안에 따르면 연례보고서에는 반덤핑조치 요약 (Summary of Anti-Dumping Actions)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원국이 보고한 조사개시 회수에 철회한 회수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례보고서에는 각 회원국이 반기보고서에 보고한 잠정 및 최종 조치의 건수와 사무국에 통고한 건수가 비교가능한 표(chart)가 포함되어야 하고 선진국은 반기보고서에 15 조의 의무가 수행된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덤핑수입품의 물량을 결정할 때 반덤핑협정 5.8 조는 명시적으로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반덤핑위원회는 (i)덤핑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의 기간, (ii)조사개시를 위해 자료가 이용가능하기 이전의 가장 최근의 연속적인 12 개월, (iii)반덤핑조사 청원과 조사개시 사이의 기간이 90 일을 넘지 아니할

²¹⁹ WTO, G/ADP/M/23, 2003.3.21.

때 이용가능한 자료와 청원의 제기일 전의 연속적인 최근 12 개월, 3 가지 기간 중에서 각 회원국이 선택하여 반덤핑위원회에 통고하도록 하였고 통고가 없을 경우 이에 대하여 통지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권고는 2002 년 11 월 27 일 반덤핑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²²⁰

²²⁰ WTO, G/ADP/10, 2002년 11월 27일 채택, 2002.11.29.

제3절 반덤핑조사관련 주요 제안내용

1. 덤핑결정 (제 2 조)

1) 용어의 일관적인 사용

① 동종물품 [제2.6조]

반덤핑협정 제2.6조에서 동종물품은 동일한 물품 즉, 조사대상 물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물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경우 비록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으나 조사대상 물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물품을 의미한다.

동종물품과 관련하여 호주는 덤핑결정, 피해결정 및 국내산업의 정의와 관련하여 동종물품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²²¹ 미국은 호주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아울러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상계조치협정에서의 동종물품의 정의를 검토하고, 동종물품의 일관된 용어 사용을 제안하였다.²²²

② 조사대상물품

반덤핑조사 초기 단계에서 결정되는 조사대상 물품의 정의는 조사 전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조사대상물품의 범위가 동종물품의 범위를 정하고,

²²¹ TN/RL/W/91, "Like Product" Within the Meaning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Submission by Australia, 2003.5.1.

²²² TN/RL/W/130, Further Issues Identified Under the Anti-Dumping and Subsidies Agreements for Discussion by the Negotiating Group on Rules.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2003.6.20.

국내산업을 구성하는 국내생산자와 피해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덤핑협정에는 조사대상 물품의 정의가 없어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매시기, 형태에 있어 상이한 물품들을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Friends Group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를 결정하는 좀더 합리적인 규율된 기본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조사대상물품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²²³ Friends Group은 동 방법은 조사당국이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모델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적용방법의 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공된 방법이 적용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소위 model matching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²²⁴ 또한, 중국은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²⁵

2) 정상가격의 결정

① 내수물량의 충분성 기준 [각주 2]

반덤핑협정 제2.2조의 각주2에서는 수출국의 내수시장에서의 동종물품의 판매물량이 조사대상물품의 수입국에 대한 수입물량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한 내수시장의 판매는 정상가격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²²³ TN/RL/W/7,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Paper by Brazil, 2002.4.26.; TN/RL/W/10, Second Contribution to Discussion of the Negotiating Group on Rules on Anti-dumping Measures. Paper by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Israel; Japan; Korea; Norway;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Singapore; Switzerland and Thailand, 2002.6.28.

²²⁴ TN/RL/W/158

²²⁵ TN/RL/W/66, Proposa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Negotiation on Anti-Dumping. Communication from China, 2003.3.6.

있는 충분한 물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수물량의 충분성을 검토하기위한 5%의 기준을 적용함에있어서 모델별로 5%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조사대상물품 전체에 대하여 5%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Friends Group은 5% 테스트를 정상적인 판매여부를 확인한 후 실시하고, 모델별이 아닌 조사대상물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²²⁶ 또한, Friends Group은 충분한 물량이 조사개시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고 지적하고, 반덤핑협정 각주 2의 충분성 검토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내시장' (domestic market)을 정의하도록 제안하였다.²²⁷

② 특별한 시장 상황 [제2.2조]

반덤핑협정 제2.2조는 수출국 국내시장의 특별한 시장상황으로 인하여 덤핑마진 산정을 위한 적절한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구성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시장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중국은 조사당국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시,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정상가격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한 시장상황을 정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²⁸ 반면, Friends Group은 특별한 시장상황이 정의되지 아니하였고 거의 어떠한 상황에도 적용되도록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반덤핑협정 제2.2조에서 특정상 상황을 삭제할 것을

²²⁶ TN/RL/W/29, Third Contribution to Discussion of the Negotiating Group on Rules on Anti-dumping Measures. Paper by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Japan; Korea; Norway;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Singapore; Switzerland; Thailand and Turkey, 2002.11.15.

²²⁷ TN/RL/W/150, Negotiating Group on Rules - Proposals on Determination of Normal Value - Paper from Chile;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Japan; Korea, Republic of[...]Kinmen and Matsu; and Thailand, 2004.4.16.

²²⁸ TN/RL/W/66.

제안하였다.²²⁹

③ 정상가격 결정시 관계회사간 거래가격의 적정성

반덤핑협정 제2.3조는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수입품이 독립된 구매자에게 재판매된 가격으로 수출가격의 기초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주11은 생산자가 수출입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간략한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협정은 관계회사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고, 관계회사간 내수판매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나 관계회사가 공급자가 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정상가격이 부당하게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회원국이 관계사 (affiliated parties)에 여러 회원국이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Friends Group은 정상가격의 결정시 관계회사가 포함된 거래의 문제를 논의하고 내수판매품의 원가를 산정할 때 관계회사간 거래를 정상가격에 포함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²³⁰ 또한 최근 제출한 제안서를 통하여 관계사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반덤핑협정 제2.3조상의 제휴 (association) 대신 관계당사자 (affiliated party)의 정의로 대체하는 방안과 관계사가 포함된 경우의 여러 계산방법을 제안하였다.²³¹

호주는 기본적으로 장상가격과 관련하여 관계회사의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였고,²³² 중국은 반덤핑협정에서 이를 다루는 분명한 지

²²⁹ TN/RL/W/150.

²³⁰ TN/RL/W/10.

²³¹ TN/RL/W/146, Negotiating Group on Rules - Proposal on Issues related to Affiliated Parties - Paper from Brazil;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Japan; Korea;[...]n and Matsu; and Thailand. 2004.3.11

²³² TN/RL/W/86, General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of the Negotiating Group on Rules on the Anti-Dumping Agreement. Submission from Australia, 2003.4.30.

침(guidance)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³³ 한편, 미국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모른 거래에 대하여 조사당국이 두 회사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유관계가 없고 법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당해 회사가 관계회사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통제를 하거나 또는 두 회사가 제휴하여 행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반덤핑협정에서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³⁴

④ 정상적 거래에서의 판매 (Profitability Test) [제2.1.1조]

반덤핑협정 제2.2.1조는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이나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이 생산단가에 판매비와 일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이하인 경우, 조사당국이 이러한 판매가 상당기간, 상당량 지속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비용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판매가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Friends Group은 합리적인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덤핑을 조사기간 동안 판매가격이 모든 원가를 회복한 경우에는 조사당국이 원가 미만의 판매를 무시할 수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기간 (reasonable period of time)을 정의할 것을 주장하였다.²³⁵ 또한, Friends Group은 샘플의 판매, 고용인에 대한 판매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거래의 판매로 볼 수 있도록 동 조항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안하고, 원가미만의 판매에 대하여도 동종물품의 총 판매가 총 생산비보다 높을 경우 정상적인 거래

²³³ TN/RL/W/66.

²³⁴ TN/RL/W/130.

²³⁵ TN/RL/W/6, Anti-dumping: Illustrative Major Issues. Paper by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Israel; Japan; Korea; Mexico; Norway; Singapore; Switzerland; Thailand and Turkey.

에서의 판매로 보도록 동 조항을 개정하고 반덤핑협정 각주 4와 5를 삭제하도록 제안하였다.²³⁶

브라질은 이행과 관련한 제안서를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판매를 판단하는 방법을 명확히하고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²³⁷ 캐나다는 각 회원국이 통상적인 거래에서의 판매에 대한 기준을 운용해온 방법을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건이나 상황들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²³⁸

⑤ 원가자료 (cost data)의 사용 [제2.1.1.1조]

반덤핑협정 제2.2.1.1조는 원가가 통상적으로 수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조사대상물품의 생산과 판매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작성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회계기록에 근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원가자료를 수락하고 거부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지 않아 조사당국이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호주는 원가자료의 사용에 대한 조사당국의 재량 문제를 검토하도록 제안하였고,²³⁹ Friends Group은 조사당국이 생산자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원가자료를 수락하는 상황을 정의하도록 제안하였다.²⁴⁰

⑥ 비용 할당 [제2.1.1.1조]

원가비용과 관련하여 반덤핑협정 제2.2.1.1조는 조사기간동안 비용의 적절한 할당 (배분)에 관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제시된 증거를 포함

²³⁶ TN/RL/W/150.

²³⁷ TN/RL/W/7.

²³⁸ TN/RL/W/47, Submission from Canada Respecting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the Anti-Dumping Agreement). Communication from Canada. 2003.1.28.

²³⁹ TN/RL/W/86.

²⁴⁰ TN/RL/W/10.

한 모든 이용가능한 증거들을 고려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용할당은 적절한 상각기간의 설정, 자본지출 및 기타 개발비용의 공제와 관련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전례적으로 사용되어왔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캐나다는 비용의 결정과 할당과 관련한 좀 더 포괄적인 재량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가격 결정시 조사대상물품에 사용된 제조 방법이나 생산공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²⁴¹

⑦ 구성가격 산정방법 [제2.2.2조]

반덤핑협정 제2.2.2조에서 판매관리비 및 기타 비용 그리고 이윤 등의 금액은 조사대상 생산자나 수출자가 통상적인 거래에서 실현한 동종물품의 생산, 판매 관련 실제 자료에 근거해서 산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i) 조사대상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산국내 동일종류의 물품의 생산, 판매에서 실현된 실제 금액, (ii) 원산국내에서의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여타 생산자에 의해 실현된 실제금액의 가중평균, 그리고 (iii) 원산국내 동일 종류의 물품을 생산, 판매하는 여타 생산자에 의해 실현된 이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구성가격이 산정될 수 있다.

구성가격을 실제자료에 의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고 대체적인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3개가지 방법은 중에 우선 순위가 없어 조사당국이 높은 마진을 임의로 산정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Friends Group은 구성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좀더 명확하고 대표적인 기준을 동 조항 내에 마련하여 조사당국의 자의성을 배제하도록 제안하였고,²⁴²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제2.2.2(i)조의 방법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2.2(i)

²⁴¹ TN/RL/W/47.

²⁴² TN/RL/W/6.

조의 같은 일반적인 종류의 물품을 명확히 하고 좁은 범위로 한정하도록 제안하였다.²⁴³ 또한, Friends Group은 구성가격 산정시 일반관리비가 추가되어 정상적인 영업관행이 포함되는 수출가격보다 더 높게 산정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구성가격 결정시 일반관리비를 제외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구성가격 산정시 정보의 사용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동 조항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⁴⁴ 이와 관련하여 인도는 조사당국이 적용할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관련 자료가 없을 때 다음 순위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제2.2.2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²⁴⁵

⑧ 피소기업의 자료를 요청하고 사용하는 조사당국의 재량 [제2.2.1.1조 및 제2.2.2조]

반덤핑협정 제2.2.1.1조는 조사기간동안 비용의 적절한 할당 (배분)에 관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제시된 증거를 포함한 모든 이용가능한 증거들을 고려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협정 제2.2.2조는 판매관리비 및 기타 비용 그리고 이윤 등의 금액은 조사대상 생산자나 수출자가 통상적인 거래에서 실현한 동종물품의 생산, 판매 관련 실제 자료에 근거해서 산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덤핑협정 제2.4조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 공정한 비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riends Group은 반덤핑협정의 조항에 조사기관이 피소기업으로부터 반덤핑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피소기업이 조사당국의 기준에 맞춰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피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점

²⁴³ TN/RL/W/150.

²⁴⁴ TN/RL/W/66.

²⁴⁵ TN/RL/W/26.

을 지적하고, 이를 피소국의 기준에 따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고 제안하였다.²⁴⁶

3) 수출가격의 결정

① 구성수출가격의 산정 [제2.3조]

반덤핑협정 제2.3조는 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출자 및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의 제휴나 보상약정 등으로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수출가격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조사당국은 수입품이 독립된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수출가격을 구성하고, 독립된 구매자에게 재판매되지 않았거나 수입된 상태로 재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국이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적용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호주는 구성 수출가격 문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⁴⁷

구체적으로 수출자 및 수입자와 제3자 사이의 관련성과 관련하여 Friends Group은 ‘제휴나 보상약정’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조사당국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당해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²⁴⁸ 이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도 수출가격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구분하고, 관련성이나 재판매 가격을 결정할 때 조사당국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⁴⁹

또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간 공정한 비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덤

²⁴⁶ TN/RL/W/150

²⁴⁷ TN/RL/W/86.

²⁴⁸ TN/RL/W/29.

²⁴⁹ TN/RL/W/81,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2003.4.23.

핑협정 제2.4조와 관련하여, Friends Group과 중국은 공정한 비교를 위하여 구성수출가격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²⁵⁰

② 경기순환/계절적 물품 [제2.4조 및 제2.3조]

반덤핑협정 제2.4조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의 공정한 비교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조항은 제2.3조와 관련하여 공정한 비교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는 제반 조세를 포함한 비용과 그로 인한 이윤의 공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가격비교가 영향을 받았다면, 조사당국은 구성수출가격과 동일한 거래단계에서의 정상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적절한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riends Group은 계절적인 수요변동이나 급성장하는 산업분야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격변화가 심한 경기순환 물품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⁵¹ 미국도 부패하는 물품이나 계절적인 또는 경기순환적 물품에 대한 문제들을 명확히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⁵² 그러나 Friends Group이 경기순환 산업의 가격변동을 고려해서 덤핑마진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주장인 반면, 미국은 농산품과 관련하여 국내산업의 보호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4) 공정한 비교

① 동일한 거래 단계에서의 비교 [제2.4조]

반덤핑협정 제2.4조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 공정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²⁵⁰ TN/RL/W/10, TN/RL/W/66.

²⁵¹ TN/RL/W/6.

²⁵² TN/RL/W/72, Identification of Certain Major Issues Under the Anti-Dumping and Subsidies Agreements. Submission by the United States, 2003.3.19.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동일한 단계, 통상적으로 공장도 단계에서 가능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한 비교와 관련하여 Friends Group은 반덤핑협정 제2.4조가 동일한 단계에서 이루어진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사당국이 비대칭적인 조정을 함으로써 실제 다른 단계에서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⁵³ 이를 위하여 Friends Group은 특히 판매비용과 이윤에 대한 ‘대칭적 조정’ (symmetrical adjustments)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② 환율 [제2.4.1조]

반덤핑협정 제2.4.1조는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시 화폐단위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은 판매일자의 환율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환율변동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기간중 환율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수출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출자에게 최소 60일간의 환율조정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동 조항이 환율의 움직임에 대하여 모호하게 규정하였으며, 뚜렷한 환율변동을 다루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회원국이 인증된 기관의 자료에 기초하여 환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자료가 이해당사국에게 공개되도록 반덤핑협정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²⁵⁴ 더 나아가 미국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환율의 출처 기관은 물론 환율의 변동이나 지속적인 움직임 등

²⁵³ TN/RL/W/158, Negotiating Group on Rules - Proposals on Fair Comparison - Paper from Chile;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Japan; Korea; Rep. of; Norway; S[...]/inmen and Matsu; and Thailand, 2004.5.28.

²⁵⁴ TN/RL/W/130.

에 결정하는 방법도 반덤핑 위원회에 통고하도록 제안하였다.²⁵⁵

이집트는 '지속적인 움직임'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지속적인 환율변동이 어떻게 수출가격의 환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반덤핑협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60일간의 조정기간이 수출자와 해외 생산자들에게 답변서 제출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²⁵⁶ 또한, 이집트는 환율변동을 정의하고 언제 환율변동을 무시할 수 있는지 구체화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움직임을 정의하고 언제 환율에서의 지속적인 움직임이 반영될 수 있는지도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²⁵⁷

③ 제로잉 방법 금지 [제2.4.2조]

반덤핑협정 제2.4.2조는 조사기간 동안의 덤핑마진을 일반적으로 가중평균-대-가중평균 또는 거래가격-대-거래가격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비교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예컨대,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패널이 있는 경우 가중평균에 기초하여 결정된 정상가격이 개별 수출거래 가격에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동 조항에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거래가격과의 비교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국가들은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의 관행을 지속해왔다.

그러한 관행 가운데 하나가 소위 제로잉 (zeroing)이다. 동 관행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시 조사대상물품의 세부기간별 또는 모델별로 계산된

²⁵⁵ TN/RL/W/149/Rev.1, Negotiating Group on Rules - Exchange Rates (Anti-Dumping Agreement Article 2.4.1) -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2004.7.14.

²⁵⁶ TN/RL/W/105, Submission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on the Clarification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Communication from Egypt, 2003.5.8.

²⁵⁷ TN/RL/W/183- Negotiating Group on Rules - Currency Conversions - Paper from Egypt, 2005.7.1.

덤핑마진을 가중평균하면서 음 (-)의 덤핑마진을 합산하지 않고 영(0)으로 처리하는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은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효과가 있어 많은 국가들이 그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제로잉 방법은 'EC-인도산 면직류 침구 린넨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EC-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tton-Type Bed-Linen from India) 사건에서 제기되어 이후 여러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WTO 상소 기구는 제로잉 방법이 공정한 비교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된 평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덤핑된 물품에 대한 덤핑마진이 덤핑되지 아니한 물품의 덤핑효과를 상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반덤핑협정이 전체 가중평균 마진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²⁵⁸ 따라서 미국은 각 수입품 별로 덤핑을 규제하는 것이 덤핑조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과 원심 조사와 재심은 다르다는 관점에서 제로잉 방법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Friends Group은 반덤핑협정 제2.4.2조를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제로잉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고, 재심에서도 동 방법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⁵⁹ 중국과 인도도 Friends Group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동 조항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인도의 경우 모든 비교방식에서 제로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target dumping의 경우에는 제로잉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²⁶⁰

²⁵⁸ TN/RL/W/72., TN/RL/W/208 - Negotiating Group on Rules - Offsets for Non-Dumped Comparisons -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2007.6.5.

²⁵⁹ TN/RL/W/6; TN/RL/W/113, Proposal on Prohibition of Zeroing. Paper from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Israel; Japan; Korea; Mexico; Norway;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Singapore; Switzerland and Thailand, 2003.6.6.

²⁶⁰ TN/RL/W/66, TN/RL/W/26.

2. 조사 절차관련 [제 5 조]

1) 조사개시 요건 [제 5.2 조 및 제 5.3 조]

반덤핑협정 제5.2조는 반덤핑조사의 신청시 덤핑, 피해 그리고 덤핑과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 당시 신청자에게 합리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정보를 반덤핑조사 신청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동 협정 제5.3조는 조사당국이 조사개시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사개시와 관련하여 호주, 캐나다, Friends Group, 중국 등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조사개시에 대한 규정/규칙을 명확히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Friends Group은 '신청자에게 합리적으로 입수가 가능한' 증거를 삭제하여 조사개시 요건을 강화하고,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절성' 그리고 '검토'와 같은 용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⁶¹ 또한, 캐나다는 조사당국이 조사개시 신청서를 검토할 때 덤핑 이외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검토하도록 동 조항을 개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의 개념을 정의하여 조사개시 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⁶²

2) 제소적격 [제 5.4 조]

반덤핑협정 제5.4조는 반덤핑조사 신청이 조사에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한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생산량이 전체 동종물품 생산량의 50%이상을 차지

²⁶¹ TN/RL/W/10.

²⁶² TN/RL/W/47.

하는 생산자의 찬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 국내산업이 생산한 동종물품의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25%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Friends Group은 반덤핑조사 신청을 위한 제소 적격 수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두 단계로 이루어진 기준을 전체 국내생산의 50% 이상이라는 1단계로 축소하고, 찬성요건인 50%도 더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⁶³ 캐나다는 조사당국이 신청서에 대한 국내산업의 찬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에서 비교적 낮은 생산량의 생산자가 신청하여 조사가 개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개시의 적격요건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²⁶⁴

3) Back to Back Anti-dumping Investigations

중국과 인도는 새로운 조사개시 요건으로서 반덤핑조사에서 덤핑에 대한 부정 판정이 내려진 후 365일 이내에 동일 회원국의 동일 물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가 신청된 경우, 동 신청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사개시 검토에서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점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진행시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⁶⁵

4) 직권개시 [제 5.6 조]

반덤핑협정 제5.6조는 국내산업이나 이를 대표하는 자의 신청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덤핑, 피해 및 상호간의 인과관

²⁶³ TN/RL/W/10.

²⁶⁴ TN/RL/W/47.

²⁶⁵ TN/RL/W/26, TN/RL/W/66

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르헨티나는 직권 조사개시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을 정의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적절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⁶⁶

5) 미소마진 (de minimis)으로 인한 조사의 종결 [제 5.8 조]

반덤핑협정 제5.8조는 덤핑마진이 매우 작거나 (de minimis) 또는 덤핑수입량이나 피해가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를 즉각적으로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덤핑마진이 2% 이하인 경우 미소마진으로 간주되고, 특정 국가로부터의 덤핑수입량이 수입국의 동종물품 수입량의 3% 이하의 점유율을 보이는 경우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미소마진 (2%)과 무시할만한 수준 (3%)의 기준에 대하여 인도와 중국은 그 기준을 둘 다 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²⁶⁷ 또한, Friends Group은 덤핑마진의 계산방법에 많은 가정이 사용되기 때문에 현 2%의 미소마진은 그러한 방법의 다양성이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시 고려해야 하며, 3%의 무시할만한 수준이 적절한지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⁶⁸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소마진을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한 반면 캐나다는 모든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될 수 있는 미소마진의 적정한 수준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⁶⁹

²⁶⁶ TN/RL/W/81.

²⁶⁷ TN/RL/W/4, TN/RL/W/66.

²⁶⁸ TN/RL/W/6.

²⁶⁹ TN/RL/W/47.

6) 반덤핑 조사기간 [제 5.10 조]

반덤핑협정 제5.10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반덤핑 조사기간이 1년 이내에 종결되고, 어떠한 경우라도 조사개시 후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C는 동 조항에 규정된 기한이 너무 길다고 지적하고, 조사기간이 길면 동 기간동안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며 불확실성이 증가한다고 지적하였고. 따라서 EC는 조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⁷⁰

3. 증거 관련 [제 6 조]

1) 청문회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 [제 6.2 조]

반덤핑협정 제6.2조는 반덤핑조사의 전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당국은 요청시 관련 당사자의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반덤핑협정이 동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거나 행정 당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²⁷¹ 또한, 반덤핑협정에서 절차와 관련한 논의가 포함된 경우, 당사자들에게 모든 회의의 요약과 통지

²⁷⁰ TN/RL/W/138.

²⁷¹ TN/RL/W/35, Investigatory Procedures under the Anti-Dumping and Subsidies Agreements. Submission by the United States, 2002.12.3.

를 제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⁷² 캐나다는 세이프가드협정 제3조에서처럼 공청회 개최와 이해당사자가 증거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요건을 반덤핑협정 제6조에 마련하도록 제안하였다.²⁷³

2) 조사당국의 관련 정보의 이용가능성 [제 6.4 조]

반덤핑협정 6.4조는 조사당국이 가능한 경우 비밀이 아닌 일반정보 및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사용되는 기타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와 함께,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밝힐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당국이 이해당사자에게 동 기관의 반덤핑조사에서 사용된 공개정보를 열람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기회를 정의하지 않았고 공개정보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미국은 당국의 관련 증거의 이용가능성과 관련하여 미국은 적절한 정보나 피드백 (feedback)과 관련한 조항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개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개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⁷⁴

3) 공공기록의 유지 [제 6.4 조]

반덤핑협정 제6.4조는 이해당사자가 조사당국이 사용한 공개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

²⁷² *Id.*

²⁷³ TN/RL/W/47.

²⁷⁴ TN/RL/W/35.

은 불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조사당국이 조사에서 사용한 공개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⁷⁵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공개정보, 그리고 판정의 사실적 또는 법적 근거를 설명하거나 판정을 지지하는 조사당국이 채택하거나 승인한 모든 메모 등의 공공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비밀정보 및 공개정보의 대우 [제 6.5 조]

반덤핑협정 제6조는 비밀정보의 보호와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반덤핑협정 제6.5조는 성격상 비밀인 정도, 예컨대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의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밀정보는 동 정보를 제출한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없이 공개될 수 없다.

미국은 비밀정보가 허가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특정한 절차와 그 요건이 반덤핑협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각 회원국이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을 허락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체제 내에 비밀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도록 적절한 절차를 포함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도록 제안하였다.²⁷⁶

EC는 반덤핑협정에 회원국이 제출한 비밀정보의 공개요약의 내용에 과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조사당국이 적용하는 요건이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공개요약이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방어할 유일한 방법임에도 투명

²⁷⁵ TN/RL/W/35.

²⁷⁶ TN/RL/W/35.

성이 부족하여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⁷⁷ 비밀정보의 공개요약과 관련하여 EC는 공개요약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안을 제출하였다.²⁷⁸ 이와 관련하여 EC는 거래-대-거래 목록이나 원가 정보와 같은 비밀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경우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제안하였다.

5) 현장실사 [제 6.7 조]

반덤핑협정 제6.7조는 조사당국이 관련 기억의 동의를 얻고 당해 회원국의 정부 대표에게 통보하여 동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또는 세부 사항을 추가로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반덤핑협정 부속서 I에 기술된 절차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행해지는 조사에 적용되며, 당국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조건으로 이러한 조사결과를 관련 기업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동 결과를 입수하도록 할 수 있다.

미국은 반덤핑협정에 현장실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는 특별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현지실사 보고서의 사용에 관한 관행이 회원국간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조사당국이 수출국과 그 기업에 대하여 어떤 내용으로 어떤 종류의 문서가 요구되는지를 구체화하고 현지실사 이전에 구체적인 윤곽을 제공하며, 현지실사의 결과보고서를 가능한한 신속하게 모

²⁷⁷ TN/RL/W/13.

²⁷⁸ TN/RL/W/138, Proposals on Cost Savings in Anti-Dumping Proceedings. Submiss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Japan, 2003.7.17.

든 이해당사국에 제공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²⁷⁹

일본은 현지실사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요소임을 지적하고 현지실사에 대한 표준절차가 도움이 될 것인지 또한 도움이 된다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반덤핑협정 부속서 I을 동 논의의 출발점으로 지적하였다.²⁸⁰

6) 이용가능한 증거와 공개 [제 6.8 조]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이용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잠정 및 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동 조항의 적용에는 반덤핑협정 부속서 II의 규정이 적용된다.

Friends Group은 이용가능한 자료의 지나친 사용을 명확히하는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다.²⁸¹ 특히, Friends Group은 이용가능한 자료가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조사당국이 이해당사자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제안하였다.²⁸² 또한, 제출된 정보가 협정상의 다른 요건들을 준수하고 부정확하다는 별도의 증거가 없으며, 검증가능하고 조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면 조사당국이 당해 제출된 자료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행규정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⁸³

아르헨티나는 최선의 이용가능한 정보가 정제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

²⁷⁹ TN/RL/W/35.

²⁸⁰ TN/RL/W/138.

²⁸¹ TN/RL/W/6.

²⁸² TN/RL/W/93, Proposal on Facts Available. Paper from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Israel; Japan; Korea; Norway; Singapore; Switzerl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and Thailand, 2003.5.2.

²⁸³ Id.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²⁸⁴ 호주는 이용가능한 정보의 제출기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하였다.²⁸⁵

7) 증거의 공개 [제 6.9 조]

반덤핑협정 제6.9조는 조사당국이 최종판정 이전에 확정조치의 적용여부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필수 요소들을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그러한 공개는 당사자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은 '당사자에게 그들의 이익을 방어할만한 충분한 시간'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덤핑협정 6.9조상의 '필수 요소들'의 적절한 공개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동 협정이 명확히 되어야 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²⁸⁶

일본은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당해 규정을 통해 주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정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⁸⁷

8) 표본조사 [제 6.10 조]

반덤핑협정 제6.10조는 조사당국이 일반적으로 조사대상물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하여 개별적인 덤핑마진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관련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관련 물품의 종류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러한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조사당국은 그 선정시 당국

²⁸⁴ TN/RL/W/81.

²⁸⁵ TN/RL/W/86.

²⁸⁶ TN/RL/W/98, Identification of Additional Issues Under the Anti-Dumping and Subsidies Agreements. Paper Submitted by the United States, 2003.5.6.

²⁸⁷ TN/RL/W/138.

에 이용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본을 사용하여 조사를 합리적인 수의 이해당사자 또는 물품의 수로 제한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사될 수 이쓴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이 가능 큰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은 표본 조사시 예외가 적용되어 조사받지 아니한 기업들과 그 결과에 따른 반덤핑조치의 범위에 포함되고 개별 관세율 산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특정 우호적인 수출자들이 조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조사에서 그리고 결과적인 반덤핑조치의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제외하는 관행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도록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²⁸⁸ 반면, Friends Group은 ‘합리적인 수’나 ‘가장 큰 비율’의 규정이 모호하여 조사당국의 재량에 따라 표본추출조사의 조작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Friends Group은 표본조사가 허용되는 기준,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합리적인 수 등의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⁸⁹

4. 가격약속 [제 8.1 조]

반덤핑협정 제8.1조는 덤핑으로 인한 피해의 영향이 제거되었다고 당국이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수출자가 가격을 조정하거나 수출자로부터 문제된 지역에 대한 덤핑수출을 중지하겠다는 만족스럽고 자발적인 가격에 관한 약속을 받은 경우,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의 부과없이 조사를 정지하거나 종결할 수

²⁸⁸ TN/RL/W/98.

²⁸⁹ TN/RL/W/29.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덤핑협정 제8.3조는 가격에 관한 약속 수락이 예를 들어 실제적, 잠재적 수출자의 수가 너무 많거나 일반정책상의 이유를 포함하는 기타 이유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당국이 생각하는 경우, 제시된 사격에 관한 약속은 수락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당국은 가능하면 수출자에게 동 가격약속의 수락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도출된 이유를 제기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출자에게 이에 대한 견해 표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가격약속에 관하여 Friends Group은 두 조항이 '만족스럽고 자발적인 약속'의 의미와 가격약속의 신청의 거절 사유 등이 모호하여 조사당국이 자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당국의 가격약속의 거절 기준과 이유의 공표 및 최종판정 전의 신청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제안하였다.²⁹⁰ 또한, 개별적인 수출자별로 가격약속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수출자가 가격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약속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없도록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국은 반덤핑협정 제8.1조와 제8.3조의 구체화에 대하여 Friends Group과 유사한 취지로 제안을 하였으나, 가격약속의 수락과 관련하여 모든 회원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게 우호적인 대우에 대하여 제안하였다.²⁹¹

²⁹⁰ TN/RL/W/10; TN/RL/W/118, Proposal on Price Undertakings. Paper from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Japan; Korea; Norway;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Switzerland and Thailand, 2003.6.12.

²⁹¹ TN/RL/W/66.

5.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제 9 조]

1) 최소부과 원칙의 의무화 [제 9.1 조]

반덤핑협정 제9.1조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여부와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액을 덤핑마진의 전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그보다 적게 할 것인지 여부는 수입국이나 수입 관세지역의 당국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의 모든 당사국 또는 관세지역에서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덤핑마진보다 적은 금액의 반덤핑관세의 부과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덤핑관세는 그 덤핑마진 미만으로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최소부과원칙 (lesser duty rule)은 의무적인 조항은 아니다. EC는 최소부과 원칙을 반덤핑협정 내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²⁹² EC와는 달리 중국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동 관세를 최소부과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²⁹³ 인도는 최소부과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반덤핑협정 제9.1조를 개정하고, 피해마진 산정에 대한 원칙에 대하여 규정할 반덤핑협정의 새로운 부속서 III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²⁹⁴

²⁹² TN/RL/W/13, Submiss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Concerning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Anti-dumping Agreement).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2002.7.8.

²⁹³ TN/RL/W/66.

²⁹⁴ TN/RL/W/170- Negotiating Group on Rules - Proposal on Mandatory Application of Lesser Duty Rule - Communication from India, 2005.2.9.

2) 덤핑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수출자 [제 9.2 조]

반덤핑협정 제9.2조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격약속이 수락된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하고, 덤핑되고 피해를 야기한다고 판정된 모든 수입원으로부터 당해 물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적정한 금액의 반덤핑관세를 무차별적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은 그러한 물품의 공급자를 지명한다.

미국은 조사받은 수출자나 생산자가 덤핑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이를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조사기간동안 덤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조사대상 수출자나 생산자가 동 조사의 결과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반덤핑협정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²⁹⁵

3) 이자환급 [제 9.3 조]

반덤핑협정 제9.3조는 반덤핑관세의 부과금액은 결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 제9.3.1조와 제9.3.2조는 각각 반덤핑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산정되는 경우와 반덤핑관세액이 전망적인 기초에서 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환불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두 조항과 관련하여 수입국이 징수하고 보유하고 있는 초과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를 다루기 위한 동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²⁹⁶

²⁹⁵ TN/RL/W/98.

²⁹⁶ TN/RL/W/98.

4) 표본에서 제외된 기업의 덤핑마진 산정 [제 9.4 조]

반덤핑협정 제9.4조는 당국이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검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가 (i) 선정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하여 설정된 덤핑마진의 가중 평균, 또는 (ii) 반덤핑관세의 지불 책임이 예상되는 정상가격을 기초로 계산된 경우, 선 정도니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가중평균정상가격과 개별적으로 검사되지 아니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수출가격간 차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동 조항이 표본추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업들의 덤핑마진 (all others rate)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all others rate'를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동 조항을 명확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⁹⁷

5. 재심 [제 9 조 및 제 11 조]

1) 원심절차와 재심절차의 개선 [제 9.3 조, 제 9.5 조, 제 11.3 조, 제 11.5 조]

반덤핑협정은 재심과 관련하여 동 협정 제9.3조상의 반덤핑관세액의 평가에 대한 요청 및 환급에 대한 요청, 제9.5조상의 새로운 선적자에 대한 재심, 제11.2조상의 반덤핑관세 부과기간의 종료시의 재심, 그리고 제11.3조상의 일몰재심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재심은 원심에 적용되는 조항 즉 제2조부터

²⁹⁷ TN/RL/W/72.

제6조까지의 조항이 준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재심의 절차는 회원국별로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제11조의 경우 제11.4조에 증거와 관련한 6조가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6조는 적용가능하지만 나머지 2조-5조는 배제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미소마진의 기준이 원심에서는 2%인 반면 연례재심에서는 0.5%로 규정되어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재심과 관련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제9.5조상의 새로운 선적자에 대한 특별 조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²⁹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신규선적자 재심을 두 단계로 구분하도록 제안하였다. 먼저 조사당국이 수출자가 기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관련이 없다고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고, 증거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 단계이고, 두번째 단계에서 조사당국은 정보를 수집하여 새로운 신규 선적자에 대한 개별적인 덤핑을 부과할 수 있다.²⁹⁹

또한, EC는 재심의 분명한 방법론적인 틀을 제공할 것을 주장하고, 재심 조사의 의무적인 기한이 필요한지, 이러한 기간은 상당히 단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³⁰⁰ 반면, Friends Group과 중국은 원심에서 사용되는 절차와 방법이 모든 재심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반덤핑협정에 마련되어야 하고, 동 협정 제11.4조에 규정된 재심기간을 최고 12개월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⁰¹

²⁹⁸ TN/RL/W/72.

²⁹⁹ TN/RL/W/156/Rev.1, Negotiating Group on Rules - New Shipper Reviews (ADA Article 9.5) -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2004.7.14.

³⁰⁰ TN/RL/W/138.

³⁰¹ TN/RL/W/66.

2) 일몰재심 [제 11.3 조]

반덤핑협정 제11.3조는 원칙적으로 확정반덤핑 관세가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몰재심의 운영에 있어 지나치게 많은 재량이 조사당국에 부여되어 있어 반덤핑조치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동 조항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riends Group은 원칙적으로 5년후 반덤핑조치의 자동종료와 종료후 1년간 조사개시의 불가를 제안하였다. 반면 중국은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적용대상을 개발도상국으로 한정하는 제안을 하였다.³⁰²

7. 결정의 공지 및 설명 [제 12.2 조 및 제 12.2.1 조]

반덤핑협정 제12.2조는 모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잠정 또는 최종판정, 가격약속을 수락하는 모든 결정, 이러한 가격약속의 종결 및 확정 반덤핑관세의 종료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 제12.2.1조는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제12.1조상의 공고는 조사당국이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사실 및 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도달한 조사결과 및 결정을 충분히 상세하게 명시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수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덤핑협정 제12.1조상의 '충분히 상세하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반덤핑협정 제12.2.1.조상의 공고 내용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 따라서 미

³⁰² TN/RL/W/72.

국은 반덤핑협정 제12.2조상의 ‘충분히 상세하게’의 정의를 반덤핑협정에 포함하도록 제안하였다.³⁰³ 또한, 미국은 결정과 계산에 대하여 좀더 많은 공개하도록 촉진하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당국이 덤핑마진의 계산과정을 공개하고 설명하는 공개회의 (disclosure meeting)을 의무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³⁰⁴

³⁰³ TN/RL/W/35.

³⁰⁴ TN/RL/W/130.

제 4 절 DDA 협상의 전망

반덤핑규범 협상은 규범협상그룹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야로 2007년 9월말 현재 규범협상그룹에 제출된 제안서는 200건이 넘고 이 중에서 반이 넘는 114건이 반덤핑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비교적 활발하게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나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갖는 제 5차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그 이후에 예정된 규범협상회의가 취소되는 등 대다수 국가들이 협상진전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한편 제네바에서 개최된 일반이사회에서 이사회 결정을 채택하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협상기한이 연장되었으나, 2006년 7월 WTO 사무총장의 권고로 협상이 정지되었다. 이후로 비공식적인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DDA 협상이 지연되고 성과가 없는 주요한 이유는 농업 문제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농업분야에 대한 이견이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따라서 다른 협상분야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회원국간 분쟁해결제도의 개정에 대하여는 묵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있고, 그러한 이유로 분쟁해결에 대한 협상기한은 일괄타결 (single undertaking)에서 제외되어 독립적으로 합의되는대로 발효시키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으로 인하여 전체 DDA 협상이 지연되면서 분쟁해결에 대한 협상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즉, DDA 협상이 전체적으로 진전되지 않는한, 반덤핑협정의 개정협상도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DDA 협상이 진전을 이루더라도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반대한 미국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협상의 개시 이전부터 반덤핑협정의 개정에 반대하였고, 제출하는 제안서도 미국의 조사당국의 입장을 강화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적인 권한을 배제하려는 개발도상국의 입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반덤핑협정의 개정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전체 DDA 협상이 다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협상이 다시 진행된다고 해도 회원국간 이견으로 반덤핑협정의 개정협상이 쉽게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 7 장 결론

당초 해당 연구는 WTO 분쟁 중 반덤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실무자들이 충분히 이해가능하고 또 쉽게 참조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세웠던 그 호기로운 목표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곧 밝혀졌다.

그 첫번째 난관은 우선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자체가 지닌 모호함에서 찾아왔다. 명확한 표현을 목표로 했던 우리의 연구는 판정이 가지는 모호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표류하였다.

또 가끔씩은 분쟁사안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분쟁을 제기한 과정에 집착된 분쟁해결기구의 판결방식은 우리의 연구방향이 제대로 되었을까 하는 원천적인 의구심이 들게까지 하였다.

다음으로는 분쟁이 된 사안이 실제로는 1 년 이상 된 조사과정에서 빛이 진, 대부분은 미묘한 사안들, 또 그 해당 사건, 심지어는 해당 기업, 해당 데이터에 천착된 문제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였다.

애매한 표현으로 그러한 배경을 무시할 수 있겠지만, 애당초 우리의 목표가 보다 명확한 표현의 추구, 또 실무적인 해석에 있었던 관계로 우리의 연구는 해당 판정문 하나에 그치지 않고 그 배경이 되었던 사건을 추적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연구는 항상 새로운 자료와 조우했고, 또한 그 방대한 양에 연구원들은 압도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의 난관들은 연구진들로 하여금 연구방향에 대해 끊임없는 회의와 갈등을 유발하게끔 하였고, 다소 갈팡질팡하는 연구서의 진행과정으로 인하여 무역위원회 역시 힘겨워하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연구서를 마감하고 그 결론을 맺으려 한다.

지난 연구기간 동안 연구원들은 치열하였고, 무역위원회도 끝까지 해당 연구를 쫓아와 주며 검토해주었다.

본 연구서는 WTO 반덤핑분쟁을 정리하면서 나름 새로운 시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분히 색다른 보고서의 모습을 띄게 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는 모호한 표현을 탈피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WTO 반덤핑분쟁을 바라보고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구자의 사적인 견해가 개입되기도 하고, 해당 분쟁에 대하여 기존 해석들이 보았던 것과 다른 측면의 검토와 분석과 그리고 해석이 행하여졌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다분히 위험한 방법론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진들이 믿기에 대한민국의 반덤핑과 관련된 지식은 이제 나름의 견해와 해석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자부하고 바 있으며 또 비록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해석이 있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우리의 지식은 더욱 공고하여 진다고 믿고 있다.

모두들 피해가는 그리하여 오직 서술한 자만이 아는 (어떨 때는 기술한 사람도 과연 이해하고 썼을까 싶은)이슈들을 오히려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내놓음으로써 보다 많은 지식들의 참여와 몰입과 건전한 충돌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아쉬운 마음은 남는다.

별거벗긴 채 세상에 내놓이 게 될 우리 지식의 편린들이 안쓰럽고, 이왕하는 김에 더욱더 자신감있게 써내려가지 못했던 덜 탈곡된 지식의 알갱이가 눈에 밟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생각하면서 이제 남은 몫은 다음 연구자의 몫으로 혹은 우리의 새로운 지식이 다듬어야 할 부분으로 위안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 이전에 있었던 몇몇의 반덤핑과 관련된 해설서들은 비록 그 집필방향에 있어서 우리 연구와 달리하였지만, 그 분들의 책들이 아니었다면 본 연구서는 애당초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라는 점을 부연하고자 한다.

특히 김승호 저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과 이춘삼 저 신국제반덤핑법이 그러하였다. 본 연구서는 많은 부분을 이 두 분의 책을 해석의 출발점과 모태로 삼은 부분이 많았으며, 많은 부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였다.

모쪼록 용기롭게 시작되고 창안된 본 연구의 정신이 무역위원회의 반덤핑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게 되기를 기원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특히 아래의 두 권은 많은 부분 해당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음
- 김승호, WTO 통상분쟁 관례해설, 법영사, 2007
 - 이춘삼, 신국제반덤핑법, 청주대학교출판부, 2000
 - Edwin Vermulst,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Stewart, The GATT Uruguay Round: A Negotiating History (1986-1992), Vol II, 1999.
 - Sebastian Farr, EU Anti-Dumping Law: Pursuing and Defending Investigations, Palladian Law Publishing, 1998
 - Judith Czako, Johann Human and Jorge Miranda, A Handbook on Anti-Dumping Investigations, World Trade Organ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덤핑, 반덤핑 - 반덤핑관세제도의 이용 및 대응, 산업자원부, 2001.1.
 - 손기윤, WTO 반덤핑협정연구-효과적인 수입규제대응,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05
 - 고려대 통상법연구센터, DDA 반덤핑협정 개정협상에서 미국, EU 및 중국의 입장 분석연구, 2003.12.15,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 범무법인 충정, DDA 반덤핑협상 Friends 그룹 제안 이슈에 대한 분석, 2003.12.13,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 공수진, WTO “한국-인도네시아산 특정 종이 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 사건, 국제경제법연구, 제3호, 2005.12.
- 유지열, 미국의 반덤핑법과 실제, 다산출판사, 2002

WTO 분쟁사건 보고서

- United States - Anti-Dumping Duty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 (DRAMs) of One Megabit or Above from Korea, WT/DS99/R, adopted 19 March 1999
- Thailand - Anti-Dumping Duties on Angles, Shapes and Sections of Iron or Non-Alloy Steel and H-Beams from Poland, WT/DS122/R,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s, WT/DS122/AB/R, adopted 5 April 2001
- Mexico - Anti-Dumping Investigation of High Fructose Corn Syrup (HFCS) from the United States, WT/DS132/R, adopted 24 February 2000
- European Communities -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tton-Type Bed Linen from India, WT/DS141/R,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141/AB/R, adopted 12 March 2001.
- Guatemala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Grey Portland Cement from Mexico, WT/DS156/R, adopted 17 November 2000.
-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an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from Korea, WT/DS179/R, adopted 1 February 2001.
-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Certain Hot-Rolled Steel Products from Japan, WT/DS184/R,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184/AB/R, adopted 23 August 2001.

- Argentina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Imports of Ceramic Floor Tiles from Italy, WT/DS189/R, adopted 5 November 2001.
- United State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Measures on Steel Plate from India, WT/DS206/R and Corr.1, adopted 29 July 2002.
- Egypt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Steel Rebar from Turkey, WT/DS211/R, , adopted 1 October 2002.
- European Communities – Anti-Dumping Duties on Malleable Cast Iron Tube or Pipe Fittings from Brazil, WT/DS219/ R,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219/AB/R, adopted 18 August 2003.
- Argentina – Definitive Anti-Dumping Duties on Poultry from Brazil, WT/DS241/ R, adopted 19 May 2003.
- United States – Sunset Review of Anti-Dumping Duties on 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 from Japan, WT/DS244/ R,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244/ AB/R, adopted 9 January 2004.
- United States – Final Dumping Determination on Softwood Lumber from Canada, WT/DS264/R,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264/AB/R, adopted 31 August 2004.
- United States – Sunset Reviews of Anti-Dumping Measures on Oil Country Tubular Goods from Argentina, WT/DS268/ R and Corr.1,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DS/268/AB/R, adopted 17 December 2004.
-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 from Mexico WT/DS282/R,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282/AB/R, adopted 28 November 2005.

- United States - Laws, Regulations and Methodology for Calculating Dumping Margins ("Zeroing"), WT/DS294/ R,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294/AB/R, adopted 9 May 2006.
- Mexico - Definitive Anti-Dumping Measures on Beef and Rice, Complaint with Respect to Rice, WT/DS295/R,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295/AB/R, adopted 20 December 2005.
- Korea -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Paper from Indonesia, WT/DS312/R, adopted 28 November 2005.
- United States - Measures Relating to Zeroing and Sunset Reviews, WT/DS322/R, modified by Appellate Body Report, WT/DS322/AB/R, adopted 23 January 2007.

DDA 관련 제안서

- TN/RL/W/91, "Like Product" Within the Meaning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Submission by Australia, 2003.5.1.
- TN/RL/W/130, Further Issues Identified Under the Anti-Dumping and Subsidies Agreements for Discussion by the Negotiating Group on Rules.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2003.6.20.
- TN/RL/W/7,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Paper by Brazil, 2002.4.26.; TN/RL/W/10, Second Contribution to Discussion of the Negotiating Group on Rules on Anti-dumping Measures. Paper by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Israel; Japan;

- Korea; Norway;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Singapore; Switzerland and Thailand, 2002.6.28.
- TN/RL/W/66, Proposa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Negotiation on Anti-Dumping. Communication from China, 2003.3.6.
 - TN/RL/W/29, Third Contribution to Discussion of the Negotiating Group on Rules on Anti-dumping Measures. Paper by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Japan; Korea; Norway;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Singapore; Switzerland; Thailand and Turkey, 2002.11.15.
 - TN/RL/W/150, Negotiating Group on Rules - Proposals on Determination of Normal Value - Paper from Chile;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Japan; Korea, Republic of[...]Kinmen and Matsu; and Thailand, 2004.4.16.
 - TN/RL/W/146, Negotiating Group on Rules - Proposal on Issues related to Affiliated Parties - Paper from Brazil;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Japan; Korea;[...]n and Matsu; and Thailand. 2004.3.11
 - TN/RL/W/86, General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of the Negotiating Group on Rules on the Anti-Dumping Agreement. Submission from Australia, 2003.4.30.
 - TN/RL/W/6, Anti-dumping: Illustrative Major Issues. Paper by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Israel; Japan; Korea; Mexico; Norway; Singapore; Switzerland; Thailand and Turkey.
 - TN/RL/W/47, Submission from Canada Respecting the Agreement on

-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ATT 1994 (the Anti-Dumping Agreement). Communication from Canada. 2003.1.28.
- TN/RL/W/81,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2003.4.23.
 - TN/RL/W/72, Identification of Certain Major Issues Under the Anti-Dumping and Subsidies Agreements. Submission by the United States, 2003.3.19.
 - TN/RL/W/158, Negotiating Group on Rules - Proposals on Fair Comparison - Paper from Chile;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Japan; Korea; Rep. of; Norway; S[...]inmen and Matsu; and Thailand, 2004.5.28.
 - TN/RL/W/149/Rev.1, Negotiating Group on Rules - Exchange Rates (Anti-Dumping Agreement Article 2.4.1) -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2004.7.14.
 - TN/RL/W/105, Submission of the Arab Republic of Egypt on the Clarification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Communication from Egypt, 2003.5.8.
 - TN/RL/W/183- Negotiating Group on Rules - Currency Conversions - Paper from Egypt, 2005.7.1.
 - TN/RL/W/208 - Negotiating Group on Rules - Offsets for Non-Dumped Comparisons -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2007.6.5.
 - TN/RL/W/113, Proposal on Prohibition of Zeroing. Paper from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Israel; Japan; Korea; Mexico; Norway;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Singapore; Switzerland and Thailand, 2003.6.6.

- TN/RL/W/35, Investigatory Procedures under the Anti-Dumping and Subsidies Agreements. Submission by the United States, 2002.12.3.
- TN/RL/W/138, Proposals on Cost Savings in Anti-Dumping Proceedings. Submiss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Japan, 2003.7.17.
- TN/RL/W/93, Proposal on Facts Available. Paper from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Israel; Japan; Korea; Norway; Singapore; Switzerland;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and Thailand, 2003.5.2.
- TN/RL/W/98, Identification of Additional Issues Under the Anti-Dumping and Subsidies Agreements. Paper Submitted by the United States, 2003.5.6.
- TN/RL/W/118, Proposal on Price Undertakings. Paper from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Hong Kong, China; Japan; Korea; Norway;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Switzerland and Thailand, 2003.6.12.
- TN/RL/W/13, Submiss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Concerning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GATT 1994 (Anti-dumping Agreement).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2002.7.8.
- TN/RL/W/170- Negotiating Group on Rules - Proposal on Mandatory Application of Lesser Duty Rule - Communication from India, 2005.2.9.
- TN/RL/W/156/Rev.1, Negotiating Group on Rules - New Shipper Reviews (ADA Article 9.5) -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2004.7.14.

기타 WTO 문서

- WTO, WT/MIN(01)/DEC/1, 2001.12.20
- WTO, WT/MIN(01)/1, 2001.11.20.
- WTO, TN/RL/M/1, 2002.3.11.
- WTO, G/ADP/M/23, 2003.3.21.
- WTO, G/ADP/10, 2002.11.29.